

2022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목 차

I. 관련 법규 및 관련 규정	1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1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4.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10
5.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18
6.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운영규정	42
7.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운영규정	50
II. 표시·광고심의 현황	55
1. 연도별 광고심의 현황	55
2. 연도별 광고심의 결과 현황	56
3. 기능성 원료별 광고심의 결과 현황	57
4. 개별인정 기능성 내용별 광고심의 현황	62



Ⅲ. 광고시안 작성 시 유의사항	67
Ⅳ. 표시 · 광고심의 가이드라인	71
Ⅴ. 영양소 및 기능성 원료 목록	86
1. 영양소	86
2. 기능성 원료	89
Ⅵ. 기능성 내용별 삭제 사례	96
Ⅶ. 기능성 내용별 자주하는 질문	143
Ⅷ. 식약처 자주하는 질문	155
Ⅸ. 표시 · 광고심의 접수 시 자주하는 질문	157
X. 심의 신청 양식 가이드	168

I 관련 법규 및 관련 규정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10.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음향·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 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아.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광고의 기준) ① 식품 등을 광고할 때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식품 등을 광고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 제조방법 · 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 ·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 ·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 · 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 ·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①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 · 광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 ·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③ 자율심의기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 · 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표시·광고의 심의를 받은 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광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표시·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 등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가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⑧ 제1항에 따른 심의 대상, 제2항에 따른 등록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자율심의기구는 식품등의 표시·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식품등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식품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19.3.14.][일부개정 2021.8.17.]

2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가 구성되지 않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는 경우 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기준

3.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표현할 것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심의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 기준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질병 또는 질병군(疾病群)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또는 질병이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입이나 관(管)을 통하여 식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에 섭취대상자의 질병명 및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임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2) 건강기능식품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나. 질병 또는 질병군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라.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이하 이 목에서 “질병정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거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서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질병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해당 질병 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병기한 표시·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나.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라.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 ·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 광고는 제외한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 · 광고

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 · 광고

다. 특수용도식품(영아 · 유아, 병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 · 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 · 가공한 것을 말한다)으로 임산부 · 수유부 · 노약자, 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라.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에 있는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내용의 표시 · 광고

4. 거짓 · 과장된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 ·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 · 광고

1) 「식품위생법」 제37조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제15조 및 제20조

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 · 광고

다.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 · 광고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 · 광고

라.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 · 광고할 때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 · 작용 · 효과 · 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표시 · 광고

마.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受賞) · 인증 · 보증 · 선정 · 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 ·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 가. 식품학·영양학·축산가공학·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한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광고. 다만, 식품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 나. 가축이 먹는 사료나 물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 또는 식품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다.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 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 마. 외국어의 남용 등으로 인하여 외국 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바. 조제유류(調製乳類)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을 사용한 표시·광고
- 사. 조제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광고
- 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사항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표현함으로써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 또는 효과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표시·광고
-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기능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시·광고
- 차.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 카. 해당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만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

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 ·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 ·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 가. 비교표시 · 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 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내용의 표시 · 광고
 - 나. 제품의 제조방법 · 품질 · 영양가 · 원재료 ·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 ·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 가.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의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 · 광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하는 표시 · 광고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시 · 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로 보지 않는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소에서 조리 · 판매 · 제조 · 제공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 · 광고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같은 영 제26조의2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 · 광고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표시의무자)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자

제10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건강기능식품

제11조(수수료)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는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심의 수수료는 해당 자율심의기구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25.][일부개정 2021. 10. 12]

4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6호(2019. 10. 28,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89호(2021. 11.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식품등에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가. 한약의 처방명 또는 별표 1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광고

2.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가.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을 사용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재료, 식품첨가물(보존료 제외) 등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

(예시) 색소 사용이 금지된 다류, 커피, 김치류, 고춧가루, 고추장, 식초에 “색소 무첨가” 표시·광고

(예시) 고춧가루에 “고추씨 무첨가” 표시·광고

(예시) 식품용 기구에 “DEHP Free” 표시·광고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보존료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

이 경우 보존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2.9)에 따른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브산 및 그 염류(칼륨, 칼슘), 안식향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류(메틸, 에틸),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슘)을 말한다.

(예시) 면류, 김치, 만두피, 양념육류 및 포장육에 “보존료 무첨가”, “무보존료” 등의 표시

다.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와 같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인체유해물질이 없다는 표시·광고. 다만,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식품용 기구(영·유아용 기구 제외)에 대한 “BPA Free”, “DBP Free”, “BBP Free” 표시·광고로 해당 인체유해물질이 최종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은 경우의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라. 제품에 포함된 성분 또는 제조과정 중에 생성되는 성분이 해당 제품에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

(예시) 셀러리 분말과 발효균을 사용한 제품에 “아질산나트륨(NaNO_2) 무첨가” 표시·광고(셀러리 분말과 발효균 사용 시 제품에서 NO_2 이온 생성)

(예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성 단백질가수분해물을 사용한 제품에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L-글루탐산나트륨(아미노산) 무첨가” 표시·광고

마.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래의 식품등에 해당 영양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 표시·광고

(예시) 두부 제품에 ‘무콜레스테롤’ 표시·광고

바. 당류(단당류와 이당류의 합)를 사용하거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제1호 아목3)가)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따른 ‘무당류’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식품등에 ‘무설탕’ 표시·광고 및 같은 호아목3)다)에 따른 “설탕 무첨가”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식품등에 “설탕 무첨가” 또는 “무가당” 표시·광고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명칭을 사용한 표시·광고

(예시) “무MSG“, “MSG 무첨가“, “무방부제”, “방부제 무첨가” 표시·광고

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유해물질(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동물용의약품, 의약품 성분과 그 유사물질 등)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다른 제품을 상대적으로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예시) 농약 기준에 적합한 녹차,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김치

자. 합성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광고

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이 “천연”, “자연” (natural, nature와 이에 준하는 다른 외국어를 포함)이라는 표시·광고.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육가공품 중 천연케이싱에 대한 “천연” 표현과 자연상태의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에 대한 “자연” 표현,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명(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에 포함된 “자연”, “천연” 표현은 제외한다.

- 1) 합성향료·착색료·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화학적합성품이 포함된 식품등
- 2) 비식용부분의 제거 또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별표 2의 물리적 공정을 말한다) 이외의 공정을 거친 식품등
- 3) 자연상태의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 먹는물, 유전자변형식품등, 나노식품등

카. 최종 제품에 표시한 1개의 원재료를 제외하고 어떤 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의 “100%” 표시·광고. 다만,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한 제품의 경우

환원된 단일 원재료의 농도가 100%이상이면 제품 내에 식품첨가물(표시대상 원재료가 아닌 원재료가 포함된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제외)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100% 표시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100% 표시와 동일한 글씨크기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100% 오렌지주스(구연산 포함), 100% 오렌지주스(산도조절제 포함)

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5호나목3)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4호 및 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3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 식품등의 위탁자 이외의 상표나 로고 등을 사용한 표시·광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식품등 및 자연상태의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의 경우
- 2)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을 소유한 자가 상표 사용권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에 안전·품질에 관한 정보·기술을 제조사에게 제공한 경우

파.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 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

(예시)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lycemic index, GI), 당부하지수(Glycemic Load, GL) 등

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유전자변형 농임수축산물이 아닌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

거.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무색 등)의 음료에 “00수”, “00물”, “00워터” 등 먹는물로 오인·혼동하는 제품명을 사용한 표시·광고. 다만, 탄산수 및 식품 유형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너.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등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 다만, 즉석섭취 식품, 즉석조리식품, 소스는 식품유형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제외한다.

4.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가.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

(예시) “다른 00와 달리 이 00는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00와 달리 이 00은 △△△만을 사용합니다”

나. 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식품등이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는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예시)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 00제품”,
“국내 최초로 수출한 ××회사”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 조사대상, 조사기관, 기간 등을 명백히 명시하지 않고 “고객만족도 1위”,
“국내판매 1위” 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5.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가. 식품등의 용기·포장을 복권이나 화투로 표현한 표시·광고

나. 성기 또는 나체 표현 등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림, 도안, 사진, 문구 등을 사용한 표시·광고

(예시) “키스하고 싶어지는 캔디”, “만지고 싶은 젤리”

제3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9-96호, 2019. 10.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다목·라목·아목·타목·파목은 2021년 3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89호, 2021. 11.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한약의 처방명 및 이와 유사 명칭

한약처방명	한약처방명과 유사명칭
공진(신)단	공진환, 공진원, 공신단, 공신환, 공신원, 공심환, 공진액, 공보환, 공지환, 공침환, 공본환
경옥고	경옥정, 경옥보, 경옥환, 정옥고, 경옥액, 경옥생고, 경옥진고
익수영진고	익수영진경옥고차환
사군자탕	사군자전, 사군자탕환, 사군자환
사물탕	사물전, 사물탕환, 사물환, 사물액
쌍화탕	쌍화전, 한방쌍화차, 쌍화액
십전대보탕	십전대보전, 십전대보액, 십전대보원, 십전대보초, 활력십전대보원, 대보초
녹용대보탕	녹용대보전, 녹용대보액, 녹용대보즙, 녹용기력대보, 녹용대보진액, 녹용대보정, 대보초, 녹용대보초
(가감)보아탕	보아전
총명탕	총명전, 총명차, 총명환, 총명대보종탕, 총기차, 총명액
귀비탕	귀비전, 귀비차, 귀비액
육미지황탕(환)	육미지황전, 육미지황원, 육미골드, 육미지황액
팔미지황탕(환)	팔물전전, 팔미지황원, 팔미지황액
(인삼)고본환	인삼고본주, 고본주, 고본술, 고본액
(연령)고본단	고본주, 고본술
(현토)고본환	고본주, 고본술
고본건양단	고본주, 고본술
궁귀교애탕	궁귀교애전, 궁귀교애초, 궁귀초
소체환	속편환
육군자탕	육군자전
오적산	오적산전
생맥산	생맥산전, 생맥차
익모환	-
진해고	-
(청간)명목환	-
(우황)청심원	청심환
굴피탕	-
맥문동탕	-
팔물(진)탕	-
이중탕	인삼탕
연년익수불로단	-
오자원	-
오자연종환	-
(소아)귀룡(용)탕	-
기타	성장환, 생치원, 제통원, 정기산, 혈기원, 신기원, 천보환, 청패원액, 청패액, 청패원, 은교산, 성장액

[별표 2]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용어 정의와 범위

공정명	용어 정의	제 외
세척	물(세척액 포함)을 이용하여 불순물 제거	-
박피	칼과 기계적 마찰을 이용하여 과일이나 채소의 껍질을 벗김	열수, 스팀, 화염, 알칼리 용액 등을 이용한 박피 제외
절단	자르거나 베어서 끊음	-
압착	압력을 주어 물체를 납작하게 하여 과일주스, 종자나 견과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	-
분쇄	식품을 작은 입자로 만드는 것	마이크로, 나노 단위의 미분쇄 제외
교반	휘저어 섞는 것	-
건조	수분을 증발시켜 없애는 것(동결건조 포함)	60℃이상의 열풍건조 제외
냉동	-18℃ 이하로 온도를 낮추어 보존하는 것	-
냉장	0~10℃ 이하로 온도를 낮추어 보존하는 것	-
성형	틀을 써서 식품을 특정한 형태로 만드는 것	-
압출	틀이나 좁은 구멍으로 눌러서 밀어내어 국수, 냉면 등을 뽑는 것	-
여과	거름종이, 체, 망 등을 사용하여 액체 속에 들어 있는 침전물을 걸러 내는 것	예) 이온교환 필터를 이용한 여과, 정밀여과, 한외여과(ultrafiltration)
원심 분리	원심력을 이용하여 고체와 액체 또는 비중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액체를 나누는 것	10,000rpm 이상의 고속 원심분리 제외(특정성분 제거) 예) 초원심분리(ultracentrifugation)
혼합	손 또는 믹서로 뒤섞어서 한데 합함	-
폭기	공기를 불어넣는 것	-
숙성	식품 속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자체의 효소, 미생물, 염류의 작용으로 알맞게 분해되어 특유의 맛과 향기를 갖게 만드는 것	-
자연 발효	식품 자체의 미생물이 유기 화합물을 분해하여 알코올류, 유기산류, 이산화탄소 등을 생산하는 것	미생물을 인위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제외
용해	액체 속에서 녹아 용액을 만드는 것	-

5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06호(2004. 1. 31,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65호(2005. 11. 1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16호(2007. 3. 2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80호(2007. 12. 1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36호(2008. 6. 25,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43호(2009. 6. 30,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19호(2011. 5. 1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38호(2012. 12. 3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74호(2013. 4. 5,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24호(2013. 9. 25,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31호(2014. 2. 1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3호(2014. 8. 2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62호(2016. 6. 30,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4호(2018. 5. 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45호(2019. 6. 5,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4호(2020. 6.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품명”이란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2.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3. “제조일“이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캡셀제품은 충전·성형완료시점으로 하고, 정제·액상 등 제품은 충전 및 포장공정을 제외한 제조공정을 마친 시점으로 한다.
4. “원료“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식품(정제수를 포함한다) 또는 식품첨가물이라도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5. “성분“이란 화합물, 혼합물 또는 식품 등에서 분리된 단일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6. “1회 분량“이란 제품의 특성에 따라 그 제품의 주요 소비대상 1인이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을 말하며, “1일 섭취량“이란 건강기능식품에 있어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루에 섭취하여야 하는 양을 말한다.
7. “영양정보표시“란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 및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영양성분 기준치“란 식품표시를 위하여 설정한 한국인 1인에 대한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을 말한다.
9. 삭제 <2007. 12. 11.>
10. “기능정보표시“란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유도와 기능성표시 등을 말한다.
11. “기능성표시“란 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기능성에 관한 표시로서 인체의 성장·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성분의 생리학적 작용을 나타내는 영양성분기능표시와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내는 영양성분기능 외의 생리기능향상표시 및 전체 식사를 통한 식품의 섭취가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한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를 포함한다.

12. “주원료“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나타내게 하는 주된 원료 또는 성분을 말한다.
13. “주표시면“이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
14. “정보표시면“이란 주표시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해당 제품의 정보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이 표시기준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제4조(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 표시(건강기능식품 도안)
2. 제품명
3. 업소명 및 소재지
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5. 내용량
6. 영양정보
7. 기능정보
8.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9. 원료명 및 함량
10.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11.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12.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표시방법)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사항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제4호에 따라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로리, 드럼통, 병 제품 또는 합성수지제 용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는 원료용의 종이·가공지제 또는 합성수지제 포장 등 제품포장의 특성상 인쇄, 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Label)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용기나 포장은 다른 제조업소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용기로서 다른 업소의 제품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영업허가·신고 또는 품목제조신고 한 내용이 변경되어 허가·신고관청에 변경허가·신고 수리된 경우와 단순 표시 오류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사항만을 변경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란 표시내용의 오·탈자, 영양·기능(또는 지표)성분의 단위 및 캡셀기제 표시의 누락, 용기·포장재질 표시의 누락, 섭취량을 정수로 표시하지 아니 한 경우(예 : 1회 1~3정) 등을 말한다. 다만, 유통기한의 표시는 변경처리 할 수 없다.

라.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을 사용한 경우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에 대하여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기, 바코드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 부착 건강기능식품은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자로 “원산지:○○ (위탁생산제품)”, “○○산(위탁생산제품)”, “원산지:○○(위탁생산)”, “○○산(위탁생산)”, “원산지:○○(OEM)“ 또는 “○○산(OEM)“과 같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장소

가.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표시사항은 반드시 주표시면에 하여야 하고, 동조 제4호·제6호·제7호·제8호의 표시사항은 정보표시면에 하여야 하고, 동조 제3호·제9호·제10호·제11호는 자유롭게 표시면을 선택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개의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에는 제6조 제6호가목(1일영양성분기준에 대한 비율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가목의 표시사항을 주표시면에도 표시하여야 한다.

3. 글씨크기

표시면적이 적어 정하여진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조제2호에 따라 주표시면 외의 정보 표시면에 일괄표시하도록 정한 사항을 다음의 구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가. 최소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표시(타법포함)만을 표시해야 하며, 정보표시면의 면적은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여백을 제외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제4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품설명서에 따로 기재하여 함께 포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설명서 참고“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의 섭취시 주의사항 중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섭취시 주의사항은 제품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가.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아래 도안을 주표시면에 15×15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 동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150cm² 이하인 제품의 경우 도안의 크기를 식별이 가능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



나.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은 주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원료“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제품명

가. 제품명은 그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고유명칭으로서, 영업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품목제조신고서 또는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준·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영양성분·기능성 원료 명칭(해당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의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다) 또는 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 또는 상표나 가상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제품의 특성과 제조상의 처리조건 등을 함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필요한 부가적인 용어(건조, 농축, 환원, 혼연 등)를 제품명과 함께 사용하거나 제품명 주변에 표시하여야 한다.

라. 법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따른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을 한글로 표시함에 있어, 외국어 제품명을 한글로 번역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바. 제품명 주변(바로 위·아래·옆)에 해당 기준·규격상의 명칭 등이 뚜렷이 보이도록 가장 큰 제품명 글씨크기의 2분의 1이상 크기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준·규격상의 명칭을 제품명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업소명 및 소재지

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 적용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원래 표시 사항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해당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명칭(소분 재포장 업소명) 및 소재지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영업등록증에 기재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 수입신고한 해당 제품의 수출국명과 제조업소명을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국명과 제조업소명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으면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가 업소명 및 소재지, 상표 또는 로고 등을 추가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상표 또는 로고 등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하여야 한다.

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가. 유통기한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유통기한의 표시는 “○○년○○월○○일까지“ 또는 “○○.○○.○○까지“, “○○○○

년〇〇월〇〇일까지“ 또는 〇〇〇〇.〇〇.〇〇까지“로 표시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정보 표시면에 일괄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인 경우 수출국의 유통기한 표시순서가 위의(1) 표시순서와 다를 때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년, 월, 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한다.

3) 제조일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 유통기한이 1월 이내이면 “제조일로부터 〇〇일까지“, 유통기한이 12월 미만이면 “제조일로부터 〇〇월까지“ 또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이면 “제조일로부터 〇〇년까지“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일의 표시는 “〇〇년〇〇월 〇〇일“ 또는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년〇〇월〇〇일“ 또는 “〇〇〇〇.〇〇.〇〇“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 하나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해당 제품의 사용 또는 보존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5. 내용량

가.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물이 고체 또는 반고체일 경우 중량으로, 액체일 경우 용량으로,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일 경우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고, 개수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정제형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판매되는 한 용기·포장내의 정제수와 총중량을, 캡셀형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캡셀수와 피포제 중량을 제외한 내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영양정보

가. 열량, 탄수화물, 당류(캡슐·정제·환·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 단백질, 지방, 나트륨과 영양성분 기준치의 30%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 및 무기질은 그 명칭, 1회 분량 또는 1일 섭취량 당 함량 및 영양성분 기준치(또는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비율(% , 열량, 당류는 제외한다)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주원료로 사용한 비타민 및 무기질 제외). 다만, 영양성분 기준치의 30% 미만을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 무기질과 식이섬유,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은 임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영양성분의 명칭, 함량 및 영양성분 기준치(또는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비율(% ,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은 제외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열량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kcal)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킬로칼로리(kcal) 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5킬로칼로리(kcal)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열량의 계산은 각 성분 1그램(g)당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각각 4킬로칼로리(kcal), 지방은 9킬로칼로리(kcal), 알콜은 7킬로칼로리(kcal), 유기산은 3킬로칼로리(kcal), 당알콜은 2.4킬로칼로리(kcal)[에리스리톨은 0킬로칼로리(kcal)], 식이섬유는 2킬로칼로리(kcal)를 곱한 값의 합으로 한다. 다만, 탄수화물 중 당알콜 및 식이섬유의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의 탄수화물에 대한 열량 산출은 당알콜은 1그램(g)당 2.4킬로칼로리(kcal)[에리스리톨은 0킬로칼로리(kcal)]를, 식이섬유는 1그램(g)당 2킬로칼로리(kcal)를, 당알콜과 식이섬유를 제외한 탄수화물은 1그램(g)당 4킬로칼로리(kcal)를 각각 곱한 값의 합으로 한다.

2) 탄수화물

탄수화물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그램(g)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1그램(g)미만은 “1그램(g)미만”으로, 0.5그램(g)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탄수화물의 함량은 건강기능식품 중량에서 조단백질, 조지방, 수분 및 조회분의 함량을 뺀 값을 말한다. 식이섬유 또는 당류의 표시는 탄수

화물 바로 아래에 탄수화물의 표시방법에 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단백질

단백질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그램(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1그램(g)미만은 “1그램(g)미만“으로, 0.5그램(g)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지방

지방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5그램(g)이하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0.5그램(g) 단위로, 5그램(g)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그램(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0.5그램(g)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포화지방 또는 불포화지방의 표시는 지방 바로 아래에 지방의 표시방법에 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콜레스테롤의 표시는 지방 바로 아래에 미리그램(m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미리그램(m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미리그램(mg)이상 5미리그램(mg)미만은 “5미리그램(mg)미만“으로, 2미리그램(mg)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트랜스지방의 표시는 지방 바로 아래에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0.5그램(g)미만은 “0.5그램(g)미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0.2그램(g)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용유지류 유형으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에서는 100그램(g) 당 2그램(g)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5) 나트륨

나트륨의 단위는 미리그램(m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5미리그램(mg) 이상 120미리그램(mg)이하인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미리그램(mg) 단위로, 120미리그램(m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0미리그램(m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5미리그램(mg)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6)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및 나트륨의 함량을 “0”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7)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제품에 표시된 각 영양성분의 함량을 사용하여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함량이 “00g 미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 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측정값의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영양성분의 실제측정값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1)에서 정하지 않는 열량, 당류,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나트륨의 실제측정값은 표시량의 120퍼센트(%)미만이어야 하고, 탄수화물의 실제측정값은 표시량의 8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3)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이 1)과 2)의 규정범위를 벗어나더라도 그 양이 가목의 영양성분별 단위 표시방법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영양정보표시는 제7호의 기능정보표시와 함께 정보표시면에 별표 1의 영양·기능정보표시요령과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7. 기능정보

가. 해당 제품에 사용된 기능성원료의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명칭과 1회 분량 또는 1일 섭취량 당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는 원료용 제품은 단위값에 함유된 최종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기능성표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기준·규격에서 정한 기능성이나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하여야 한다.

8.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가. 해당 제품에 대한 섭취 대상별 1회 섭취하는 양과 1일 섭취횟수 및 섭취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해당 제품의 섭취시 이상증상이나 부작용 우려대상, 과다 섭취시 부작용 가능성 및 그 양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9. 원료명 및 함량

가. 원료명은 해당제품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를 우선표시하고 그 외의 원료는 제조시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아니한 원료명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다. 기타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원료명을 주원료와 기타원료로 구분하여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타원료의 성분명칭을 함께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시) 기타원료 D의 함량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주원료: A, B

기타원료: C, D 00%

라. 복합원료(2 종류 이상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를 원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복합원료명을 표시하고 괄호 속에 많이 사용한 원료명을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원료가 해당 제품의 5퍼센트(%) 미만인 경우 해당 복합원료 명칭에서 그 원료가 분명할 경우에는 해당 원료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제조시 사용한 정제수는 원료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한 정제수가 최종제품에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와 소금물, 시럽 또는 육수 등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정제수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시에 직접 사용·첨가하는 식품첨가물은 라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사. ‘식품첨가물의 간략명 및 주용도’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식품첨가물공전의 고시된 명칭이나 동 표에서 규정한 간략명 또는 그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주용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주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고시된 명칭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식품첨가물의 간략명 및 주용도’에서 규정한 주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고시된 명칭 또는 간략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아. 식품첨가물중 향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명칭 옆에 괄호로 용도를 “천연향료“ 또는 “합성향료“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 원료로서 사용한 추출물(또는 농축액)의 함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제품중에 함유된 각각의 원료 고형분 함량(백분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형분 함량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배합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10.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면의 바닥면과 평행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

11.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2에 따른다.

12.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가.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성분명, 기원동물 및 사용부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빈 캡셀 등 제조공정상 소해면상뇌증의 감염우려가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천연“의 표시는 합성향·착색료·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표시가 가능하다.

다. “100%“의 표시는 표시대상 원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여 표시할 수 있다.

라. 인삼 및 홍삼제품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인삼·홍삼제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과 인삼·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사용한 인삼·홍삼 제품의 경우 인삼 또는 인삼을 나타내는 명칭(제품명을 포함한다), 도안 및 그림 등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삼·홍삼제품에 사용한 원료삼의 배합비율(백분율)을 미삼류와 인삼근류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제품설명문 또는 포장에 인삼의 유래를 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삼의 유래 기본문안을 준용하여야 한다.

4) 제품명은 한자로 표시할 수 있다.

5) 국내 시판제품에는 “대한민국특산품“이라는 자구를 한글 또는 한자로 표시할 수 있고, 수출품에는 “대한민국특산품“이라는 자구를 영어 또는 수입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

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지정업소의 제품에는 “GMP적용업소“ 라는 문구 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지정업소임을 나타내는 도안(이하 “GMP 도안“이라 한다)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GMP 도안을 표시할 때에는 별표 2의 GMP 도안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바.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은 “살균제품“, “멸균제품“으로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사. 보존료 및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사용하지 아니 하였다

는 표시(예 : 무(無) 보존료)를 할 수 있다. 이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중 해당 제품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 한하며, 사용이 금지된 첨가물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표시를 할 수 없다

아. 제9호다목 이외에 기타 원료(성분)의 명칭 또는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기타 원료의 사진, 이미지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중량등의 허용오차) 제4조제5호에 따라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그 용기·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적용특례)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2. 제5조제2호에 따라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2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출국 제조업자가 그 나라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제조한 제품에 이 규정에 따라 표시를 할 경우에는 제품포장의 특성에 무관하게 표시사항이 한글로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나라의 표시사항 중 제품명, 원료명 및 함량, 영양·기능 정보, 유통기한 등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제9조(준용)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이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방사선조사’, ‘포장재질’, ‘인삼의 유래 기본문안’,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간략명 및 주용도’ 등에 대하여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4-06호, 2004. 1.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는 2004. 8. 26까지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식품등이 표시기준 중 이 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해당하는 건강보조식품·영양보충용식품중 영양보충용식품 및 인삼·홍삼제품(인삼·홍삼음료 및 기타인삼·홍삼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한 표시기준은 이를 각각 삭제한다.

②유전자재조합식품등이 표시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의 부분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 제17호중 “특수영양식품 중 영양보충용식품”을 “건강기능식품 중 영양보충용제품”으로 하며, 제4조 중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를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

부칙<제2005-65호, 2005. 11.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기준 적용은 2007. 5. 31.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부칙<제2007-16호, 2007. 3.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7-80호, 2007. 12.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1호나2목에 신설한 규정(방사선 조사한 원재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이 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동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은 200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부칙<제2008-36호, 2008. 6.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고자 할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칙<제2009-43호,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1-19호, 2011. 5.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호가목의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제6조제7호나목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가공·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제2012-138호, 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한 건강기능식품(원료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가공·수입(선적일 기준)한 건강기능식품(원료를 포함한다)은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제2013-74호, 2013. 4.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224호, 2013. 9.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였던 건강기능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은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제2014-31호, 2014. 2.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43호, 2014. 8.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건강기능식품 및 GMP 인증도안, 영양소 기준치 비율 표시는 제조 또는 수입 신고일 기준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제6조제1호가목 및 별표 2, 제6조제6호가목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칙<제2016-62호, 2016. 6.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 또는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은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2017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칙<제2018-34호, 2018. 5.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9-45호, 2019. 6.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호바목의 신설 규정은 202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이미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제2020-54호, 2020. 6. 23.>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호나목, 제5조제3호나목, 제6조제9호다목 및 제6조제1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영양 · 기능정보 표시요령과 방법

1. 영양 · 기능정보 표시내용(예시)

<예시 1>

① 영양 · 기능정보 [칸 삭제]		
② 1회 분량/1일 섭취량 : ○정(○mg)		
1회 분량/ 1일 섭취량 당	함 량	%영양성분기준치
③ 열량 150kcal		
탄수화물	23g	7%
당류	10g	
단백질	2g	3%
지방	6g	11%
나트륨	55mg	2%
④비타민 C 11mg 20%		
칼슘	20mg	7%
⑤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 ○mg		
⑥※%영양성분기준치 :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예시 2>

① 영양 · 기능정보 [칸 삭제]		
② 1회 분량/1일 섭취량 : ○정(○mg)		
1회 분량/ 1일 섭취량 당	함 량	%영양성분기준치
③ 열량 150kcal		
탄수화물	23g	7%
당류	10g	
식이섬유	3g	12%
단백질	2g	3%
지방	6g	11%
포화지방산	2g	13%
불포화지방산	3g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10mg	3%
나트륨	55mg	2%
④비타민 C 11mg 20%		
칼슘	20mg	7%
⑤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 ○mg		
⑥※%영양성분기준치 :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예시 3>

① 영양 · 기능정보 ② 1회 분량/1일 섭취량 : ○정(○mg) [칸 삭제]	1회 분량/ 1일 섭취량 당	함 량	%영양성분기준치	1회 분량/ 1일 섭취량 당	함 량	%영양성분기준치
	③ 열량 150kcal			단백질	2g	3%
	탄수화물	23g	7%	지방	6g	11%
	당류	10g		나트륨	55mg	2%
	④비타민 C 11mg 20%			칼슘	20mg	7%
	⑤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 ○mg					
	⑥※%영양성분기준치 :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예시 4>

① 영양 · 기능정보 [칸 삭제]	② 1회 분량/1일 섭취량 : ○정(○mg)
1회 분량/1일 섭취량 당 함량 : 열량 kcal, 탄수화물 ○g(○%), 당류 ○g, 단백질 ○g(○%), 지방 ○g(○%), 나트륨 ○mg(○%), 비타민 C ○mg(○%), 칼슘 ○mg(○%),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 ○mg	
⑦※()안의 수치는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임	

2. 표시방법

가. 공통사항

- 제품에 표시할 때에는 항목별 표시한 번호는 제외하고 표시항목만 표시하여야 한다.
- 글자모양은 8포인트 이상의 고딕체류로 표시하여야 한다.
- 열량, 영양성분명칭, 기능성분명칭은 굵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제품포장형태에 따라 예시 1부터 예시 3까지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만 예시 4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각 표시항목별 표시방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① <삭제 2008.6.25>

② 1회 분량/1일 섭취량 : 제품의 1회 분량 또는 1일 섭취량 당 중량 또는 용량과 섭취개수 등을 표시

③ 영양성분의 종류별로 명칭, 1회 분량 또는 1일 섭취량 당 함량, 1일 영양성분기준치(또는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탄수화물은 당류와 식이섬유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지방은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 제품에 첨가하거나 함유된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각의 명칭, 1회 분량 또는 1일 섭취량 당 함량,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영양성분외의 기능성분표시는 해당 제품의 대표적인 기능성분명칭(또는 기능성원료의 지표성분명칭)과 1회 분량 또는 1일 섭취량 당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능성원료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할 수 있다.

⑥ “%영양성분기준치”는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이라는 것을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⑦ 예시 4에 ()안의 수치는 1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이라는 것을 안내 표시 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 ③ 상단에는 1.0~1.5mm내외의 굵은 구분선을 사용하고, 표시사항 ④ 상단과 하단에는 0.5~0.8mm내외의 중간정도의 구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2]

GMP 도안



가. 도안의 크기비율

크기 비율 : 가로 : 세로 = 1 * 0.83

[별표 3]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

품 목	표 시 된 양	허용오차
인삼·홍삼제품	3g이하	5%
	3g초과 100g이하	3%
	100g초과 1000g이하	2%
	1000g초과	1%
인삼·홍삼제품 외의 건강기능식품	50g[ml]이하	4%
	50g[ml]초과 100g[ml]이하	3%
	100g[ml]초과 1000g[ml]이하	2%
	1000g[ml]초과	1%

6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광고 자율심의기구 운영규정

협회 규정(2019. 3. 19 제정)
 협회 규정(2019. 5. 3 개정)
 협회 규정(2021. 11. 15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자율심의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①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8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2.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심의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가의 건강기능식품정책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에 대한 표현이어야 한다.
3.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
4.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성 및 기능성에 관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또는 원료·성분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6. 법 제8조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7.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품명 및 제조업소명(수입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제조국 또는 생산국으로 한다) 및 판매업소명

나. 건강기능식품임을 알리는 내용

제4조(심의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표시·광고를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시·광고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율심의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시·광고내용

2.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수입신고증 사본(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필한 제품에 한함)

3. 제품설명서(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한함)

4.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심의 신청은 패키지, 신문, 잡지, 인쇄물, 인터넷, 홈쇼핑, 유선방송, 라디오 등 매체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매체구분	제출형식	글자크기	첨부자료
패키지	패키지 전개도·광고내용이 포함된 최종 광고물 형태	글자 10 포인트 이상 (A4기준)	심의 시 필요한 근거자료
신문/잡지			
인쇄물/기타 (QR코드, 전광판, 스크린도어 등)			
인터넷	광고의 직·간접적 표현에 대한 방송내용(기능성내용, 자막, 도표, 그림 등)이 포함된 최종 광고물 형태		
홈쇼핑			
유선방송/동영상			
라디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시 수수료는 별지 제2호와 같다.

제5조(심의 및 결과통보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심의를 신청받은 자율심의기구(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한 내용은 적합(신청한 내용 그대로 표시·광고할 수 있음), 수정적합(수정사항을 확인한 후 표시·광고할 수 있음), 부적합(신청한 사항의 과반이상 수정하거나 일부 내용이 수정할 수 없는 내용일 경우) 등으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처리 예정 기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이미지, 도형 및 심의 받은 광고물의 배치를 변경하는 등 단순한 변경이라도 최초 심의받은 내용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변경한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시·광고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율심의기구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매체나 광고제작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심의 받은 표시·광고내용
2. 변경하려는 표시·광고 내용
3. 기타 참고자료(품목제조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품목제조신고서 사본 제출)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통보받은 자율심의기구는 그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은 제외한다)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신청인은 변경신청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청한 내용이 처음 심의한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재심의) ① 신청인은 제5조에 따른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1. 재심의 신청취지 및 이유
2. 원심의 신청과 결정의 내용
3. 신청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및 증빙물

②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한 내용이 원심의 신청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동 재심의 신청서는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받은 자율심의기구는 제3조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재심의 신청을 기각, 원심의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를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인에게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제재처분의 긴급 심의) ① 자율심의기구는 제5조에 따라 심의한 표시·광고나 제6조에 따라 재심의한 사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어 긴급 확인심을 신청한 경우 지체없이 심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수수료는 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 심의기간은 그 해당 신청자의 행정제재 등의 처분에 앞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청문이나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청문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심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결과 표시) 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내용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표시·광고에 심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46 건강기능식품 표시 · 광고 가이드라인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표시 · 광고, 광고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라 표시·광고 할 수 있다.

구분	심 의 표 시	심의필도안
방송매체, 인쇄매체, 인터넷 등	○방송 중 자막 또는 멘트 등의 방법으로 「이 광고는 표시 ·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 ○심의필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자율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① 제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광고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자율심의기구에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해촉, 회의 및 의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부 칙(2019. 3.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심의 수수료는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건강기능식품 표시 · 광고 심의 수수료(제4조제3항관련)

가. 심의 신청 수수료

매체별	분 량	금액(원)
패키지	1~5페이지	60,000
	6페이지 이상	80,000
신문/잡지	1~2페이지	100,000
	3페이지 이상	150,000
인쇄물/기타 (QR코드, 전광판, 스크린도어 등)	1~5페이지	80,000
	6~10페이지	100,000
	11페이지 이상	150,000
인터넷	1~10페이지	80,000
	11~20페이지	120,000
	21페이지 이상	200,000
홈쇼핑	1~10페이지	80,000
	11~25페이지	150,000
	26페이지 이상	200,000
유선방송/동영상	1~2페이지	80,000
	3~5페이지	100,000
	6페이지 이상	150,000
라디오	1페이지	50,000
	2~3페이지	80,000
	4페이지 이상	100,000

나. 변경신청 수수료 : 20,000원

[별지 제3호서식]

표시·광고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영업소명칭 또는 상호		
	연 락 처	(☎) (FAX)	담 당 자		
심의사항	제 품 명		심의번호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품 명				
	원료 또는 성분함량				
	광고매체				
	단순 변경 수정 내용				
	기 타				
<p>「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운영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표시·광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자율심의기구의 장 귀하</p>					
<p>※ 구비서류</p> <p>1. 기 심의결과통보서 사본 1부</p> <p>2. 기 심의결과통보서에 따라 작성된 표시 또는 광고내용 원본 1부</p> <p>3. 변경신청하려는 표시 또는 광고내용 원본 1부</p> <p>4. 기타 참고자료 (품목제조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품목제조변경신고서 제출)</p>				수수료	
				20,000원	
결 정 사 항	접수처리() / 심의신청 요망 ()				

7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협회 규정 2019. 3.19 제정

협회 규정 2019. 5.3 개정

협회 규정 2019. 11.2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운영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이하 “자율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율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규정 수립에 관한 업무
2.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등에 관한 업무
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관리 등에 관한 업무
4. 그밖에 자율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구성) ① 자율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과로 나누어 심의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신규로 위촉된 위원 및 전문위원의 경우 호선에서 제외한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1명 이상을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수는 전체 심의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과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식품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자율심의기구의 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정책, 표시·광고, 기준·규격 및 평가 등 광고심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 등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표시·광고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제품을 개발·제조에 직접 참여한 자문·연구·용역 등을 한 전문가 및 광고신청인을 심의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표시·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심의내용 중 기능성 내용에 대한 작용기작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자율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4조(심의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의위원의 해촉) 자율심의기구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자율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심의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2.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심의위원이나 심의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6.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전문위원

② 심의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율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

제8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자율심의위원회의 심의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소집을 통보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자율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함에 있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어 자율심의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전문위원과 제6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9조(심의방법) ① 심의는 자율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은 자율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서면심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이 7명 미만으로 부족한 경우,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심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자율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인 및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자율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심의에 출석하여 신청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자율심의위원회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1조(비밀준수 등 의무)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은 자율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자율심의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등) 자율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심의위원, 전문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율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율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등과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19.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2018. 10. 17 제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2018. 10. 17 제정)」에 따라 자율심의위원으로 위촉한 자는 이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 5.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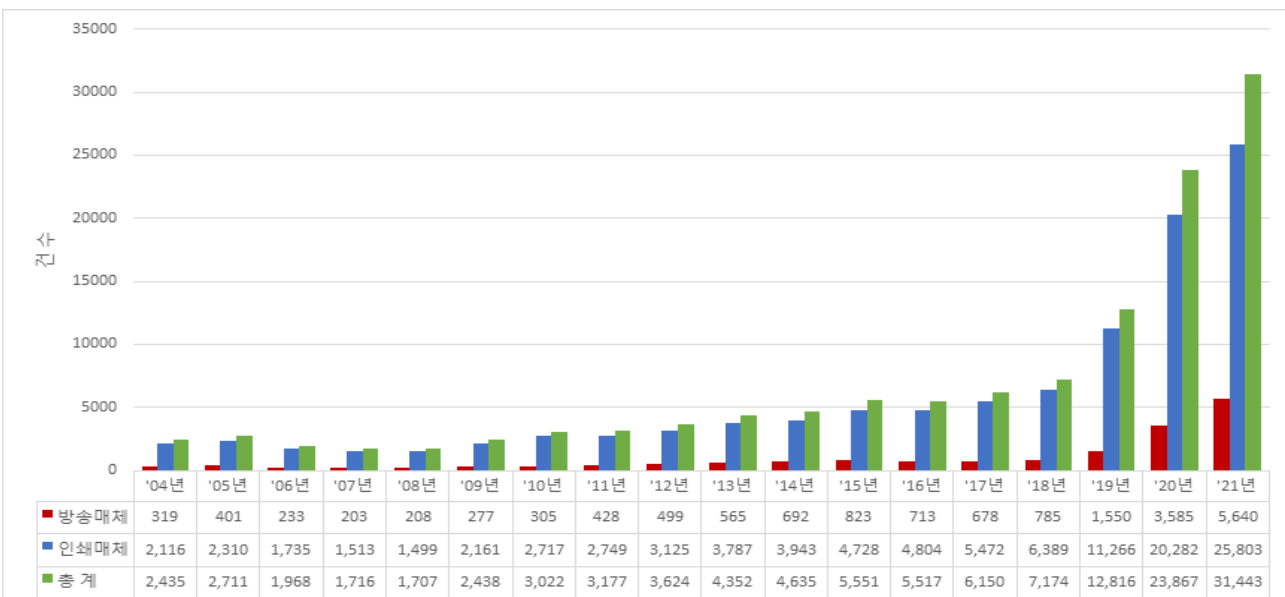
부 칙(2019.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II 표시 · 광고심의 현황

1 연도별 광고심의 현황

년 도	심의횟수	건 수		
		인쇄매체	방송매체	총 계
2004년	44	2,116	319	2,435
2005년	51	2,310	401	2,711
2006년	50	1,735	233	1,968
2007년	49	1,513	203	1,716
2008년	52	1,499	208	1,707
2009년	50	2,161	277	2,438
2010년	50	2,717	305	3,022
2011년	50	2,749	428	3,177
2012년	50	3,125	499	3,624
2013년	51	3,787	565	4,352
2014년	50	3,943	692	4,635
2015년	49	4,728	823	5,551
2016년	49	4,804	713	5,517
2017년	48	5,472	678	6,150
2018년	50	6,389	785	7,174
2019년	47	11,266	1,550	12,816
2020년	49	20,282	3,585	23,867
2021년	49	25,803	5,640	31,443



2 연도별 광고심의 결과 현황

년 도	총 계				인 쇄 매 체				방 송 매 체			
	계	적합	수정 적합	부적합	계	적합	수정 적합	부적합	계	적합	수정 적합	부적합
2021년	31,443	5,079 (16.2%)	25,818 (82.1%)	546 (1.7%)	25,803	4,389	21,158	256	5,640	690	4,660	290
2020년	23,867	3,178 (13.3%)	20,358 (85.3%)	331 (1.4%)	20,282	2,815	17,295	172	3,585	363	3,063	159
2019년	12,816	1,051 (8.2%)	11,434 (89.2%)	331 (2.6%)	11,266	968	10,098	200	1,550	83	1,336	131
2018년	7,174	1,181 (16.5%)	5,753 (80.2%)	240 (3.3%)	6,389	1,116	5,103	170	785	65	650	70
2017년	6,150	966 (15.7%)	4,959 (80.6%)	225 (3.7%)	5,472	904	4,412	156	678	62	547	69
2016년	5,517	1,100 (19.9%)	4,210 (76.3%)	207 (3.8%)	4,804	1,039	3,615	150	713	61	595	57
2015년	5,551	980 (17.7%)	4,403 (79.3%)	168 (3.0%)	4,728	917	3,686	125	823	63	717	43
2014년	4,635	795 (17.2%)	3,710 (80.0%)	130 (2.8%)	3,943	745	3,104	94	692	50	606	36
2013년	4,352	582 (13.4%)	3,593 (82.6%)	177 (4.0%)	3,787	527	3,139	121	565	55	454	56
2012년	3,624	517 (14.3%)	2,875 (79.3%)	232 (6.4%)	3,125	470	2,490	165	499	47	385	67
2011년	3,177	532 (16.7%)	2,406 (75.7%)	239 (7.5%)	2,749	477	2,109	163	428	55	297	76
2010년	3,022	699 (23.1%)	2,123 (70.3%)	200 (6.6%)	2,717	665	1,898	154	305	34	225	46
2009년	2,438	511 (21.0%)	1,768 (72.5%)	159 (6.5%)	2,161	483	1,558	120	277	28	210	39
2008년	1,707	452 (26.5%)	1,189 (69.7%)	66 (3.9%)	1,499	438	1,012	49	208	14	177	17
2007년	1,716	587 (34.2%)	1,073 (62.5%)	56 (3.3%)	1,513	558	912	43	203	29	161	13
2006년	1,968	518 (26.3%)	1,420 (72.2%)	30 (1.5%)	1,735	490	1,227	18	233	28	193	12
2005년	2,711	506 (18.7%)	2,068 (76.3%)	137 (5.1%)	2,310	478	1,745	87	401	28	323	50
2004년	2,435	444 (18.2%)	1,813 (74.5%)	178 (7.3%)	2,116	430	1,566	120	319	14	247	58

3 기능성 원료별 심의 결과 현황

< 2012년 및 2013년 상위 20개 품목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 광고 심의현황 >

(단위 : 건)

	2012년					2013년				
	원료명	적합	수정 적합	부적합	건	원료명	적합	수정 적합	부적합	건
1	영양소 ²⁾	193	921	68	1,182	영양소 ²⁾	282	1,113	53	1,448
2	개별인정형	73	516	56	645	개별인정형	62	458	42	562
3	홍삼	54	296	15	365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47	384	16	447
4	오메가-3지방산 함유 유지	65	281	12	358	홍삼	66	368	11	445
5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32	238	29	299	오메가-3지방산 함유 유지	19	242	8	269
6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26	93	9	128	프로바이오틱스	20	204	12	236
7	프로폴리스추출물	11	70	4	85	밀크씨슬추출물	12	66	3	81
8	루테인	3	64	1	68	프로폴리스추출물	8	73	0	81
9	식이섬유	5	58	4	67	루테인	5	72	2	79
10	N-아세틸글루코사민	5	44	4	53	은행잎추출물	5	52	2	59
11	쏘팔메토열매추출물	6	42	4	52	공액리놀레산	7	39	5	51
12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14	34		48	디메틸설폰(MSM)	2	43	6	51
13	글루코사민	8	28	1	37	녹차추출물	4	38	4	46
14	녹차추출물	3	24	2	29	쏘팔메토열매추출물	3	39	1	43
15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24	2	26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4	36	0	40
16	코엔자임Q10	2	20	3	25	N-아세틸글루코사민	2	38	0	40
17	알로에전잎	3	20		23	글루코사민	1	33	1	35
18	공액리놀레산		18	3	21	알로에겔	3	29	1	33
19	알로에겔	4	14	3	21	코엔자임Q10	2	25	0	27
20	대두이소플라본	1	12	4	17	테아닌	3	22	1	26
	기타	8	58	8	75	기타	25	219	9	253
	계	517	2,875	232	3,624	계	582	3,593	177	4,352

2)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따라 “영양소”로 분류된 모든 품목

< 2014년 및 2015년 상위 20개 품목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 광고 심의현황 >

(단위 : 건)

	2014년					2015년				
	원료명	적합	수정 적합	부적합	건	원료명	적합	수정 적합	부적합	건
1	영양소 ²⁾	308	898	46	1,252	영양소 ²⁾	347	1,106	48	1,501
2	개별인정형	88	786	24	898	개별인정형	107	983	46	1,136
3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78	413	11	502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81	429	12	522
4	홍삼	75	275	11	361	홍삼	100	307	17	424
5	가르시니아카모보지아추출물	42	229	7	278	EPA 및 DHA 함유 유지	61	227	10	298
6	EPA 및 DHA 함유 유지	23	221	2	246	가르시니아카모보지아추출물	38	253	4	295
7	프로폴리스추출물	29	91	1	121	프로폴리스추출물	34	114	1	149
8	스피루리나	5	87	1	93	밀크씨슬추출물	25	85	2	112
9	밀크씨슬추출물	20	64	1	85	루테인	19	92	0	111
10	디메틸설펜(MSM)	20	52	6	78	스피루리나	9	95	3	107
11	루테인	14	55	0	69	디메틸설펜(MSM)	32	62	5	99
12	차전자피식이섬유	8	41	3	52	코엔자임Q10	16	55	3	74
13	은행잎추출물	8	41	2	51	차전자피식이섬유	9	63	1	73
14	코엔자임Q10	6	45	0	51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10	37	1	48
15	녹차추출물	5	32	4	41	은행잎추출물	5	41	0	46
16	글루코사민	5	26	1	32	키토산/키토올리고당	9	34	1	44
17	알로에겔	2	29	1	32	녹차추출물	5	36	2	43
18	키토산/키토올리고당	2	30	0	32	쏘팔메토열매추출물	8	31	1	40
19	쏘팔메토열매추출물	3	28	0	31	알로에겔	3	34	0	37
20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2	24	3	29	공액리놀레산	6	29	0	35
	기타	52	243	6	301	기타	56	290	11	357
	계	795	3,710	130	4,635	계	980	4,403	168	5,551

< 2016년 및 2017년 상위 20개 품목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 광고 심의현황 >

(단위 : 건)

	2016년					2017년				
	원료명	적합	수정 적합	부적합	건	원료명	적합	수정 적합	부적합	건
1	영양소 ²⁾	327	1,081	88	1,496	영양소 ²⁾	245	1,175	67	1,487
2	개별인정형	129	826	34	989	개별인정형	107	852	43	1,002
3	홍삼	143	369	19	531	홍삼	134	488	14	636
4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120	367	9	496	프로바이오틱스	89	481	25	595
5	가르시니아카모보지아추출물	60	244	10	314	EPA 및 DHA 함유 유지	50	333	10	393
6	EPA 및 DHA 함유 유지	52	212	5	269	가르시니아카모보지아추출물	50	278	12	340
7	프로폴리스추출물	21	108	1	130	루테인	49	138	1	188
8	루테인	28	93	1	122	밀크씨슬추출물	45	135	3	183
9	밀크씨슬추출물	34	84	2	120	녹차추출물	14	129	5	148
10	디메틸설펜(MSM)	28	67	7	102	프로폴리스추출물	20	109	2	131
11	스피루리나	12	79	0	91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10	75	2	87
12	녹차추출물	7	65	6	78	디메틸설펜(MSM)	18	62	5	85
13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7	66	2	75	코엔자임Q10	9	73	2	84
14	코엔자임Q10	16	57	0	73	쏘팔메토열매추출물	12	65	3	80
15	차전자피식이첨유	9	51	4	64	차전자피식이첨유	13	40	2	55
16	쏘팔메토열매추출물	10	43	0	53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8	40	2	50
17	공액리놀레산	5	43	0	48	스피루리나	2	46	0	48
18	알로에전잎	11	36	1	48	NAG(N-아세틸글루코사민)	10	34	3	47
19	은행잎추출물	9	35	0	44	글루코사민	11	30	1	42
20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5	33	4	42	은행잎추출물	8	29	4	41
	기타	67	251	14	332	기타	62	347	19	428
	계	1,100	4,210	207	5,517	계	966	4,959	225	6,150

< 2018년 및 2019년 상위 20개 품목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 광고 심의현황 >

(단위 : 건)

	2018년					2019년				
	원료명	적합	수정 적합	부적합	건	원료명	적합	수정 적합	부적합	건
1	영양소 ²⁾	346	1,172	56	1,574	영양소 ²⁾	374	2,479	72	2,925
2	개별인정형	131	958	38	1299	개별인정형	119	2,187	69	2,375
3	프로바이오틱스	89	611	17	717	프로바이오틱스	87	1,387	36	1,481
4	홍삼	147	538	30	715	홍삼	130	1,358	22	1,022
5	가르시니아카보지아추출물	71	425	15	511	EPA 및 DHA 함유 유지	66	738	15	819
6	EPA 및 DHA 함유 유지	60	326	14	400	가르시니아카보지아추출물	32	556	24	612
7	마리골드꽃추출물	65	208	4	277	프락토올리고당	25	328	3	355
8	녹차추출물	34	170	6	210	밀크씨슬추출물	26	309	5	340
9	밀크씨슬추출물	40	165	3	208	녹차추출물	19	276	8	303
10	프로폴리스추출물	15	108	2	125	마리골드꽃추출물	35	223	3	261
11	디메틸설펜(MSM)	29	80	4	113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10	202	12	224
12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11	87	8	106	프로폴리스추출물	9	208	4	221
13	코엔자임Q10	19	68	2	89	디메틸설펜(MSM)	20	178	7	205
14	히알루론산	12	66	6	84	코엔자임Q10	6	136	0	142
15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11	68	4	83	헤마토코쿠스추출물	14	119	6	139
16	프락토올리고당	14	60	0	74	알로에전잎	5	128	1	134
17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3	45	8	56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6	111	5	122
18	쏘팔메토열매추출물	4	47	0	51	히알루론산	9	87	1	97
19	NAG(N-아세틸글루코사민)	2	47	1	50	차전자피식이섬유	4	89	2	95
20	헤마토코쿠스추출물	9	34	4	47	테아닌	7	77	8	92
	기타	69	470	18	385	기타	40	698	25	763
	계	1,181	5,753	240	7,174	계	1,051	11,434	331	12,816

< 2020년 및 2021년 상위 20개 품목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 광고 심의현황 >

(단위 : 건)

	2020년					2021년				
	원료명	적합	수정 적합	부적합	건	원료명	적합	수정 적합	부적합	건
1	개별인정형	579	4,537	100	5,216	개별인정형	1,103	6,602	193	7,898
2	영양소 ²⁾	892	4,151	60	5,103	영양소 ²⁾	1,212	4,920	74	6,206
3	프로바이오틱스	415	2,617	23	3,055	프로바이오틱스	711	3,270	62	4,043
4	홍삼	283	1,503	21	1,807	EPA 및 DHA 함유 유지	475	1,947	46	2,468
5	EPA 및 DHA 함유 유지	176	1,244	11	1,431	홍삼	343	1,457	24	1,824
6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65	682	14	761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81	802	28	911
7	프락토올리고당	94	658	4	756	프로폴리스추출물	60	651	8	719
8	프로폴리스추출물	49	662	11	722	밀크씨슬추출물	128	550	5	683
9	밀크씨슬추출물	69	499	7	575	프락토올리고당	90	569	17	676
10	마리골드꽃추출물	92	398	4	494	녹차추출물	78	504	16	598
11	녹차추출물	37	387	8	432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81	449	13	543
12	디메틸설폰(MSM)	50	284	11	345	디메틸설폰(MSM)	56	455	4	515
13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46	274	4	324	마리골드꽃추출물	78	344	0	422
14	테아닌	54	233	5	292	테아닌	78	334	5	417
15	코엔자임Q10	27	195	1	223	알로에겔	67	264	0	331
16	히알루론산	38	155	3	196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36	289	3	328
17	헤마토코쿠스추출물	9	159	1	169	헤마토코쿠스추출물	46	242	0	288
18	NAG(N-아세틸글루코사민)	13	140	1	154	히알루론산	46	210	1	257
19	알로에겔	21	132	1	154	코엔자임Q10	29	195	4	228
20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18	133	2	153	은행잎추출물	31	171	2	204
	기타	151	1315	39	1505	기타	250	1,593	41	1,884
	계	3,178	20,358	331	23,867	계	5,079	25,818	546	31,443

4 개별인정 기능성 내용별 광고심의 현황

< 2012년, 2013년 개별인정 기능성 내용별 기능성 표시 · 광고 심의현황 >

(단위 : 건)

	2012년		2013년	
	기능성내용	건수	기능성내용	건수
1	간 건강	98	갱년기 여성 건강	107
2	피부 보습	97	간 건강	68
3	관절/뼈 건강	80	피부 보습	63
4	갱년기 여성건강	72	체지방 감소	61
5	체지방 감소	50	관절/뼈 건강	29
6	기억력 개선	38	면역 과민반응 개선	27
7	혈당 조절	34	혈압 조절	26
8	피로개선	32	기억력 개선	23
9	혈압 조절	19	눈 건강	23
10	장 건강	16	피로개선	23
11	과민 면역반응 완화	15	콜레스테롤 개선	21
12	눈 건강	15	항산화에 도움	20
13	혈행개선	13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고 있어 같은 양의 쌀밥 제품에 비해 식후 당의 흡수를 완만하게 하여 혈당의 증가를 염려하는 사람에게 도움	14
14	면역력 증진	12	혈당 조절	12
15	충치발생 감소	12	혈행 개선	9
16	콜레스테롤 개선	11	장 건강	8
17	항산화에 도움	9	운동수행능력 향상	7
18	요로 건강	6	면역 기능 개선	5
19	긴장완화	5	충치 발생 위험 감소	5
20	베노기능 개선	4	칼슘 흡수 도움	4
21	운동 수행 능력 향상	4	베노기능 개선	2
22	칼슘흡수	2	산화 스트레스로 부터 인체 보호	2
23	혈중 중성 지방 개선	1	요로 건강	2
24	-	-	지방 소화에 도움	1
	합계	645	합계	562

< 2014년, 2015년 개별인정 기능성 내용별 기능성 표시 · 광고 심의현황 >

(단위 : 건)

	2014년		2015년	
	기능성내용	건수	기능성내용	건수
1	체지방 감소	216	체지방 감소	315
2	갱년기 여성 건강	103	갱년기 여성 건강	100
3	관절/뼈 건강	83	면역 기능 개선	83
4	위 건강	52	기억력 개선	69
5	혈행 개선	50	관절/ 뼈 건강	61
6	면역기능 증진	46	콜레스테롤 개선	52
7	간 건강	41	혈행개선	52
8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34	피부 보습	51
9	기억력 개선	33	눈 건강	38
10	피부보습	30	항산화	37
11	피로개선	29	간 건강	29
12	혈압 조절	25	어린이 키성장	29
13	갱년기 남성 건강	22	여성 질 건강	23
14	면역과민반응 개선	22	수면의 질 개선	21
15	콜레스테롤 개선	16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	20
16	월경 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	15	장 건강	20
17	혈당 조절	14	위 건강	19
18	눈 건강	13	갱년기 남성 건강	16
19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고 있어 같은 양의 쌀밥 제품에 비해 식후 당의 흡수를 완만하게 하여 혈당의 증가를 염려하는 사람에게 도움	9	과민반응에 의한 코 상태개선	15
20	운동수행능력 향상	9	운동수행능력 향상	12
21	장 건강	8	혈압 조절	10
22	항산화에 도움	8	월경 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	8
23	면역조절에 도움	3	요로 건강	6
24	질 건강	3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고 있어 같은 양의 쌀밥 제품에 비해 식후 당의 흡수를 완만하게 하여 혈당의 증가를 염려하는 사람에게 도움	5
	합계	884	합계	1,091

< 2016년, 2017년 개별인정 기능성 내용별 기능성 표시 · 광고 심의현황 >

(단위 : 건)

	2016년		2017년	
	기능성내용	건수	기능성내용	건수
1	체지방 감소	257	체지방 감소	329
2	갱년기 여성 건강	126	갱년기 여성 건강	116
3	피부 건강	79	피부 건강	93
4	관절/뼈 건강	74	관절/뼈 건강	80
5	눈 건강	61	장 건강	68
6	장 건강	56	면역기능 개선	67
7	기억력 개선	47	어린이 성장발육	40
8	면역기능 개선	40	위 건강/소화기능	31
9	위 건강	30	간 건강	25
10	어린이 키성장	27	눈 건강	24
11	콜레스테롤 개선	26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22
12	여성 질 건강	25	혈당 조절	16
13	갱년기 남성 건강	24	혈행 개선	16
14	혈행 개선	18	갱년기 남성 건강	14
15	간 건강	18	기억력 개선	11
16	혈당 조절	14	운동수행 능력	10
17	혈압 조절	10	여성 질 건강	8
18	과민반응에 의한 코 상태개선	10	인지 능력 향상	7
19	피로 개선	10	항산화	7
20	항산화	8	혈압조절	6
21	월경 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생애 개선	7	칼슘 흡수 촉진	5
22	운동수행능력 향상	7	요로 건강	3
23	수면의 질 개선	4	수면질개선	2
24	플라그 감소/ 산생성 억제/ 충치균 성장저해	3	치아 건강	2
	합계	1,009	합계	1,002

< 2018년, 2019년 개별인정 기능성 내용별 기능성 표시 · 광고 심의현황 >

(단위 : 건)

	2018년		2019년	
	기능성내용	건수	기능성내용	건수
1	체지방 감소	379	체지방 감소	606
2	피부건강	169	피부건강	333
3	눈 건강	157	눈 건강	294
4	장 건강	103	장 건강	185
5	관절/뼈건강	73	관절/뼈건강	156
6	갱년기 여성 건강	69	어린이 키 성장	139
7	어린이 성장발육	42	갱년기 여성 건강	106
8	항산화	30	간 건강	71
9	위 건강/소화기능	30	수면	71
10	간 건강	29	갱년기 남성 건강	55
11	면역기능개선	28	위 건강/소화기능	55
12	갱년기 남성 건강	26	요로건강	35
13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21	항산화	29
14	과민피부상태개선	18	혈행개선	29
15	혈행개선	17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27
16	혈압조절	12	치아 건강	27
17	과민반응에 의한 코 상태 개선	10	면역기능개선	22
18	수면질 개선	9	칼슘 흡수 촉진	20
19	피부보습	9	정자 운동성	17
20	칼슘 흡수 촉진	8	여성질건강	17
21	기억력개선	8	기억력개선	16
22	정자 운동성	7	과민반응에 의한 코 상태 개선	10
23	요로건강	6	혈당조절	10
24	기타	39	기타	45
	합계	1,299	합계	2,375

< 2020년, 2021년 개별인정 기능성 내용별 기능성 표시 · 광고 심의현황 >

(단위 : 건)

	2020년		2021년	
	기능성내용	건수	기능성내용	건수
1	체지방감소	991	체지방감소	1,633
2	피부건강	953	피부건강	1,501
3	눈건강	547	눈건강	945
4	장건강	526	장건강	542
5	갱년기여성건강	292	관절/뼈건강	441
6	수면건강	278	여성질건강	347
7	관절/뼈건강	252	갱년기여성건강	344
8	어린이키성장	191	어린이키성장	332
9	여성질건강	168	수면건강	322
10	위건강/소화기능	152	위건강/소화기능	305
11	항산화	121	과민반응에의한코상태개선	183
12	면역기능개선	93	면역기능개선	151
13	간건강	90	간건강	136
14	기억력개선	86	기억력개선	103
15	혈중콜레스테롤개선	59	인지능력개선	77
16	갱년기남성건강	58	근력개선	71
17	과민반응에의한코상태개선	53	항산화	70
18	요로건강	45	갱년기남성건강	61
19	혈행개선	44	요로건강	57
20	근력개선	43	혈중콜레스테롤개선	50
21	인지능력개선	41	혈당조절	39
22	정자운동성	24	혈행개선	36
23	칼슘흡수촉진	18	정자운동성	21
24	기타	91	기타	131
	합계	5,216	합계	7,898

Ⅲ 광고시안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품명은 품목제조신고증/수입신고증에 기재된 명칭으로 광고할 것

제품명 사용 시 주의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4호, 2020.6.2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및 다른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음.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① 인정받은 기능성을 벗어나는 내용이나 이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 사용
예시) 스마트 오메가-3, Brain Up Omega-3, 스터디 파워 DHA, SUPER BRAIN OMEGA-3(EPA및DHA함유유지제품), Bone Guard, Bone Defender(글루코사민제품), 자기 전에 먹는 다이어트, 숙면 다이어트(CLA제품), Arthro-Joint&Muscle(글루코사민제품), I-Q UP, B-Q UP, S-Q UP, 디톡스, 다이톡스(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식이섬유제품 등), 덴트 OO(프로폴리스제품), 수험생 프로젝트(홍삼제품) 등
 - ② 제품에 사용된 부원료의 명칭이나 성분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
예시) 블루베리 비타민C(비타민C제품), 레몬 비타민(영양보충용제품), 홍삼녹용 영지프리미엄(홍삼제품), GARLIC TOCOPHEROL-E, 셀프케어 설잠수, 홍삼초 나리아신셀렌(나리아신·셀렌제품), 삼바디 홍삼다이어트(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제품) 등
 - ③ 특정계층 및 직위에 대한 명칭 사용
예시) 임산부, 당뇨환자, 영업과장, 수험생(학생)
 - ④ 기능성과 관련 없는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
예시) Ginsenoside Rg3(홍삼제품), Multi Omega369(EPA및DHA함유유지제품)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예시) 경옥고, 공진단, 총명탕, 십전대보탕, 동의보감, 한방, 메디컬, 클리닉, 홀몬 파워, 하트세이버, 홍센그라, 홍센과워그라, 비타플루, 힐링스 비타 등
- 의사, 약사, 대학교수 등이 제품을 보증, 공인, 추천하는 내용(단, 개발자인 경우 제외)

2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시켜 광고할 것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7조(광고의 기준) 규정에 따라 식품 등을 광고할 때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시켜 광고하여야 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1. 식품등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수입식품등의 경우 제조국 또는 생산국) 및 판매업소명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3 건강기능식품임을 알리는 내용을 포함시켜 광고할 것

4 주원료(기능성원료)와 부원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광고할 것

- 표시(패키지) 매체
 - ① 표시는 원료명 및 함량란을 제외하고 부원료의 명칭 또는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부원료의 사진 및 이미지 등의 표시는 할 수 없음.
- 표시 외 광고(인터넷, 잡지 등) 매체
 - ① 배합된 원재료를 나열할 경우, 주원료와 부원료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부원료의 단순 함유 사실만 표현할 수 있음.
 - ③ 주원료의 인정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부원료의 기능성을 암시 또는 강조표현은 광고 표현할 수 없음.
 - ④ 부원료가 주원료로 인식되지 않도록 주원료의 글자크기, 도안 보다 작게 할 것

5 특허명칭 및 내용은 인정된 기능성 범위 내에서 광고할 것

- 주원료·최종제품에 대한 특허명칭의 표현은 인정된 기능성 내용일 경우에만 광고 표현할 수 있음.
- 인정된 기능성 이외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 표현할 수 없음.
- 제품의 제법 관련 특허내용은 광고 표현할 수 있음.
- 부원료의 특허명칭 및 내용은 광고 표현할 수 없음.
- 특허출원명칭 및 내용은 광고 표현할 수 없음.

6 건강기능식품에 맞는 용어 선택할 것

올바르지 못한 용어	올바른 용어
식품, 건강식품, 건강기능성식품, 기능성제품,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영양보조제, 보충제	영양보충용제품
비타민제 / 칼슘제, 칼슘보충제 등	비타민보충용제품 / 칼슘보충용제품 등
알약	정제
임상시험	인체적용시험
약국용, 병원용	약국 내 건강기능식품코너, 병원 내 건강기능식품코너
약용식물, 약용작물	전통식물
복용	섭취
처방	배합
효능, 효과	기능
OOO제약회사, OOO약품	사업부문을 명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임을 명시할 것

7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은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내용은 제외하여 신청 또는 광고할 것

8 학술문헌의 연구내용은 과학적 근거자료에 의한 사실 그대로 인용하여 광고할 것

- 연구자료(그래프, 도표, 그림 등)를 광고에 인용하고자하는 경우, 자료 원문에 사용된 그래프 등을 그대로 인용하여야 하며, 출처, 시험조건, 시험 대상자수 등을 명시하고, '인체적용시험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함께 광고할 것
- 연구자료는 원문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만 표현하여야 하며, 편집(수정, 삭제, 보완 등)하거나 일부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 인용할 수 없음.
- 영문의 시험결과(도표, 그래프) 내용은 한글로 번역한 내용을 별도 심의 받아 광고할 것
- 기능성 원료의 시험관/동물시험/인체적용시험 확인내용이 제품의 기능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광고할 것
- 개별인정형원료의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광고에 인용하고자하는 경우 해당 시험결과(도표, 그래프)가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광고에 표현 할 수 있음.

- 식약처 확인결과 기능성원료 인정 시 검토되었던 내용일 경우
- 기능성 범위 내 바이오마커일 경우
- 대조군 대비 유의성 있는 데이터일 경우

- 시험관(동물)시험을 광고에 인용하고자하는 경우 해당 시험결과가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광고에 표현 할 수 있음.

- SCI급에 준하는 논문 또는 기능성 원료 심사 당시 제출한 서류
- 기능성 범위 내 바이오마커일 경우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는 바이오마커는 불가)
- 대조군 대비 유의성 있는 데이터일 경우

9

제품의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질병, 증상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광고할 것

10

건강정보는 제품정보와 연결되지 않도록 한 곳에 모아 맨 뒤로 배열시켜 구획을 나누어 광고하며, 출처를 제공하여 함께 광고할 것

- 건강정보는 인정된 기능성 범위의 통계청,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 조사와 같은 국민보건과 관련 있는 정보나 통계자료(표, 그래프 등)를 인용하여 광고할 것
- 건강정보는 공신력 있는 자료(학술문헌, 통계자료 등)의 출처를 제공하여 함께 광고할 것
- 건강정보는 '본 정보는 제품정보와 관련 없는 내용'임을 함께 명시할 것

11

방송광고는 화면구성에 따른 콘티를 작성하여 광고할 것

- 광고 내용에 해당되는 이미지 작성이 반드시 필요함.

비디오	오디오(멘트)	자막
방송내용에 맞는 화면구성 콘티 및 이미지 삽입		

참고자료 정보사이트 안내

- <http://www.foodsafetykorea.go.kr/>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 <http://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IV 표시 · 광고심의 가이드라인

1 기본 원칙

가. 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가정책에 기여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이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 건강정책과 소비자보호에 대한 국가정책에 기여하여야 한다.
- 동 법률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익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하고, 「기능성을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유용한 보건용도가 있는 양질의 건강기능식품과 이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는 식약처장의 과학적 평가체계에 의해 인정된 사실에 근거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과학적 증명자료는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과학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증명 또는 합의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소비자에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제품에 대한 합리적 선택 기회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 소비자에게 의약품이나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 등에 관한 인정기준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동 법률의 적용기준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동 법률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세부 기준

가. 학술문헌의 연구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과학적 근거자료에 의한 객관적 사실을 표현하여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기능성 등에 관한 연구내용의 인용은 과학적 실증과 객관적 사실 증명이 필요하므로 국내외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어야 한다.

예) 국내 학술문헌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문헌, 외국 학술문헌은 SCI(Science Citation Index) 및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에 등록된 학술지와 이와 동등한 수준의 연구자료 이어야 한다.

【참고】 SCI 및 SSCI 등재 학술문헌 확인 방법 : 홈페이지 참고
(<http://www.thomsonreuters.com>)

(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학술문헌의 인용은 식약처장이 인정한 해당 제품 또는 주원료(성분)의 기능성 내용에 한하여 연구내용을 표현 할 수 있다.

예) 학술문헌이 (1)내용과 같이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내용은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문헌의 연구내용을 인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아울러 연구내용이 질병의 치료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3) 인체적용시험의 연구내용은 과학적 근거자료에 의한 사실 그대로를 인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1)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인체의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과학적 증명을 통해 인정한 내용으로 인체적용시험의 연구내용을 허위·과대함 없이 사실 그대로 인용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학술문헌의 연구자료(그래프, 도표)는 원문자료 그대로 또는 원문 고유의 의미가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 연구자료는 원문에 근거하여 명확한 사실만을 표현하여야 하며, 연구자료를 편집(수정, 삭제, 보완 등)하거나 일부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문 고유의 의미가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허위·과대 또는 오도할 우려가 없는 객관적 사실에 한하여 편집하여 표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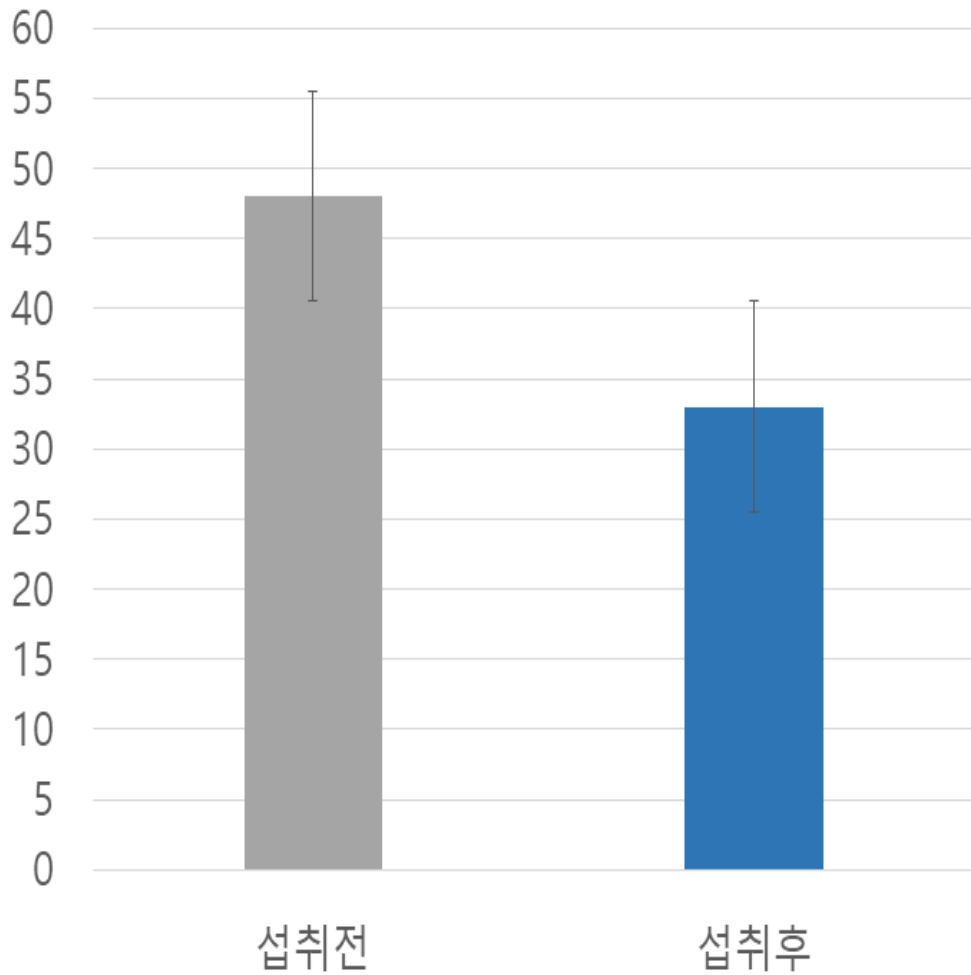
(5) 인체시험 결과를 광고에 인용하는 경우

① 기능성 범위 내 바이오마커로 대조군 대비 유의성이 있어야 한다.

② 강조표현(하이라이트, 강조박스, 밑줄, 다른 글씨크기·굵기·색채 등)을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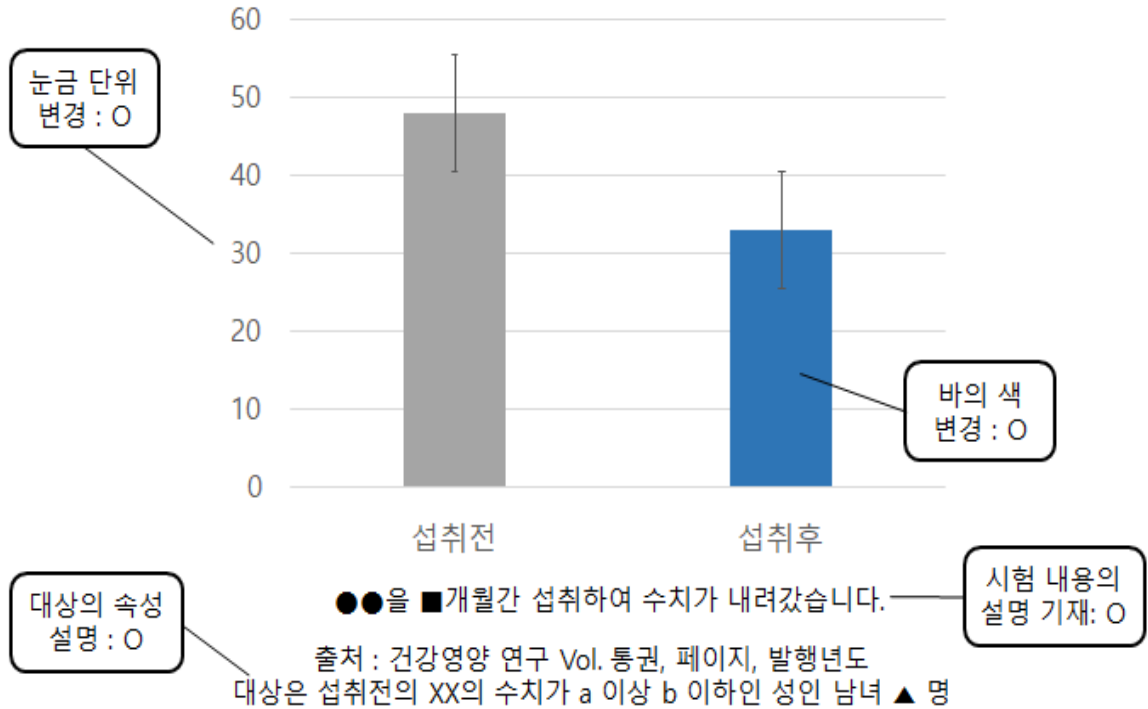
- ③ 특정 수치를 광고하는 경우 반드시 원문(그래프 또는 표)을 제시해야 하며, 표와 그래프의 글씨크기는 특정수치와 같거나 크게 한다.
 - ④ ‘기능성 원료인 000의 인체시험결과’ 를 함께 명시한다.
 - ⑤ ‘인체시험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 을 함께 광고한다.
- (6) 시험관(동물)시험 결과를 광고에 인용하는 경우
- ① 기능성 범위 내 바이오마커로 대조군 대비 유의성이 있어야 한다.
 - ② 강조표현(하이라이트, 강조박스, 밑줄, 다른 글씨크기·굵기·색채 등)을 할 수 없다.
 - ③ 인체적용시험결과에서 유의성이 없는 바이오마커는 시험관(동물)시험에서 허용할 수 없다.
 - ④ 특정 수치는 광고할 수 없다.
 - ⑤ 인체적용시험 확인내용과 관련 있는(기능성평가가이드 기준) 시험관(동물)시험 내용을 기능성평가가이드에 기재된 바이오마커로 인용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단, 인체적용시험 확인내용과 관련 없는(기능성평가가이드 기준) 바이오마커라 하더라도 인체시험과의 관련성이 판단된다면 예외적으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시험관(동물)시험결과 000 개선이 확인되었으나 인체에는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함께 광고한다.
- (7) 그래프(또는 표)를 편집하는 경우
- ① 소비자에게 오인을 주는 극단적인 축의 스케일 변경(트리밍)은 할 수 없다.
 - ② 보기 편리함을 고려하여 눈금 단위의 변경, 선 굵기의 변경, 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 ③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 근처에 시험 내용과 결과의 설명을 할 수 있다.
 - ④ 표를 그래프로 또는 그래프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예 : 막대 그래프를 꺾은선 그래프로 변경하는 것 등)은 할 수 있다.
 - ⑤ 해석의 결과에 남녀로 차이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효과를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 쪽만을 채택하는 것 등은 할 수 없다.
 - ⑥ 시험 내용에 관계없는 설명 및 제품정보는 기재할 수 없다.
 - ⑦ 데이터의 출처, 시험의 개요 등에 대해서 보기 편리하고, 알기 쉽도록 문자의 크기 등을 고려할 것

[원문의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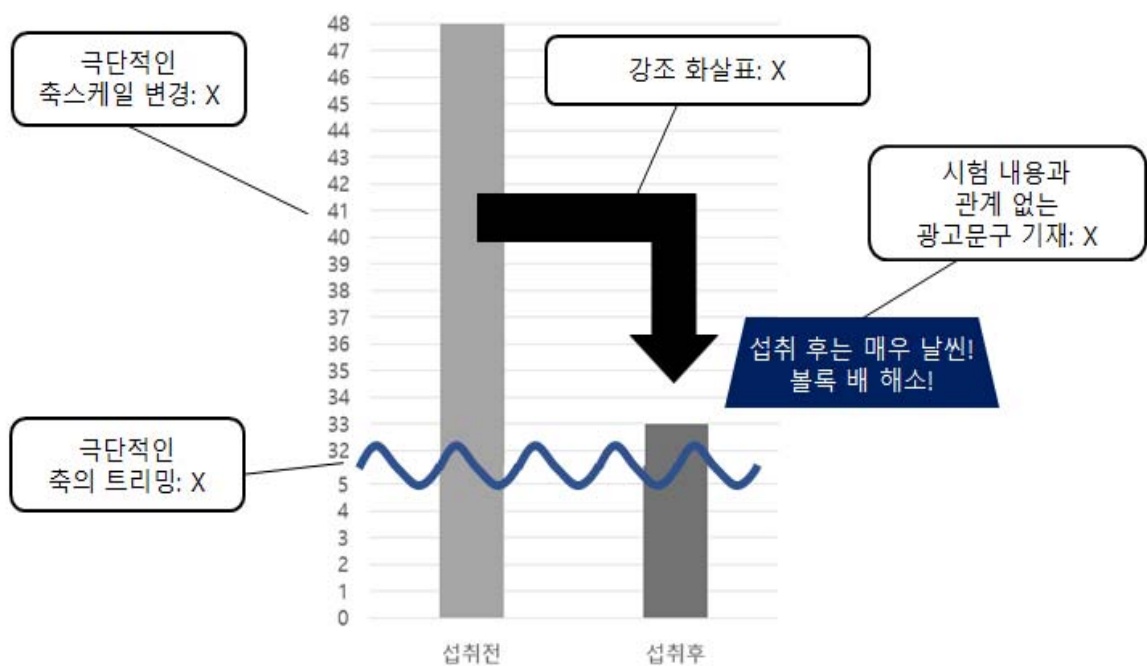


출처 : 건강영양 연구 Vol. 통권, 페이지, 발행년도

[좋은 예]



[나쁜 예]



나. 특허 등록된 제품 또는 원료(성분)의 제조방법, 조성물, 용도 등에 관한 특허의 명칭 및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 내용의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표현할 수 없다.

(1) 특허의 제조방법, 조성물 등에 관한 특허 취득 관련내용을 객관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제품의 안전성, 기능성 등 보건용도에 대한 표현은 과학적 실증이 필요하므로 법률에 근거하여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예1) 특허법은 안전성, 기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고 발명을 장려·육성·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따라서 해당제품의 안전성, 기능성 등의 과학적 실증을 확보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예2) 특허를 출원한 사실만으로 특허출원의 명칭 등을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내용을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2)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 내용은 단지 “조성물 등”에 대한 특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당식품의 “조성물 등”이 특정용도의 효능·효과(또는 기능성)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뼈 형성 촉진 조성물”이라는 특허 내용은 뼈 형성을 조성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특허이지, 그 제품이 뼈 형성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3) 특허의 명칭 및 내용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질병명, 질병의 증상·증후 등의 효능·효과에 대한 내용이면 관련 내용을 인용하여 표현 할 수 없다.

예) “아토피성 피부염 예방 및 치료용 제조방법”, “머리통증 치료에 효능이 있는 식품 조성물”에서 특허내용 중 질병명(피부염), 질병증상(머리통증)이 기재되어 질병 치료목적의 의약품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식품의 기능이 아닌 의약품 효능에 해당된다.

(4) 특허의 명칭에 기능성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제품 또는 주원료(성분)가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에 한하여 표현 할 수 있다.

예) 건강기능식품은 해당제품 또는 주원료(성분)별로 과학적 검증 절차를 거쳐 기능성 내용을 식약처장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 내용이거나 부원료(성분)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특허내용을 표현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해 허위·과대이거나 주원료의 기능성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관련내용을 표현 할 수 없다.

다. 서적, 통계자료, 언론자료 등 일반적인 정보자료의 인용은 해당제품의 기능성과 관련하여 공익 또는 교육목적의 객관적 사실을 제품정보와 일반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1) 해당제품의 기능성 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서적, 통계자료, 언론자료 등 일반적인 정보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제품 정보와 일반정보를 구분하고 일반정보를 “건강정보”, “과학정보” 등의 제목 하에 관련 자료를 표현 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에 관한 정보자료의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제품이 질병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여야 한다.

예1) “○○ 주원료가 혈행개선에 도움” 을 주는 제품인 경우 객관적인 심혈관 관련 건강정보 및 보건통계자료는 인용이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가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허용하지 않는다.

예2) “현대인은 불규칙한 식생활,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 “의 공익 적 내용과 국민보건질환 등 정보자료를 인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제품의 기능성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2) TV, 신문 등의 언론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객관적 사실 자료에 근거하여 표현되어야 한다.

예1) TV에 소개된 체험사례나 인터뷰, 특정고객에 의한 성공적인 체험담은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에 한하여 표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제품의 기능성내용이 아니거나 질병치료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현 할 수 없다.

예2) 언론 보도내용이 과학적으로 증빙되지 않은 내용으로 기사화되거나 방송 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으로 합의된 사실이 아닌 보도제목 및 내용은 광고에 표현 할 수 없다.

(3) 해당제품의 기능성 내용과 관련하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소비자 정보차원에서 인용하는 경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 대한 내용이 해당 전문가에 의해 합의된 과학적 근거자료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해당 제품이 질병의 증상·증후와 관련하여 질병 치료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기재해서는 아니된다.

(4) 소비자의 체험담이나 모니터의 의견 등의 실례를 수집한 조사결과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법으로 상당수의 샘플을 선정해 작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실시하는 등 통계적으로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5)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와 기능성 내용에 관련된 통계청, 보건복지부의 국민 건강·영양 조사와 같은 국민보건과 관계한 일반적인 정보나 통계 자료(문장, 표, 그래프

등)는 광고에 건강정보로 인용할 수 있다. 이 때는 제품정보와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6) 기호·식감 등에 대한 앙케이트나 모니터 결과는 광고에 인용할 수 있다. 이 때는 조사 실시 기관, 방법, 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라. 의사, 한의사 등 전문가 및 그 밖의 자에 의한 추천·보증·수상·선정 등의 표현은 사실이 아니거나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는 경우 표현할 수 없다.

다만, 해당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의사, 한의사 등 전문가를 광고에 인용 할 경우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자 및 성분배합자 (이하 “개발자” 라 함) 여부를 증빙자료를 통해 엄격하게 심의하며 개발자로 인정받은 전문가에 한하여 제품정보 및 건강정보를 표현 할 수 있다.

- 의사, 한의사 등 전문가가 제품정보에서는 제품을 개발 또는 성분 배합하였다는 단순 사실만 광고표현토록 한다.

- ‘모델, 쇼호스트 등 전문가가 아닌 제3자가 전문가를 인용하여 제품개발과정 및 성분배합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있으며 개발자의 사진 또는 이미지는 허용한다.

- 제품정보가 아닌 건강정보의 경우 개발자로 인정받은 전문가가 심의 받은 건강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 전문가는 별도 구획된 “건강정보석”에서만 “건강정보” 를 설명할 수 있다.

- “건강정보” 의 문구와 “전문가의 신분” 이 “건강정보석” 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 “건강정보석” 에는 관련제품의 진열·보관 되어서는 아니 된다.

- “건강정보” 에 대한 설명 중 관련제품의 방영을 제한토록 한다.

- “건강정보” 에 심의받은 전문가의 인터뷰 녹화 방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 전문가의 프로필 및 소개내용은 증빙된 사실에 한해 현재 경력 중 한 가지만 표현할 수 있다.

(2) 연예인, 일반 소비자등의 추천·보증 등은 해당제품을 실제 사용해 본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 또는 일반적인 건강관련 표현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의약품이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면 표현 할 수 없다.

예1) ○○홍삼제품을 먹었더니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2) 체지방이 걱정되어서 ○○제품을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조절하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제품도 먹으니 좋은 것 같아요(○)

예3) 체지방이 걱정되어서 ○○제품을 먹었더니 ○○kg 감량이 되었습니다.(×)

(3) 특정부분에 한정되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인증·선정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

정받아 수상 · 인증 · 선정 등을 받은 것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예1) 회사나 제품의 일부 기술 등에 대해서 받은 수상 또는 인증을 제품 자체가 받은 것처럼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예2) 특정단체나 기관 등에서 경영, 재무 등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을 제품이 우수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처럼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수상 · 인증 · 선정 등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증된 것보다 높은 가치로 또는 격을 높여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예1) 민간단체의 인증사실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것처럼 표현(×)

예2) 외국신문의 국가별 히트상품 소개에 자사상품이 포함된 사실을 세계의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것처럼 표현(×)

(5)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동 상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섭취사실을 게재하여 광고하였으나, 소비자가 실존 인물이 아닌 경우는 광고에 표현할 수 없다.

(6) 해당제품의 연구 · 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여부의 심의는 증빙자료를 통해 논의토록 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 연구개발자 : 연구개발과 관련한 계약서, 회의록, 논문 각 1부
- 국내 제품 성분배합개발자 : 성분배합개발과 관련한 계약서, 회의록, 연구보고서 각 1부
- 수입 제품 성분배합개발자 : 외국 업체(제조, 수입, 판매)와 국내 판매업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성분배합에 관여한 공문, 회의록, 연구보고서 각 1부
- 회사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 1부
- 회사 내 임직원 : 6개월 이상 경력의 실제 고용된 임직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4대 보험 증명서

마. 공공기관(정부단체, 학교, 국제기구 등)의 명칭을 표현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 또는 조직의 부속기관장이 해당 제품의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공문을 제출하여 표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제품품질검사를 받은 것이 마치 그 제품의 기능성에 대해 품질을 인정받은 것으로 오인 될 수 있는 내용은 광고에 표현할 수 없다.

예) ○○제품은 원자력의학원 면역학연구실에서 기능성 및 안전성 검사를 필한 제품(×)

(2) 외국에서 인정, 등록된 FDA, GMP, JHFA, HACCP 등의 표현으로 해당제품이 우수하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표현은 할 수 없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여 FDA, EFSA 및 그에 준하는 인정, 등록의 경우 기능성이 아닌 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것임을 명시할 경우 표현할 수 있다.

예1) 미국 FDA 중금속 잔류 안전성 테스트 통과 제품(×)

예2) FDA 등재 - 원료의 안전성 확인(○)

- (3) 회사명, 상표명, 연구기관 등의 명칭은 의료법상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명칭을 강조하여 표현할 수 없다.

예) 암치료 연구소, 심장질환 연구센터(×)

바. 비교 표시 · 광고는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정당한 표시 · 광고

- (1) 비교 표시 · 광고는 소비자에게 사업자나 제품에 관한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예) ○○제품은 타 제품에 비해 당성분이 적어 당뇨병 환자가 섭취하기에 좋습니다. (×)

- (2) 비교 표시 · 광고는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 비교 표시 · 광고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특성을 비교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주관적 판단, 경험, 체험, 평가 등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제품과 비교하는 표시 · 광고 범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 ○○ 제품은 홍삼농축액 100% 제품입니다. 타 유명 ○○브랜드의 제품에 비해 기능성분인 사포닌이 ○○배 함유되어 있어 그 기능이 차별화됩니다.(×)

- (3) 비교 표시 · 광고는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 · 조사기관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시험 · 조사 결과에 의하여 실증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 (4) 비교 표시 ·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또는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표시 · 광고에 나타난 구체적인 비교대상, 비교기준,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에 따라 판단되는데 아래의 비교 표시 · 광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 비교대상과 관련하여 동일 시장에서 주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제품으로서 자기의 제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제품을 자기의 제품과 비교하는 경우
- 비교기준과 관련하여 가격, 기능성, 품질, 판매량 등의 비교기준이 자기의 제품과 다른 사업자의 제품 간에 동일하며,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경우
- 비교내용과 관련하여 비교내용이 진실되고 소비자의 제품선택을 위하여 유용한 경우
- 비교방법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가 이루어지고, 시험 · 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경우

- (5) 동 비교표시 · 광고의 설정기준은 「표시 ·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비교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준용한 것으로 세부기준은 동 심사지침을 따라야 한다.

- (6) 타사제품 또는 타기능성원료의 비교광고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비교된 내용이여야 하며, 타사제품을 비하 또는 비방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표성분(기능성분)의 함량이 많다고 하여 타사제품(또는 기능성원료)보다 자사제품의 기능이 우월하다고 직접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현은 할 수 없다.

사. 건강기능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함께 동일 광고면에 광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동시에 광고할 경우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게재하여야 한다.

예1) 건강기능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명확히 구분하는 선을 표시하거나 또는 명확히 (상, 하 등으로) 구획하여 설명(○)

예2) 일반식품과 동시 광고 시 일반식품 주위에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입니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예3)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성 표현이 양제품에 애매모호하게 겹쳐서 광고하는 경우(×)

예4)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 기능에 대한 설명이 과도한 경우(×)

예5)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과 함께 광고되어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 등으로 오인되는 경우(×)

예6) 함께 구성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으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이 오인되는 경우(×)

아. 특정제품의 과다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표현

(1) 해당제품의 섭취가 영양소기준치 초과, 과일야채 등의 대체식품 등 특정식품의 과다한 소비를 조장하거나 균형잡힌 일상식사 등 좋은 식습관을 비난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할 수 없다.

(2) 영양소기준치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량을 먹어도 좋다는 내용은 표현할 수 없다.

예) 비타민의 1일영양권장량은 70mg임에도 불구하고 500mg을 섭취하는 방법 ‘ 등을 제시

(3) 좋은 음식을 한 가지 영양소와 비교하기 위해 영양적 가치가 나쁘다고 인식시킬 수 있는 내용은 표현할 수 없다.

예) 클로렐라에 함유된 비타민과 쇠고기에 함유된 비타민의 함량비교

(4)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을 과일, 야채 등에 함유된 영양소의 양과 비교할 경우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각종 영양소를 함유한 과일, 야채 등을 섭취하는 것과 동일하다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현은 할 수 없다. 단, 일반식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하게 과일, 야채 등에 함유된 영양소 정보를 표현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출처 자료를 인용하여 건강정보로 표현할 수 있다.

(5) 잘못된 식습관을 대체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를 권장하는 경우 잘못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현할 수 없다.

- (6) 건강한 식생활을 방해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고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능성 원료의 함량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은 표현 할 수 있다.

예) 제품 1캡슐에 18개의 토마토에 해당하는 라이코펜 양 함유(○)

자. 제약회사 개발제품, 병원·약국판매 제품 등을 강조하는 표현

- (1) 제약회사 개발제품, 병원약국판매 제품임을 표현하는 경우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단한 표현만을 할 수 있다.

예1) 제약회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한 경우, 제약회사의 의약품 개발현황, 제약회사 제품임을 계속 반복, 강조하는 표현, 제약회사에서 제조 등으로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현할 수 없다.

예2) 병원(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병원용, 약국용, 병원(약국)에서만 판매합니다.” 등으로 표현할 경우 의약품이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현할 수 없다. 단, [병원(약국)의 건강기능식품코너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은 표현가능하다.

차. 흡수율 및 생체이용률에 대한 표현

과학적 근거 없이 흡수율 또는 생체이용률이 높은 제품으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 기능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인 경우에 표현할 수 있다.

-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록된 학술지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인체시험 자료여야 하며, 제품에 함유된 원료와 동일한 원료일 때 표현 가능하나, 특허자료로는 표현할 수 없다.

카. 유일, 최상급 표현 및 광고문구 용어 표현

- (1) 유일 :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에 해당되므로 ‘최초’로 수정하거나 해당 시점을 명시하여 적절할 경우 표현할 수 있다.

(2) 최초 :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므로 표현할 수 있다.

(3) 최고, 최상, 최적에 대한 표현 :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표현할 수 없다.

(4) 최대 : 기능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표현할 수 있다.

(5) 고단위, 고순도, 고농도 등의 표현 : 건강기능식품공전 기준 및 규격에 해당되는 함량 표기를 준용하여 광고하여야 하며 고단위, 고순도, 고농도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표현할 수 없다.

(6) 최대함량 : 비교기준이 명확한 경우 허용할 수 있다

예) ‘식약처 일일섭취량대비 최대함량’

(7) 새로운 패러다임, 신개념 :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 혼동 될 수 있는 광

고표현은 삭제토록 함. 다만, 기능성과 관련 없는 제품의 제형, 맛 등에 대한 광고표현은 허용할 수 있다.

- (8) 청정지역 : 소비자가 본 제품이 타제품에 비해 우수하다고 오인, 혼동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표현 할 수 있다.
- (9) 단계에 대한 표현 : 단계에 따라 기능이 강화되는 것으로 오인·혼동될 수 있어 표현할 수 없다.

예) ‘1단계, 2단계, 3단계’, ‘STEP 1, STEP2, STEP3’

타. 체지방감소 관련 기능성원료의 인체적용시험결과에 대한 특정수치 표현

- (1) 인체적용시험의 특정수치를 광고하는 경우 시험조건(국적, 성별, 대상자수, 시험기간, 섭취방법, 수행기관 등) 및 특정수치는 동일한 활자 크기, 서체 및 색채로 광고하여야 한다.
- (2) 시험대상자의 국적 및 인종, 성별, 평균 연령, 평균체중을 명확히 밝히도록 한다.
- (3) 섭취군의 기존 체중(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 대비 감소비율(%)와 플라시보(대조군)의 변화량을 함께 광고하여야 한다.

예) 체중 7kg 감소 ⇒ 섭취군 7kg 감소(기존 체중대비 7%감소)
 대조군 3kg 감소(기존 체중대비 5%감소)

- (4) 시험조건인 BMI는 평균적인 남녀의 kg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 예) BMI 30이상 성인남녀 ⇒ 평균 남자 00kg, 평균 여자 00kg

파. 홈페이지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홈페이지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로 보기 어려운 회사소개, 연혁 등이 망라되어 있어 심의대상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제품정보로 구획된 부분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해당 부분만 심의신청 할 경우 심의할 수 있다.

하. 혈중 중성지질·콜레스테롤·혈당·혈압·혈행에 관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에서 ‘혈관, 관리, 조절’에 대한 표현

- (1) 혈중 중성지질·콜레스테롤·혈당·혈압·혈행에 관한 기능성을 가진 제품에서 ‘혈관’ 관련 내용은 기능성을 벗어난 광고문구로 표현할 수 없다.
- (2) 수치와 관련 있는 기능성 원료(혈중 중성지질·콜레스테롤·혈당·혈압 등)는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어 ‘관리, 조절’ 등의 문구는 표현할 수 없다.

거. 건조효모를 원재료로 한 비타민, 무기질 관련 표현

- (1) 효모를 배양하면서 비타민, 무기질이 생합성 된 것을 증빙자료(공정도 및 검사 성적서)로 제출할 경우 ‘건조효모 유래’ 관련 표현을 할 수 있다.

- (2) 인위적으로 비타민, 무기질을 첨가한 제조공정을 거친 경우 ‘건조효모’ 관련 표현은 할 수 없다. 다만, 건조효모에 첨가한 비타민, 무기질임이 품목제조신고증에서 원료명으로 확인 될 경우, 품목제조신고증(제품설명서)에 기재된 원료명 ‘건조효모(비타민, 무기질)’ 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너. 유산균 배양, 추출 영양소 관련 표현

기능성 원료인 ‘프로바이오틱스’ 가 함유된 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관련 표현을 할 수 없다.

더. 부원료로 함유된 커피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현

기능성원료가 아닌 부원료인 커피를 중점적으로 강조하여 커피처럼 섭취하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인하여 특정 기능성분을 과다 섭취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할 수 없다.

- 예) 2가지 커피의 황금비율 / 커피분말 그대로의 깊고 풍부한 맛/식사 후 한잔의 여유 테이크아웃 커피 / 원두의 깊은 맛을 그대로 느끼고 싶을 때 / 일반인스턴트커피는 이제 no 아무도 모르게 비밀 다이어트 하세요 / 유독 달달한 커피가 먹고 싶은 날에는? / 여유로운 커피타임 등(×)

러. 부원료로 함유된 포스트바이오틱스 관련 표현

품목제조신고증(제품설명서)에서 유산균대사산물의 함유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원료(‘OO발효액’, ‘OO건조물’) 또는 제조방법에서 대사산물 발생이 확인 된다면 단순히 부원료로 함유된 사실 표현은 할 수 있다. 다만, ‘유산균대사산물(포스트바이오틱스, 부원료)’ 로 표현 가능하되 포스트바이오틱스만을 강조할 수 없다.

머. 프리바이오틱스 관련 표현

올리고당류인 라피노즈, 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이눌린, 갈락토올리고당은 프리바이오틱스라 표현할 수 있다.

버. 주원료의 추출, 배양 원료 관련 표현

주원료의 추출, 배양 원료를 강조할 경우 추출, 배양원료의 기능성까지 있는 제품으로 오인 및 추출, 배양원료가 주원료인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강조할 수 없다.

- 예1) 홍삼 배양 프로바이오틱스, 치커리 식이섬유/이눌린 배양 유산균
 예2) 유산균 주입 홍삼
 예3) 새싹보리 추출 엽록소 함유 식물

서. 성적서 결과 관련 표현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업종별, 분야별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시험기관 또는 그 밖에 업종별, 분야별로 전문적인 시험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시험연구기관 검사 결과에 한해서만 표현 할 수 있다. 다만, ‘수입식품 등 검사결과’는 건강기능식품 수입 시 의무적인 절차임에도 성적서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은 본 제품만 안전성 판정에서 적합한 제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인용할 수 없다.

어. 영아, 신생아 관련 표현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우려되며, 안전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영아(신생아)에게 섭취를 권장하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표현할 수 없다.

저.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광고 내 건강상담사 관련 내용

전문가의 추천, 보증에 해당하는 광고내용이 아닌,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 판매’ 서비스 설명란에서 건강상담사(약사, 영양사, 의사 등)의 상담 및 제품 추천에 대한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상담 관련 표현은 할 수 있다.

V

영양소 및 기능성 원료 목록

1 영양소

기능성 원료	기능성 내용	섭취 시 주의사항
1) 비타민A	(가)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나)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다)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2) 베타카로틴	(가)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나)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다)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비타민D	(가)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나)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다)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	
5) 비타민K	(가)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나) 뼈의 구성에 필요	○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6) 비타민B ₁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7) 비타민B ₂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8)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9)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0) 비타민B ₆	(가)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나)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11) 엽산	(가)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나)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다)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기능성 원료	기능성 내용	섭취 시 주의사항
12) 비타민B ₁₂	○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3) 비오틴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4) 비타민C	(가)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나) 철의 흡수에 필요 (다)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5) 칼슘	(가)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나)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다)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라)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16) 마그네슘	(가) 에너지 이용에 필요 (나)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17) 철	(가) 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 (나) 에너지 생성에 필요	○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18) 아연	(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19) 구리	(가) 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 (나)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20) 셀레늄 (또는 셀렌)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21) 요오드	(가)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 (나) 에너지 생성에 필요 (다) 신경발달에 필요	
22) 망간	(가) 뼈 형성에 필요 (나) 에너지 이용에 필요 (다)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23) 몰리브덴	○ 산화·환원 효소의 활성화에 필요	
24) 칼륨	○ 체내 물과 전해질 균형에 필요	○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기능성 원료	기능성 내용	섭취 시 주의사항
25) 크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26) 식이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이섬유 보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27) 단백질	<p>(가) 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p> <p>(나) 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p> <p>(다) 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p> <p>(라) 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p> <p>(마) 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28) 필수지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지방산 보충 	

2 기능성 원료

기능성 원료	기능성 내용	섭취 시 주의사항
1) 인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홍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엽록소 함유 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클로렐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5) 스피루리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6) 녹차추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 식사 후 섭취할 것 ○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7) 알로에진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위·신장·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기능성 원료	기능성 내용	섭취 시 주의사항
8) 프로폴리스추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은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스프레이 또는 텀크제, 씹어먹는 연질캡슐)에 한하며, 섭취량을 적용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폴리스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9) 코엔자임Q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0) 대두이소플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 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11) 구아바잎추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2) 바나바잎추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3) 은행잎추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14)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추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5) 달맞이꽃종자추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6) EPA 및 DHA 함유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중 중성지방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7)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월경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어린이는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할 것(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표시·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18) 레시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두나 난황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기능성 원료	기능성 내용	섭취 시 주의사항
19) 스쿠알렌	○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0) 식물스테롤/식물스테롤에스테르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베타-카로틴(β -carotene)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음
21) 알록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2)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3) 매실추출물	○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4) 공액리놀레산	○ 과체중인 성인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영·유아, 임산부는 섭취를 삼가야 함 ○ 식사조절,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임
25)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추출물	○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26) 마리골드꽃 추출물	○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27)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 β -카로틴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음
28)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 전립선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성인남성만 섭취할 것 ○ 수술 전후,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 후 섭취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기능성 원료	기능성 내용	섭취 시 주의사항
29) 포스파티딜세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30) 글루코사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간·심장질환, 수술 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31)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32) 류코다당 · 단백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3) 구아검 / 구아검 가수분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34) 글루코만난 (곤약, 곤약만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35) 귀리식이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36)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혈중 중성지방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37) 대두식이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 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38) 목이버섯 식이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39) 밀식이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기능성 원료	기능성 내용	섭취 시 주의사항
40) 보리식이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41) 아라비아검 (아카시아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42) 옥수수겨 식이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43) 이눌린/치커리 추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44) 차전자피 식이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45) 폴리덱스트로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46) 호로파종자 식이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47) 알로에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48)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49) 키토산 / 키토 올리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50) 프락토올리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섭취 시 가스참, 트림, 복통, 복부팽만감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51) 프로바이오틱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52) 홍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 원료	기능성 내용	섭취 시 주의사항
53) 대두단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두단백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54) 테아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55) 엠에스엠 (MSM 디메틸설피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56) 폴리감마 글루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내 칼슘흡수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57) 히알루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58) 홍경천 추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59) 빌베리 추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의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60) 마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61) 라피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내 유익균의 증식과 유해균의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배변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섭취량 이상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음
62) 분말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나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주의해야 함 ○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해야 함 ○ 과다 섭취 시 미약한 설사, 구토, 배변량 증가, 배변빈도 증가, 복부 팽만, 두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63) 크레아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력 운동 시에 운동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신장 이상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여야 함 ○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삼가 ○ 카페인과 크레아틴의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음 ○ 크레아틴의 섭취는 탈수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여야 함 ○ 과다 섭취하지 말 것

기능성 원료	기능성 내용	섭취 시 주의사항
64) 유단백 가수분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부, 수유여성 및 어린이는 섭취에 주의 ○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하여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65) 상황버섯추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66) 토마토추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과량 섭취 시 피부색이 오렌지색으로 변할 수 있음 ○ 임산부, 수유 여성 및 어린이는 섭취에 주의
67) 곤약감자추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를 피할 것
68) 회화나무열매 추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VI 기능성 내용별 삭제 사례

혈중 중성지방 · 혈행 개선

[제품과 무관한 건강정보]

겨울철 급증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이 핵심

[출처 : <https://www.hidoc.co.kr/healthstory/news/C0000487431> 하이닥

큰 일교차에 혈관도 놀란다.'뇌졸중' 주의보

출처 :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50700> 헬스경향

겨울철 고령자 심·뇌혈관 질환 증가... 추운 날씨 장시간 대기도 영향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4_0001209341&clD=10201&pID=10200 뉴시스

심뇌혈관질환, 미리 챙겨야 돌연사 막는다

출처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1907220134>, 쿠키뉴스

초미세먼지 전국적 '나쁨', 심뇌혈관질환자 건강 관리 '빨간불'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1/2019121101118.html 헬스조선

겨울철 심뇌혈관질환 주의...'갑작스런 가슴통증'이 의심증상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6054200017?input=1195m> 헬스조선

겨울철 심근경색·뇌졸중 사망자 1만명..."골든타임 2~3시간"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181226_0000513057&clD=10899&pID=10800 뉴시스

- 구 분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내 용 : 공신력 있는 기관 출처가 아니며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건강정보
- 삭제사항 : 겨울철 급증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이 핵심, 큰 일교차에 혈관도 놀란다. '뇌졸중' 주의보, 겨울철 고령자 심·뇌혈관 질환 증가... 추운 날씨 장시간 대기도 영향, 심뇌혈관질환, 미리 챙겨야 돌연사 막는다, 초미세먼지 전국적 '나쁨', 심뇌혈관질환자 건강관리 '빨간불', 겨울철 심뇌혈관질환 주의... '갑작스런 가슴통증' 이 의심증상, 겨울철 심근경색, 뇌졸중 사망자 1만명... "골든타임 2~3시간"

제품과 관련없는 일반 건강정보입니다[건강정보]

혈압상승의 원인?

한국인들의 음식문화 나트륨 과다 섭취

(적정 나트륨 섭취량 5g 대비 가량의 나트륨 섭취량), 기름진음식 선호)



출처 : 나태의료재단 (하이디)

제품과 관련없는 일반 건강정보입니다[건강정보]



나트륨 과다 섭취

↓

혈액 내 나트륨 증가

↓

혈액의 부피 상승

↓

혈관 압력 상승



출처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홍수교수(조선 pub 기사)

- **구 분**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범위를 벗어나 질병과 관련한 표현
- **삭제사항** : 혈압 상승의 원인, 나트륨 과다 섭취, 혈액 내 나트륨 증가, 혈액의 부피 상승, 혈관 압력 상승

Table 4.4. Population goals from recent international expert analyses and levels of evidence

Component*	Population goals	Levels of evidence [†]
Physical activity level	> 1.75 [‡]	A
Adult body weight	BMI of 21–22	A
Proportion of total energy intake from:		
• total fatty acids	< 30%	A
• saturated fatty acids	< 10%	C
• trans-fatty acids	< 2%	A
• polyunsaturated fatty acids:		
– omega-6	< 7–8%	A
– omega-3	2 g/day of linolenic + 200 mg/day of very-long-chain	A
• carbohydrates	> 55%	B
Sugary foods	4 occasions/day [§]	A
Fruits and vegetables	> 400 g/day	A
Folate from food	> 400 µg/day	A
Dietary fibre	> 25 g/day (or 3 g/MJ of energy intake)	B
Sodium as NaCl	< 6 g/day	B
Iodine	150 µg/day (Infants: 50 µg/day; pregnant women: 200 µg/day)	B
Exclusive breastfeeding	About 6 months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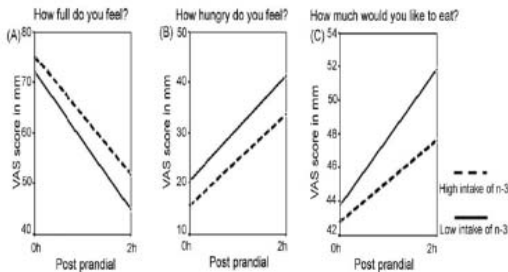
* The source report includes goals for other important nutrients, such as iron, calcium, alcohol, water and vitamin D.

[†] Levels of evidence are based on those used in several guideline systems, such as the Cochrane system, the 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scheme and the systems used in assessing diet: In relation to cancer by the World Cancer Research Fund and American Institute for Cancer Research (27) and expert bodies in Member States. These other systems

유럽 국제기준

오메가3
살면서 섭취해야할 국제
인류 필수 영양소 기준
포함

- 구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용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표현
- 삭제사항 : 유럽국제기준 오메가3 살면서 섭취해야할 국제 인류 필수 영양소 기준 포함



체중감량 기간
같은식사를 하여도
오메가3를 섭취한 사람이
포만감을 더 느낀다.

출처: A diet rich in long chain omega-3 fatty acids modulates satiety in overweight and obese volunteers during weight loss *Appetite* 51 (2008) 676–680

- 구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용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표현
- 삭제사항 : 체중감량 기간 같은 식사를 하여도 오메가3를 섭취한 사람이 포만감을 더 느낀다.

**저순도(low purity) 오메가3의
개선효과 연구결과 73%(98건 중 72건)**

**고순도(high purity) 오메가3의
개선효과 연구결과 85.7%(14건 중 12건)**

출처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J Nutr Health) 2013; 46(3): 226-238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순도가 높을수록 기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되는 내용
- **삭제사항** : 저순도 오메가3 개선효과 연구결과 73%, 고순도 오메가3의 개선효과 연구결과 85.7%

오메가3를 단기 섭취했을 때보다 6개월 장기 섭취했을 때
눈의 건조한 정도가 더 개선됨

Table 3. Mean test values in O3FA group on repeated-measures ANOVA.

Parameter	Baseline	1 month	3 months	6 months	p-value
건조한 정도	9.1 ± 2.4	8.5 ± 1.8	5.8 ± 1.6	3.8 ± 2.4	<0.001

<오메가3를 섭취한 그룹>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기능성을 과장한 내용
- **삭제사항** : 오메가3를 단기 섭취했을 때보다 6개월 장기 섭취했을 때 눈의 건조한 정도가 더 개선됨

긴 치마를 입고 다니는 이유? 하지 정맥.
오메가를 먹고 짧은 치마 입고.

[건강기능식품 광고]

짧은 옷에 무릎 뒤 하지 정맥이 자주 신경 쓰인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지금 오메가 3

[건강기능식품 광고]

매일 기름진 음식,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면?

[건강기능식품 광고]

내 혈관, 청소 한번 한 적이 있나?
깨끗한 혈관을 위해 오메가 3

[건강기능식품 광고]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내 몸 혈류 흐르게 흐르게

[건강기능식품 광고]

잘 흐르는 혈류, 잘 풀리는 오늘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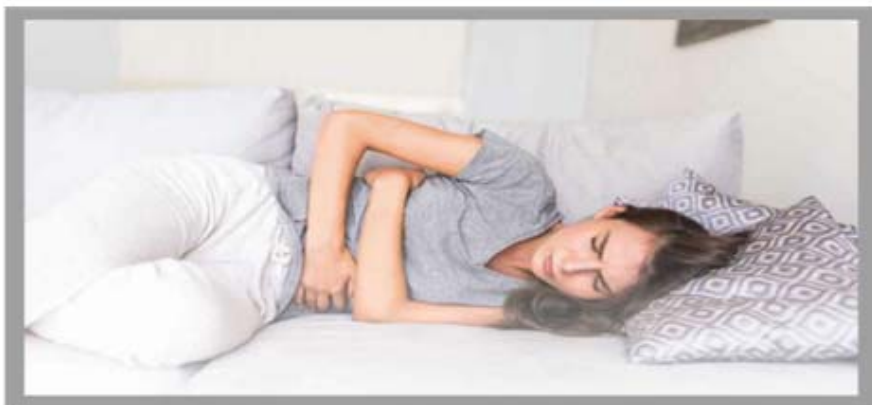
[건강기능식품 광고]

여보세요? 어 나야, 근데 내 전화기 어딴지?
기억력 개선엔 오메가

[건강기능식품 광고]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표현
- 삭제사항 : 긴 치마를 입고 다니는 이유? 하지정맥. 오메가를 먹고 짧은 치마 입고, 짧은 옷에 무릎 뒤 하지 정맥이 자주 신경 쓰인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지금 오메가3, 매일 기름진 음식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면?, 내 혈관 청소 한번 한 적이 있나?

월경 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개선



한달에 한번씩

경험하게 되는 대자연이 주는 고통,
우리 여성들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의 변화를
월경전 증후군이라 말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피로, 불면증, 현기증, 과민성 기분변화, 분노 등

수십가지에 문제점을 겪는데요,
이럴때마다 스스로도 너무 힘들고 가족과 주변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것에 문제점을 느껴서
20년간 건강식품을 개발한 경력을 바탕으로
월경전 증후군에 효과가 있는 제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사랑이 가족사랑으로 이어지는 즐거운 변화가
시작되길 희망합니다!

그동안, 배가 너무 아파 도저히 참을수 없는 고통에
먹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건강하게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건 어떨까요?
한달 중에 두려운 일주일이 아닌, 편안한 일주일을 만드는
건강한 습관을 위해서, 우리 몸에 선물해 주세요

- 구 분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표현
- 삭제사항 : 피로, 불면증, 현기증, 과민성 기분변화, 분노 등 월경전 증후군에 효과가 있는 제품을 기획, 그동안 배가 너무 아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의약품을 먹지는 않으신가요?

혈당 건강



혈당이 높을때, 건강한 발 관리 법

[건강장표]

발 관리하는 방법 속지
굳은살에 주의
피부 각질화에 주의

(출처 : 대한정형외과학회)



혈당이 높을때, 건강한 눈 관리 법

[건강장표]

정기적인 눈 검사
자외선 차단
실내 온도와 습도 적절히 유지

(출처 : 보건복지부)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표현
- 삭제사항 : 혈당이 높을 때 건강한 발 관리 법, 발 관리하는 방법 속지 굳은살에 주의, 피부 각질화에 주의, 혈당이 높을 때 건강한 눈 관리 법, 정기적인 눈 검사, 자외선 차단, 실내 온도와 습도 적절히 유지

혈당관리 필요하신분

- ▶ 탄수화물을 사랑하는 한국인
- ▶ 화장실을 자주 간다
- ▶ 활동량, 운동량이 적으신분
- ▶ 갈증이 난다
- ▶ 과식, 지방, 단음식, 탄산음료
- ▶ 배고픔을 느낀다
- ▶ 좋아하는 분
- ▶ 체중변화가 생긴다
- ▶ 밥을 빨리 드시는 분
- ▶ 활력이 떨어진다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내용
- 삭제사항 : 혈당 관리 필요하신분, 화장실을 자주 간다, 갈증이 난다, 배고픔을 느낀다, 체중 변화가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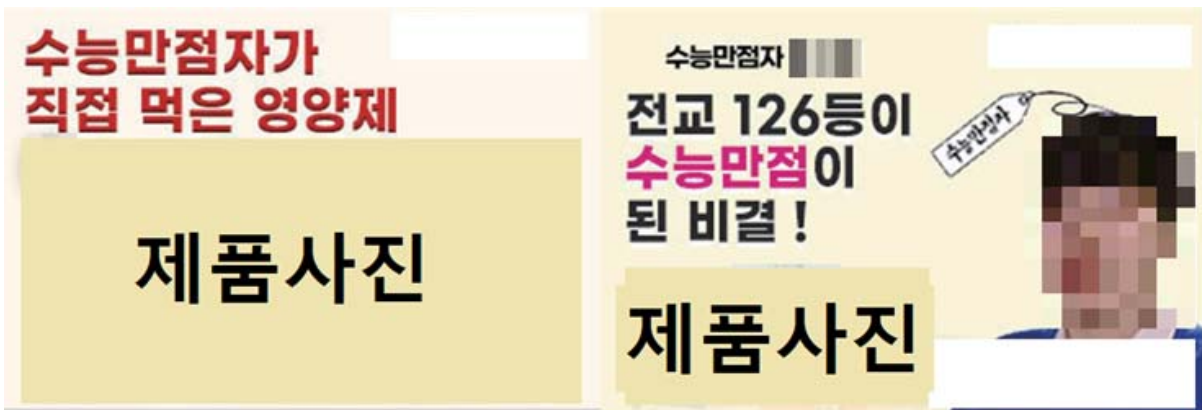


- 구 분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내 용 :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도안
- 삭제사항 : 혈당 측정기 도안

기억력 · 인지력 개선



- 구 분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건강정보
- 삭제사항 : 폐경 이후 건망증 심각/건망증 심하면 치매가능성/치매 환자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학습 능력 향상에 기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는 내용
- 삭제사항 : 수능만점자가 직접 먹은 영양제/수능만점자/전교 126등이 수능만점이 된 비결

눈 건강

제품과 무관한 건강정보

환절기에 유독 뻑뻑해지는 눈, 방치하지 마세요!
(스피릿, 2019.10.10)

눈 뻑뻑한 안구건조증 피하려면?... 실내 환경 '이렇게'
(헬스조선 뉴스, 2017.0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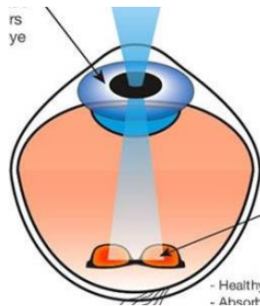
봄별 강한 자외선에 '눈' 위험...
(한국경제, 2019.04.12)

미세먼지·스마트폰에 괴로운 눈, 식물 영양소로 관리하세요
(중앙일보, 2019.03.08)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건강정보
- 삭제사항 : 환절기에 유독 뻑뻑해지는 / 눈 뻑뻑한 안구건조증 / 봄별 강한 자외선에 '눈' 위험... / 미세먼지·스마트폰에 괴로운 눈, 식물 영양소로 관리하세요

[제품과 무관한 건강정보]

루테인지아잔틴 = 눈 속의 선글라스



루테인, 지아잔틴과 같은 카르테노이드는 황반에 많이 분포하여 항산화작용을 하고 자외선과 BLUE LIGHT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 논문 - Lutein and Zeaxanthin Supplementation Reduces Photooxidative Damage and Modulates the Expression of Inflammation-Related Genes in Retinal Pigment Epithelial Cells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건강정보 내용
- 삭제사항 : 눈 속의 선글라스 / 루테인, 지아잔틴과 같은 카르테노이드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자외선과 BLUE LIGHT를 차단해주는 역할

체지방 감소



안바꾸는 식습관 대신에
식사전후 한포로 가뿐히
다이어트하는건강기능식품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식이조절 없이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내용
- 삭제사항 : 안 바꾸는 식습관 대신에

비디오	자막	오디오
	<p>판넬</p>	<p>#인사 요새 거울보는 횡수가 줄어드신 분들, 나는 다 빼냈는데 유지가 필요하신 분들, 마트에서 기저귀 사고 오면서 배만지며 걱정하시는 언니들 뱃살이 잘 찌고, 잘 빠지지 않는 이유! 내 뱃속 무겁게 자리잡고 있는 내장지방 때문이라는 것 아셨나요? 무거운 뱃살로부터 내몸이 가벼워 지는 이유 과 함께합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나가지도 못하고 집콕하며 야식즐기고 있는 요즘!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관리하여 늘어나는 뱃살 막아봅시다 #브랜드 소개</p> <p>혈관신생억제를 통하여 복부 중 빨리 커지는 뱃속 나쁜 내장지 방을 감소시킬수 있는 것을 확! 생하였습니다. *혈관신생: 내장지방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생겨난 것</p>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내용
- 삭제사항 : 뱃살이 잘 찌고, 잘 빠지지 않는 이유! 내 뱃속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내장지방
때문이라는 것 아셨나요? 혈관신생억제를 통하여 복부 중 빨리 커지는 뱃속
나쁜 내장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

“체지방 증가, 장 속 유해균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장에는 약 100조 이상의 균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사람의 소화관에 서식하는 균



사람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익균



장내 유독물질을 생성하며
건강에 해를 끼치는 유해균



장 환경에 따라 유익한 또는
유해한 작용을 하는 중간균

장 내 미생물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유해균을 감소시킴으로써
유익균이 우세한 장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만인 사람의 장 내 미생물에는
날씬한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해균이 많고 유익균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인정된 두 기능성(체지방, 장 건강)의 시너지를 나타내는 내용
- 삭제사항 : 체지방 증가, 장 속 유해균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의 장 내 미생물에는 날씬한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해균이 많고 유익균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뱃살 쪽쪽 빠지는 경험이 필요한 분



식약처 인정 원료 가 궁금하다면 클릭!

 다이어트' (Lose visceral fat with diet). A small white box is at the top right of the illustration area."/>

“오랫만에 본 친구가 못알아 봤어”

뱃살 쪽쪽-빠지는 방법

내장지방 잡는 다이어트

식약처 인증 완료!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전후 비교 도안 및 특정부위(뱃살) 감소에 기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
- 삭제사항 : 뱃살 쪽쪽 빠지는 경험이 필요한 분, 뱃살 쪽쪽 빠지는 방법, 내장지방 잡는 다이어트

전립선 건강



강한남자로 거듭날 수 있게!

배경음악 - 가사 없음

나레이션 - 강한남자로 거듭날 수 있게
(자막 내용 그대로)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성기능 향상을 암시하는 내용
- 삭제사항 : 강한 남자로 거듭날 수 있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남성호르몬!
남성 활력저하 + 남성 갱년기로 이어질 수 있다?!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남성 갱년기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
- 삭제사항 : 남성 활력저하, 남성 갱년기, 남성 호르몬

단단해지고 싶은 남성이라면
당당해지고 싶은 남성이라면

남자라면 전립선/ 관리가 필요합니다

- 구 분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 내 용 : 성기능 향상을 암시하는 내용
- 삭제사항 : 단단해지고 싶은 남성이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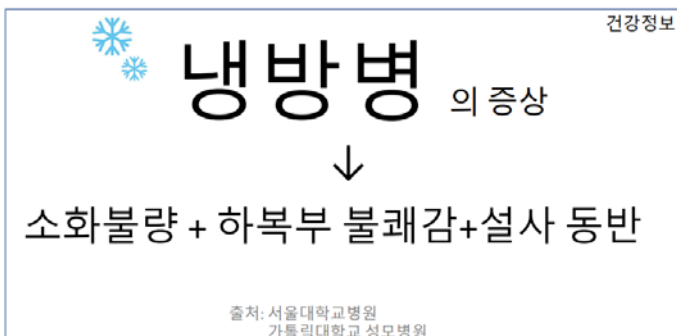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성기능 향상을 암시하는 내용
- 삭제사항 : 형 애가 다섯이야



로르산 성분이 요도 관련 증상과 전립선염 완화에 도움이 됨.
 또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테스토스테론은 50대가 되면 현저히 떨어지는데 부족할 경우 골다공증에 노출되기 쉬움.

- 구 분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내 용 : 요도 관련 증상과 전립선염 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오인
- 삭제사항 : 로르산 성분이 요도 관련 증상과 전립선염 완화에 도움이 됨,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등

위 건강



- 구 분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과 관련 없는 건강정보
- 삭제사항 : 냉방병의 증상 > 소화불량+하복부불쾌감+설사동반



모델) 고추에, 고추장을 찍어 먹는



모델) 놀라운 한국인의 위에 딱!

자막) 한국인의 위 건강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식습관 개선 없이 위 건강 문제를 개선해 주는 것으로 오인되는 내용
- 삭제사항 : 고추에, 고추장을 찍어 먹는 놀라운 한국인의 위에 딱

작약의 속명인 패오니아(Paeonia)

그리스 신화의
의사 패온(paeon)이
작약의 뿌리로
여러 신들을 치료해주었다 하여
그의 이름에서 유래

- 구 분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내 용 : 제품의 기능성과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 관련 표현
- 삭제사항 : 그리스 신화의 의사 패온이 작약의 뿌리로 여러 신들을 치료해주었다 하여 그의 이름에서 유래

지구력 증진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내용
- 삭제사항 : 몸에 많이 저장되어 있을수록 운동수행능력이 좋아지는 성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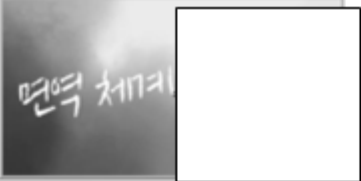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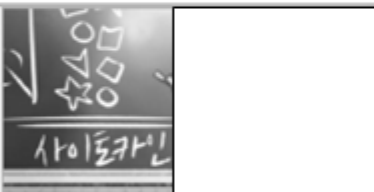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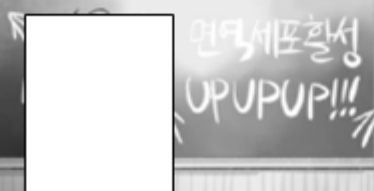
남자의 건강관리는 20대 부터.

시간이 지나도 하루종일 에너지가 넘치고
자신감이 지속되길 바라는 나는,

IAM 강한남자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기능성을 과장한 내용
- 삭제사항 : 시간이 지나도 하루종일 에너지가 넘치고 자신감이 지속되길 바라는 나는, 강한남자

면역력 증진

#2		면역 체계	안녕! 여러분 혹시, 우리 몸의 면역 매커니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모르신다면, 지금부터 집중!
#3		NK Cell	혹시 NK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면역의 최전방 스나이퍼라고 불리는 이 세포는 유해물질을 직접 파괴하는 '킬러 세포'라고도 불려요.
#4			이 세포가 활성화 될수록 우리 몸을 유해 물질로부터 더 잘 지킬 수 있겠죠?
#5		사이토카인	사이토카인은 유해세포를 감지하고, 항체를 생성해 공격을 명령해요. 면역 체계의 중심에서 24시간 지휘, 감독 역할을 해내고 있어요.
#6			면역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뭐다? 사이토카인! 밑줄 집! 별표!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땡땡!)
#7		면역세포 활성화	이렇게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 기본 생체 방어 능력이 어떻게 된다? UP! UP!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인체시험으로 확인된 지표를 기능성처럼 광고한 내용
- 삭제사항 : 혹시 NK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면역의 최전방 스나이퍼라고 불리는 이 세포는 유해물질을 직접 파괴하는 '킬러 세포' 라고도 불려요. 이 세포가 활성화 될수록 우리 몸을 유해 물질로부터 더 잘 지킬 수 있겠죠?

요로 · 배뇨 건강

혹시 이런 경험해보셨나요?



하루 8회 이상 소변



소변을 덜 본듯한 찝찝함



갑작스러운 요의감



아랫배 통증



악취가 나는 혼탁뇨, 혈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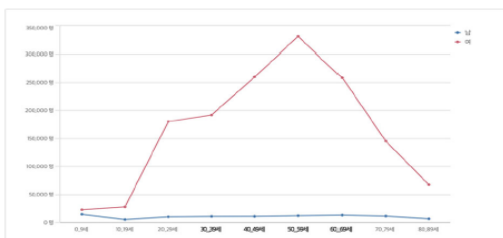
배뇨시 통증

- **구 분** : 질병의 예방 ·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내 용** : 통증, 혈뇨 등의 증상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내용
- **삭제사항** : 하루 8회 이상 소변, 아랫배 통증, 악취가 나는 혼탁뇨, 혈뇨, 배뇨시 통증

해당 증상이 있으신가요?

방광염을 의심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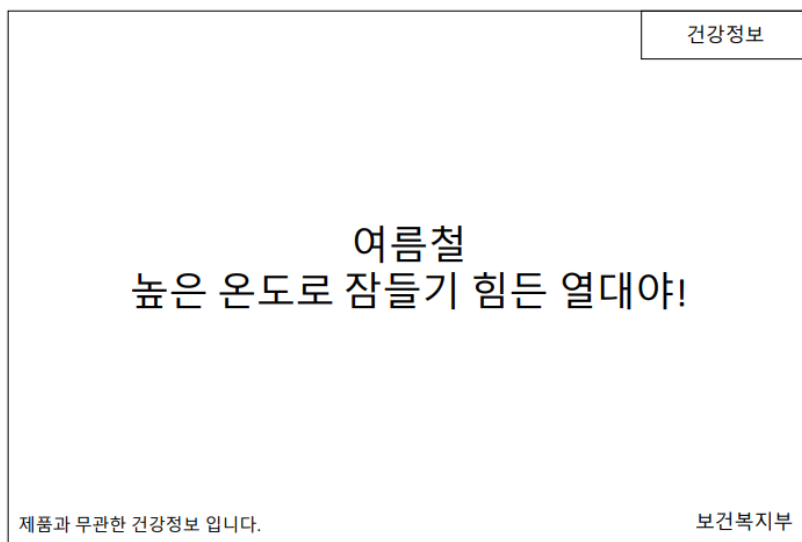
2020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중
방광염 치료를 받은 환자의 수는 무려 **159**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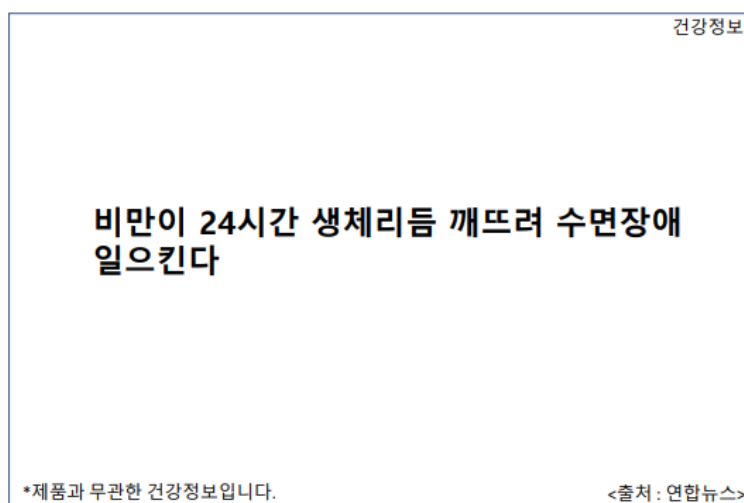
이중 93%는 **여성**이라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 **구 분** : 질병의 예방 ·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내 용** : 방광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내용
- **삭제사항** : 해당 증상이 있으신가요? 방광염을 의심해보세요, 2020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중 방광염 치료를 받은 환자의 수는 무려 159만명

수면 건강



- 구 분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 내 용 :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계절적 상황에 따른 수면의 어려움을 나타낸 내용
- 삭제사항 : 여름철 높은 온도로 잠들기 힘든 열대야



- 구 분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 내 용 : 수면 관련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비만 관련 내용
- 삭제사항 : 비만이 24시간 생체리듬 깨뜨려 수면장애 일으킨다

장 건강

쉿, 이젠 편안해지세요.

질과 장의 밸런스,
이제는 소중한 질 유산균과 함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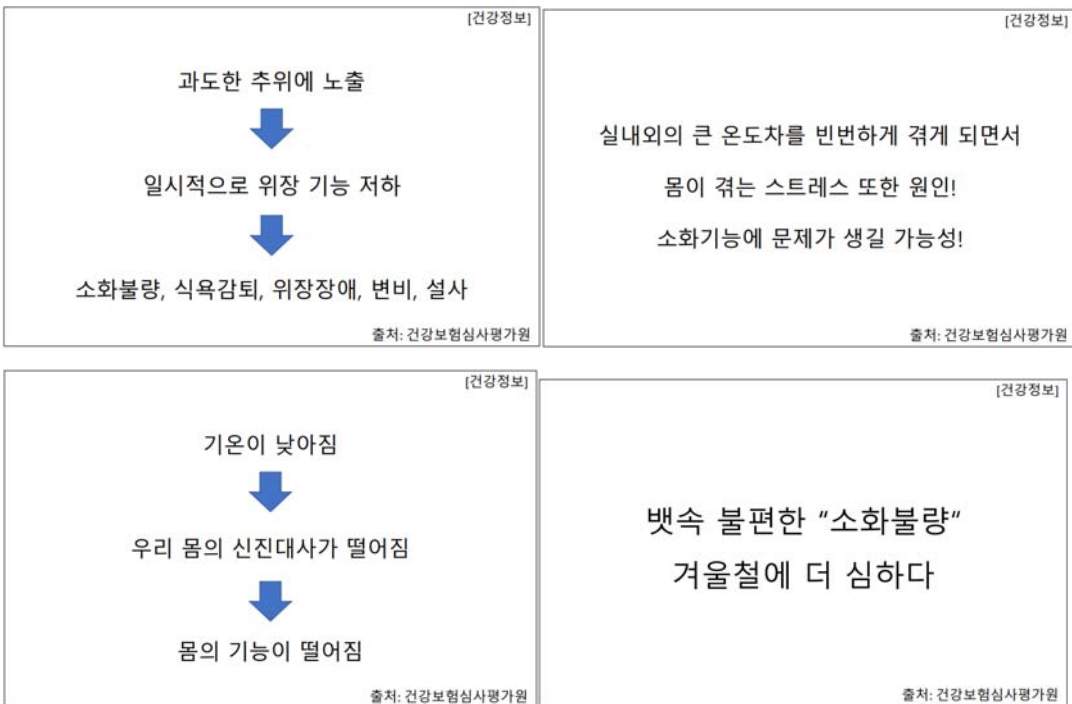
여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유래 특허 생유산균

관리하기가

“
어려워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여성이라면 누구나
평생 한번쯤 하는 고민!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질 건강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
- 삭제사항 : 여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유래 유산균, 질과 장의 밸런스,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여성이라면 평생 한번쯤 하는 고민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건강정보
- 삭제사항 : 뱃 속 불편한 소화불량 겨울철에 더 심하다, 기온이 낮아져 몸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내용, 소화불량·식욕감퇴·위장장애·변비·설사, 소화기능 관련 내용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내용 및 소화, 배탈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 오인
- 삭제사항 : 아무리 먹어도 배탈이 안 나는 아빠, 하루에 세 번 화장실 가는 오빠, 고기만 먹으면 소화를 못하는 엄마, 3일에 한 번 화장실 가는 언니

우울, 불안 및 수면 개선 임상 SCI급 논문 Nutrients 게재

SCI급 논문 Nutrients Cover Issue 선정(2021)

독자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개발을 통해
우울, 불안 및 수면 개선과 관련된 임상을 진행하였으며
SCI급 논문 Nutrients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임상 논문을 통해 BDNF의 증가 및 IL-6의 감소를 통한
정신질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 **구 분**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내 용** :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광고로 본 제품이 우울, 수면, 불안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 **삭제사항** : 우울, 불안 및 수면 개선임상, 독자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개발을 통해 우울, 불안 및 수면 개선과 관련된 임상을 진행하였으며, 임상 논문을 통해 BDNF의 증가 및 IL-6의 감소를 통한 정신질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V 케어는 뷰티의 영역만이 아니라
속부터 제대로
근본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정말 V존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환절기 다가오면서 너무 추워진 날씨에 내 몸의 밸런스도
깨질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스트레스 받거나 신체 밸런스가 깨지면 먼저 신호가 오는 예민한
부분이 V존 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까다롭고 신중하게 챙기는게 정말 중요해요
속부터 제대로 근본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100억 여성 질유래 특허유산균은
보장균수가 100억 입니다

가실 수 있겠지만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V존 케어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오인
- **삭제사항** : V 케어는 뷰티의 영역만이 아니라 속부터 제대로, V존의 건강, 환절기, 추워진 날씨, 예민한 부분이 V존, 속부터 제대로

여성 질 건강



- 구 분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내 용 : 질염 현상 및 질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내용
- 삭제사항 : 간지럽고 냄새나, 꼭꼭 수시고 따가워, 이려다 말겠지, 국내 여성 75% 질염 발병, 질질 끝면 질 나빠져

덥고 습한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여성질환 (인터넷 기사 / 2018-08-24)
<http://news.kmbn.co.kr/article/view.asp?arcid=0012627623&code=61171911&cp=mv>

여름철 심해진 외음부 가려움증, 질염 의심해봐야... (인터넷 기사 / 2017.08.22)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109>

"질염 때문에 여름이 두려워요"... 악취, 간지러움 유발하는 질염... (인터넷 기사 / 2021-04-29)
<https://www.hidoc.co.kr/healthstory/news/C0000599357>

습한 날 기승부리는 '질염'... 원인균 찾으면 신속 관리 (인터넷 기사 / 2020.08.16)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6/2020081402438.html

습한 날 잘 생기는 '질염', 원인균 관리가 우선 (인터넷 기사 / 2020.8.14)
<http://xormedi.com/1322304/%EC%A5%ED%95%9C-%EB%82%A0-%EC%9E%98-%EC%83%9D%EA%80%B0%EB%8A%94-%EC%A7%88%EC%97%BC-%EC%98%90%EC%9D%88%EA%B7%A0-%EA%78%84%EB%8B%A8%EC%90%B1-%EC%9A%B0%EC%84%A0>

"여성들, 무더운 여름철 질염 주의해야" (인터넷 기사 / 2017.6.15)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9310&thread=14r02>

환절기 재발 되는 질염, 만성질염으로 가지 않으려면? (인터넷 기사 / 2020. 4. 8)
<https://www.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348>

- 구 분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건강정보 위주
- 삭제사항 : 덥고 습한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여성 질환, 여름철 심해진 외음부 가려움증, 질염 때문에 여름이 두려워요, 악취·간지러움 유발하는 질염 등

어린이 키 성장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기능을 과장한 내용 및 단기간(방학)에 기능이 나타나는 것으로 오인
- 삭제사항 : 겨울방학 키 크기 대작전, 우리 아이 별명 콩에서 콩나물 됐어요, 키성장 치트키, 특정 기간에 키 성장 수치에 대한 내용 등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스트레스 개선 제품으로 오인되는 내용
- 삭제사항 : 스트레스 업, 세로토닌/멜라토닌 합성 다운, 계속되는 악순환 되잡아 드릴게요!

갱년기 남성 건강

이슈

60대 영업부장님 A씨... 다른 동료들에 비해 월등한 체력! 활력 '이것'으로 관리한다?

- 하루 2알로 100알의 효능을 나타내는 '이것'
- [redacted] 의 노하우를 모두 담아서 냈다는 '이것'?



IT기업에 종사하는 62세 영업부장 A씨의 활력이 이슈다. 쉽게 지치지 않는 지구력, 근력과 함께 실제 남성활력이 다른 사람과는 달라 일도 더 능률적으로 해내고 있으며, 동년배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은 활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기능성을 과장한 내용 및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내용
- 삭제사항 : 다른 동료들에 비해 월등한 체력 활력, 하루 2알로 100알의 효능을 나타내는 이것, 나이는 60대 활력은 30대, 근력과 함께 실제 남성 활력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일도 더 능률적으로 해내고 있으며, 동년배들과 비교했을 훨씬 더 높은 활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갱년기 여성 건강

기능성원료

인체시험결과

섭취 12주, 24주 후 기준치 대비 섭취군 LDL 콜레스테롤 유의적 감소 확인

※ 200mg/day정제로 12주, 24주 섭취 / 44-55세의 타이완 채경 주변기 여성 155명)

출처 : [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바이오마커의 인체시험내용으로 콜레스테롤 개선 기능제품으로 오인되는 내용
- **삭제사항** : 기능성원료 인체시험결과 섭취군 LDL 콜레스테롤 유의적 감소 확인

중년 되면 괜찮아져요, 여전히 공허한 마음은 왜?

하이닥 2020.05.13

출처 : <https://www.hidoc.co.kr/healthstory/news/C0000513177>

무더위 지나갔는데 내 얼굴은 왜 아직도 붉을까?

메디팜스투데이 2018.08.24

출처 : <http://www.pharms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425>

[1분Q&A] 갱년기로 인해 생긴 수면장애, 어떻게 해야 할까?

하이닥 2016.11.11

출처 : <https://www.hidoc.co.kr/healthstory/news/C0000173126>

수시로 오르내리는 열 때문에 고민

메디컬투데이 2013.03.29

출처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21238&cate=>

"여름에 더 괴로운 갱년기 증상, 호르몬 밸런스 회복해야"

베이비뉴스 2018.07.20

출처 : <https://www.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6974>

여름밤 갱년기와 수면건강

우리문화신문 2020.08.09

출처 : <http://www.koya-culture.com/mobile/article.html?no=125645>

여름 갱년기, 생활관리가 중요하다

헬스인뉴스 2018.07.20

출처 : <http://www.health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

"갱년기 여성은 여름에도 관리 철저"

약업닷컴 2012.06.13

출처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153434>

"갱년기 맞은 중년 여성, 면역력을 위해 여름철 건강관리 힘써야"

아주경제 2021.07.12

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200714132223974>

여름에도 관리하는 여성 갱년기

매일신문 2014.07.28

출처 : <http://news.imaail.com/Health/2014072807020904520>

- **구 분** : 질병의 예방 ·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내 용** :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출처의 건강정보가 아니며, 특정계절(여름)에 특화된 내용 및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건강정보
- **삭제사항** : 여전히 공허한 마음은 왜, 무더위 지나갔는데 내 얼굴은 왜 아직도 붉을까, 갱년기로 인해 생긴 수면장애, 수시로 오르내리는 열 때문에 고민, 여름에 더 괴로운 갱년기 증상, 여성 갱년기 증상, 호르몬 밸런스 회복해야 등

간 건강

내 간 관장은 얼마?

좋아하던 술자리 요즘따라 부담스럽다면?

간 건강 체크리스트

01 휴식을 취해도 피로와 무력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YES NO

02 평소서 보다 쉽게 신경이 날카분워진다.

03 과도한 음주를 지속하고 있다.

04 입에서 역한 냄새가 계속난다.

05 배에 가스가 자주 찬다.

간 건강 체크리스트

06 피부가 거칠어지고 나이에 맞지 않게 트러블이 난다. YES NO

07 소화가 잘 안되고 구역질이 자주 난다.

08 쉽게 감기에 걸리고 배탈이 자주 난다.

09 피부와 눈의 흰자가 노랗다.

10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난다.

내 간 건강 결과는?

YES가 0~3개

간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YES가 4개 이상

늦기전에 간 건강관리를 시작해야해요!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내용
- 삭제사항 : 좋아하던 술자리 요즘 따라 부담스럽다면, 술잔도안, 간 건강 체크리스트 건강정보

CHECK 01

체내 유해물질 감소해주는
착한 항산화물질, 실리마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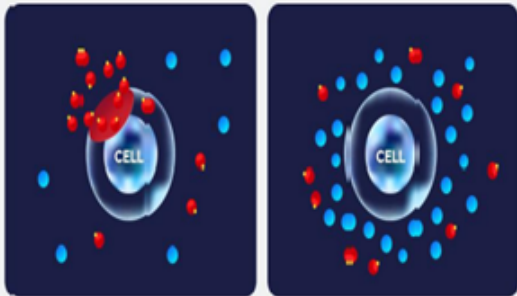


활성산소란?

체내 여러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산화적 스트레스가 유발하여 간세포를 파괴합니다.

항산화물질이란?

체내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여 세포를 보호합니다.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손상

항산화물질에 의한 세포보호

특히 활성산소는 세포막 성분의 불포화 지방산에 작용을 해 세포막에 있는 지질, 단백질, 결국 막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데, 실리마린은 활성 물질의 체내 저장량을 줄여 간세포를 보호합니다.

출처 | 'Mk Thistle in Liver Diseases: Past, Present, Future', Ludovico Abenavoli et al

CHECK 03

음주로 인한 간세포 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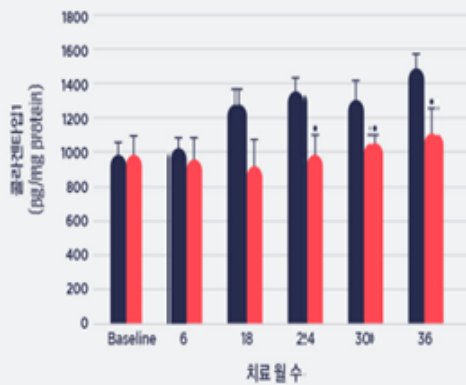
우리나라 만-성 간 질환자의 15~20%가 알코올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코올에 의해 발생하는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간경변증', 이 질환들을 통틀어 '알코올성 간질환'이라고 합니다.

출처 |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영장류 36개월 간의 관찰연구

대상 140mg silymarin TID 투여군과 대조군

■ 대조군 ■ 140mg 실리마린 TID 처리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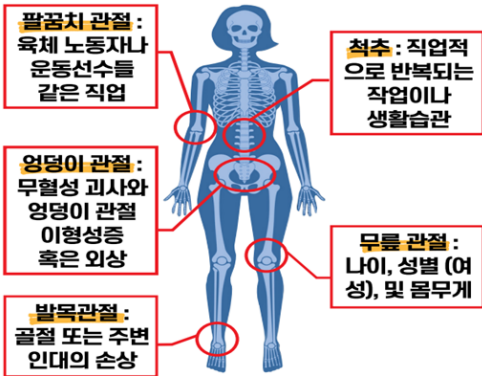
간경변에서 발생하는 간세포가 딱딱해지는 섬유화 현상이 대조군보다 실리마린 투여군에서 더 적었습니다. 실리마린 성분이 알코올에 의해 유발되는 산화적인 스트레스와 간세포의 손상 정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출처 | Lieber CS et al. J Clin Gastroenterol. 2003;37:336-9.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내용
- 삭제사항 : 체내 유해물질 감소해주는 착한 항산화 물질, 활성산소란, 항산화물질이란, 음주로 인한 간세포 손상, 영장류 36개월간의 관찰연구

관절 건강

골관절염 부위별로 원인의 차이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 건강 정보 포털, 골관절염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을 벗어난 건강정보
- **삭제사항** : 엉덩이 관절 표시 도안, 척추 표시 도안, 엉덩이 관절 : 무혈성 괴사와 엉덩이 관절 이형성증 혹은 외상, 척추 : 직업적으로 반복되는 작업이나 생활 습관

제품과 무관한 건강정보

겨울에 유난히 심한 ' 무릎 통증'... (헬스조선 2014.12.05)

“겨울 되면 더 시려요”... (YTN 2016.12.08)

추운 날씨, 무릎 관절 건강주의보 (매경헬스 2020.11.16)

바짝 다가온 겨울, 무릎관절도 추위 탄다 (헬스데이뉴스 2013.11.28)

살찌기 쉬운 겨울, 무릎 건강 지키기는 어려워 (머니뉴스 2015.12.14)

찬바람에 ‘뻣뻣’해진 관절... (뉴데일리경제 2016.12.14)

일교차 큰 환절기 때 관절 통증 심해져... (헬스조선 2015.10.30)

환절기 ‘무릎, 어깨’ 관절 통증, 관리와 치료 중요 (키닥터 2016.09.07)

일교차 큰 환절기, 관절은 괴롭다 (공공보건포털 2014.04.11)

밤만 되면 ‘찌릿’ 관절통으로 잠 못 들겠다면? (헬스조선 2021.08.20)

무릎 통증으로 지새우는 밤...(메디컬투데이 2021.04.08)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특정계절에 발생하는 증상 강조 및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내용
- **삭제사항** : 가을에 유난히 심한 ‘무릎통증’ , “겨울 되면 더 시려요” , 추운날씨, 무릎 관절 건강주의보, 바짝 다가온 겨울, 무릎관절도 추위 탄다, 살찌기 쉬운 겨울, 무릎 건강 지키기는 어려워, 찬바람에 ‘뻣뻣’해진 관절 등

M S M (산소34%, 수소6%, 황34%, 탄소26%)과학으로

관절·연골 세포를 춤추게하라

염증을 잡아야 통증이 사라진다...!!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건강기능식품공식인증 물질로 제조된 [] 로 체험기회 확대

의 약화를 초래하여 해독 기능의 저하, 혈액의 악화 등 만성염증과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신속한 보충이 요구된다. 실제로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관절에는 유황미네랄성분이 고농도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연골연질은 우리 몸의 유연해 원소인 유황 미네랄이 결핍하게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의학 안인 채 에서 권장하는 1일 유황미네랄 섭취량은 1500mg 이상이나 실제 섭취량은 50mg 미만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황미네랄의 부족은 뼈, 근육, 인대, 피부, 혈관, 신경 등

또한 손, 발등의 각질화 및 변형, 발모 또는 머리까지 가늘어지는 증상,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주름해지는 증상, 오심, 구, 남성전립선, 등의 유전성 상실, 어깨 결림, 운동 후 통증, 열-보우 등 다양한 질환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학계 보고 되고 있다.

[] 은 국내산 산양산양의 털과 줄기, 뿌리를 동결건조, 미세 과쇄 공법으로 M S M을 용해한 [] 를 흡수하여 대용액에 나눴다. 또한 산양산양 추출물과 M S M을 용해한 계면활성제(순도99.8 이상)까지 투입, 제조하여 피로해진 부위를 신속히 이완 시켜 부드럽게 맞닿게 할 수 있는 [] 도 함께 흡수, 관절, 연골 등 불편한 부위를 자유롭게 하는 도움을 주고 있다. "유황미네랄이 부족하면 단병이 찾아오고 유황미네랄을 채워 주면 단병이 사라진다" 고 동의보감 등 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지난 50대 년간 스펀지 제이콥 박사의 연구와 임상 실험을 통해 밝혀낸 단병 유황미네랄의 공급원인 M S M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유황미네랄이 함유된 [] 을 복용하게 하겠다.

전국 사도점 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

주소,관절염 [] 병원 [] 한방병원 (제주시)

- **구 분**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내 용** :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내용 및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 오인
- **삭제사항** : 염증을 잡아야 통증이 사라진다...!!, 유황미네랄의 부족은 뼈, 근육, 인대, 피부, 혈관, 신경 등의 약화를 초래하여 해독 기능의 저하, 혈류력 약화 등

4 MSM의 효능

MSM이 인체에 끼치는 효능

체내 에너지 효율 상승

MSM은 세포의 투과성을 높여주어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방지 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가 적어지고, 대신 다른 에너지가 필요한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해독작용 도움

MSM은 세포의 투과성을 높여주어 독소와 신진대사 폐기물을 배출하기 쉽도록 도와줍니다.

모발에 좋음

MSM에 함유된 유황은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케라틴과 클라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골다공증 및 관절 통증 완화

다양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MSM은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유연성을 높여주어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염제와 비슷한 효과

MSM은 신진대사 노폐물을 세포 밖으로 배출해줍니다. 우리 몸에 있는 독성과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유황이 도움이 되고 부산물이 신경계에서 흘러나올 때, 염증을 유발하는 액체를 제거 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에 긍정적인 효과

유황은 여드름, 피부염, 습진, 홍조, 미끈버짐 같은 피부에 좋지 않은 증상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소

MSM은 비타민, 코엔자임Q10, 아미노산, 셀레늄, 칼슘, 마그네슘 등 수 많은 영양소의 효과를 높여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런 각종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줌으로써 약효가 더 잘 나타날 수 있게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옵니다.

알레르기 완화

MSM이 신체의 점막과 결합하여 숙주와 알레르기 항원 사이의 차단 경계면을 생성시켜주어 음식, 흡입, 접촉등으로 인한 각종 알레르기의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 **구 분**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내 용** :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 오인
- **삭제사항** : MSM의 효능, 체내 에너지 효율 상승, 해독작용 도움, 모발에 좋음, 관절 통증 완화, 소염제와 비슷한 효과, 피부에 긍정적인 효과 등

왜 아픈가? 왜 낫는가?

많은 사람에게 안전하면서도 도움을 주고 있는 천연건강식품 MSM! 이제 당신이 그 혜택의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우연히 찾아온 유황! 그 기적같은 만남으로 제 2의 청춘을 맞이하다!

저는 평생 참전후, 고엽제 병으로 오랜 기간 고통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엽제 병은 몸속에 고엽제 독이 퍼져 신체 모든 기관에 병을 가져다주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고엽제 독을 몸에서 빼는 방법을 찾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료법을 물던 중 베트남 호치민 병원 원장님으로부터 독성이 없는 식이유황을 복용 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유기물유황 MSM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복용을 시작으로 11년째인 지금! 갑탄스럽고 신기할 정도로 건강이 좋아져 1948년생 74세 나이에도 하루 10시간 이상 업무를 가쁜히 해내며 출장을 지속적으로 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먹었던 심장약, 당뇨약, 발암약, 피부병약 등은 이제는 먹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 해졌습니다.

저는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고엽제로 고통 받는 수많은 전우들을 생각하여 주식회사 유황을 설립,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기황의 효능은 오래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예타게 알던 물질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한번뿐인 인생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확고 해졌습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아이들이 일생 동안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을 만든다는 원칙을 지켜나가며 고객님 항복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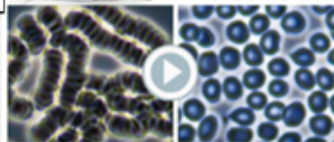
도서

관절염(골관절염), 허리통증, 두통, 섬유근육통 및 운동부상, 건염과 활액낭염, 외상 후 통증과 염증, 수근관 증후군, 척관절증후군, 치통, 속쓰림 및 위산과다, 꽃가루알레르기, 부비강염, 음식물알레르기, 천식, 류마티스관절염, 무릎, 관절성 방광염, 경피증, 변비의 완화, 변온조절의 감소, 부드러운 피부, 굵은 머리카락, 잘 부러지지 않는 손톱, 더 많은 에너지 등에 대한 내용과 증상완화 및 사례를 서술하고 있다.



4개월/축상유

생혈액세포 검사비교
섭취전, 섭취후 결과입니다.



1차 생혈액세포검사
400배(2019.03.15)

2차 생혈액세포검사
400배(2019.07.09)



약 100년 전부터 독일 벤디엔 박사가 발명하여 계속 연구한 증상별의 세포모양을 대표하게 태우는 핵산인물 []에서 국내 최초로 독성 안전계약 하였습니다.



세포는 신체를 구성하는 조직의 기초단위
세포가 건강해야 내 몸이 건강하다

MSM제품은 효진사에 다수보유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나누고 수확을 나누는
건강나눔미 모심

1. 자격: 65세이상 (재택근무)
활동과 의사선달에 지장이 없는분

2. 업무: 동 안종오신분 지사와
대화연결 업무

3. 수익: 월 수익금은 성과급으로 드림

4. 인환: 각 자사별 > 행정구당(1명)

접수는 거주지역 해당지사로
이력서 email 보내주세요

MSM **이물질**
비교사진

물 250ml에 MSM 12%를 하루동안 4인 후 현미경 1,000배로 확대하여 비교사진입니다.

유황이전	MSM	OH	GS
DP	DB	JR	JR
IA	DH	NA	통증

이물질, 불순물이 함유된 MSM은 장기적으로 복용시 인체에 해를 줄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MSM을 보내주시면 이물질 검사를 무료로 해 드립니다

정확도 100%

- **구 분**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을 벗어난 내용,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 **삭제사항** : 왜 아픈가? 왜 낫는가? 삶의 끝자락에서 우연히 찾아온 유황! 그 기적같은 만남으로 제 2의 청춘을 맞이하다!, 관절염(골관절염), 허리통증, 두통, 섬유근육통 및 운동부상, 건염과 활액낭염, 외상 후 통증과 염증, 수근관 증후군, MSM 섭취 후 생혈액세포검사 비교 등

항산화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 범위에서 벗어난 과도한 건강정보
- 삭제사항 : 가을 환절기에 유해 세균 번식 잘 돼, 가을 환절기 입 안 세균 득실 등

[건강정보]

본 정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건강정보로 제품의 질병 치료 관련 정보가 아닙니다.

구강내 질병 유발 유해균

입속 나쁜 세균 vs 착한 세균

나쁜 세균

- 뮤탄스**
충치 원인균
어금니 씹는 면의 홈, 이와 이 사이에 주로 서식
입속 영양분 먹고 젖산 분비. 치아 부식
- 포시시아-덴티콜라**
잇몸병 원인균
이와 잇몸의 틈, 이와 이 사이에 주로 서식
염증 유발, 치석 생성
- 진지발라스**
포시시아-덴티콜라와 함께 잇몸병 원인균
손상된 혈관으로 파고들어 운물에 퍼짐
심장병, 당뇨병, 폐질환, 신장질환 등 전신 질환 유발








기관지내 질병 유발 유해균

- Haemophilus influenzae**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가 침습성 질환을 유발함. 가장 흔한 임상 증상은 수막염, 후두개염, 폐렴, 관절염 등이 있음. 후두개염은 후두개의 감염으로 호흡기 폐색을 일으킬 수 있음
- Streptococcus pyogenes**
A군 베타 용혈성 연쇄구균(Group A β-hemolytic Streptococci)이 발열성 외독소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을 일으킴. 주요발병 증상은 인두통에 동반되는 갑작스런 발열, 두통, 식욕부진, 구토, 인두염, 복통, 편도선이나 인두 후부에 점액 화농성의 삼출액 등이 있음
- Staphylococcus aureus**
황색포도상구균으로, 급성 세균성 부비동염의 원인균
- Streptococcus pneumoniae**
폐렴구균으로, 침습성 질환을 일으킴. 주요발병 증상은 성인의 경우 폐렴, 소아에서는 급성 중이염, 부비동염, 폐렴이 흔함

출처
성인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사용 지침 권고안. November 16, 2017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 잇몸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편. 2020.08
식품 안전나라. 기능별 정보. 치아 건강이란?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제2급]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알아보기
질병관리청_감염병 포털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 범위에서 벗어난 과도한 건강정보
- 삭제사항 : 구강 내 질병 유발 유해균, 기관지 내 질병 유발 유해균, 뮤탄스 충치 원인균, 잇몸병 원인균 등

구강에서의 항균작용

번호	비디오	오디오	자막
#1	(길거리) 마스크를 쓰고 크게 숨 쉬는 A 	(숨소리 삽입) "벗을 수 없다면"	마스크, 벗을 수 없다면
#2	가방에서 []-을 꺼내는 모습 	"숨결만은 상쾌하게!"	숨결만은 상쾌하게!
#3	[]을 마시고 마스크 쓰는 A 		
번호	비디오	오디오	자막
#1	(회사 회의실 느낌의 실내) 사원 A, 클로즈업되며 회의실에서 외침 	A) "사장들아 솔직히 점심시간에 양치시간 5분 더..." (속사포로)	사장들아 솔직히 점심시간에 양치시간 5분 더...(자막에 타이핑 효과 적용)
#2	갑자기 나타나는 [] 	나레이션) "시간 없어? 일단 마셔!"	
#3	[]을 마시자 환해지는 입 	[] []	
#4	제품 이미지 삽입 		처음 마시는 [] [] 만나요;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양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되는 내용
- 삭제사항 : 마스크, 벗을 수 없다면 “숨결만은 상쾌하게!” (마스크를 쓰고 제품을 섭취하는 광고내용), 사장들아 솔직히 점심시간에 양치시간 5분 더... 시간없어? 일단 마셔!

피부 건강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내용
- 삭제사항 : 균형이 무너진 피부 세균이 번식하고 있진 않나요? / 피부는 습도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마스크 내 습도와 온도가 올라가면 각종 피부염이 발생해 피부 내부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

거울을 볼 때마다 달라지는 피부가 고민이신 분
 가벼운 자극에도 뒤집어지는 피부가 고민이신 분
 어두운 피부톤이 고민이신 분
 얼룩덜룩한 피부 잡티가 속상하신 분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주름이 속상하신 분
 여배우들의 피부관리 비결이 궁금하신 분
 결혼식, 상견례... 큰 행사를 앞두고 관리가 필요하신 분
 육아, 살림, 회사일.. 바쁜 일상으로 피부관리에 시간이 모자란 분
 좀 더 생기있고 윤기나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내용
- **삭제사항** : 가벼운 자극에도 뒤집어지는 피부 / 어두운 피부톤 / 얼룩덜룩한 피부 잡티 /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주름 / 결혼식, 상견례...큰 행사를 앞두고 관리가 필요하신 분

건강 정보

자외선, 겨울에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 (100뉴스,2021)
<http://www.100news.kr/8778>


· · · 겨울스포츠.. 피부·눈건강 유의하세요 (연합뉴스,2018)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0135200797>

"겨울 자외선이 더 무서워" (헬스조선,2015)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15021002749

겨울철 자외선, 여름 자외선보다 약할까? (하이닥,2017)
<https://www.hidoc.co.kr/healthstory/news/0000192034>

스키장 자외선, 여름 땀벌보다 4배 강해 (헬스조선,2010)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100122005728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특정 계절에 특화된 것으로 오인 및 공신력 있는 기관 출처가 아닌 건강정보
- **삭제사항** : 자외선, 겨울에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 / 겨울스포츠.. 피부·눈건강 유의하세요 / 겨울 자외선이 더 무서워 / 겨울철 자외선, 여름 자외선보다 약할까? / 스키장 자외선, 여름 땀벌보다 4배 강해

	비디오	참조	자막	detail
	/커버를 위해 두껍게 파운데이션을 바른다.			
3	<p>#화단-> 30대 주부, 화단에 물을 주고 있으면 햇빛이 얼굴을 따갑게 때린다. 손으로 가리며 활동을 멈추고 집으로 향한다</p> <p># 집안-> 집으로 달려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거울을 보며 안타까운 듯 피부를 만지작거린다.</p>	 	<p># 광노화의 주범을 잡아라! # 피부 질환과 노화의 주범 자외선</p> <p># 주름 # 피부 장벽 손상 # 건조</p> <p># 연결고리를 차단!</p>	<p>깊어지는 주름의 주범은 광노화!</p> <p>자외선으로 인한 피부노화가 느껴지신다면</p> <p>지금이 바로 제비령을 만나야 할 때!</p>

- 구 분 : 질병의 예방 ·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피부질환, 노화 등에 기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
- 삭제사항 : 광노화의 주범을 잡아라! / 피부 질환과 노화의 주범 자외선 / 주름, 피부 장벽 손상, 건조 연결고리를 차단! / 깊어지는 주름의 주범은 광노화! 등

제품과무관한건강정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색소성 피부반점

★ 기미
주로 여성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크기의 갈색 혹은 청회색 색소침착으로 뺨, 이마, 코, 턱 부위에 나타납니다. 자외선 노출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임신, 경구피임제 복용으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도 원인이 됩니다.

★ 주근깨
뺨에 주로 발생하는 황갈색의 깨알 같은 크기의 작은 색소성 반점으로 자외선을 쬐 후 멜라닌 색소의 합성이 증가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며 유전적 요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흑자
중노년층의 얼굴, 손등, 팔, 다리 등에 흔히 나타나는 갈색 반점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부위에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할머니 얼굴에 많이 나타납니다.

★ 검버섯
중노년층에서 나타나는 갈색 또는 진한 갈색의 용기된 타원형의 병변으로 본래의 피부보다 튀어나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흔히 '저승꽃'이라고도 일컬어 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햇빛에 자주 노출되는 피부에서 더 크게, 더 많이 생깁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 피부노화현상과 피부노화에방법에 대한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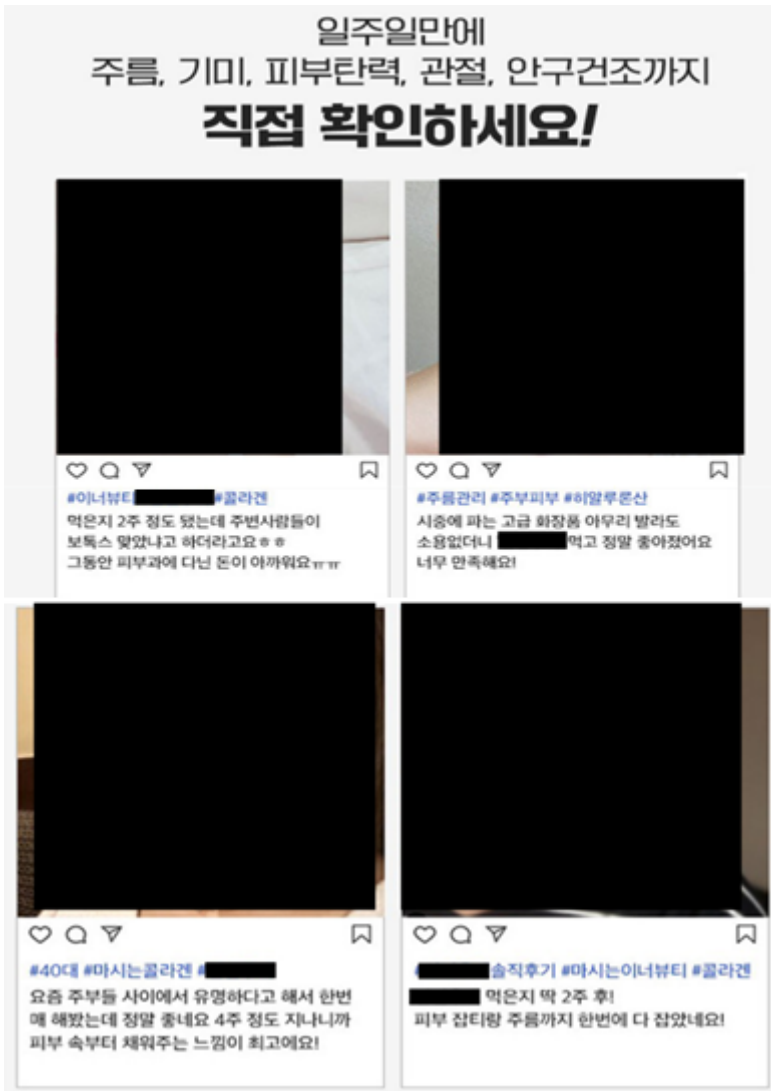
주원인은

자외선!

자석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질병과 관련된 건강정보
- 삭제사항 :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색소성 피부반점 / 기미, 주근깨, 흑자, 검버섯 내용

피부 보습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을 벗어난 내용 / 피부과 시술 및 화장품보다 우수함을 암시하는 표현 / 특정 기간 섭취 시 효과를 보장하는 후기
- **삭제사항** : 일주일 만에 주름, 기미, 피부탄력, 관절, 안구건조까지 / 먹은 지 2주정도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톡스 맞았냐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피부과에 다닌 돈이 아까워요 / 시중에 파는 고급화장품 소용없더니 / 주름관리 / 4주정도 지나니까 피부 속부터 채워주는 느낌이 최고예요 / 먹은 지 딱 2주후! 피부 잡티랑 주름까지 한 번에 다 잡았네요!

**화장품을 발라도
속당김이 해결되지 않나요?**

- ✓ 푸석푸석하고 거칠어진 피부
- ✓ 자주 건조한 피부
- ✓ 피부 손실이 걱정되는 피부
- ✓ 세안 직후 피부 건조함이 심한 피부
- ✓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각질이 일어나는 피부
- ✓ 화장품을 발라도 속당김이 해결되지 않는 피부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바르는 화장품보다 우수함을 암시 및 인정된 기능성을 벗어난 내용
- 삭제사항 : 화장품을 발라도 속당김이 해결되지 않나요? /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각질이 일어나는 피부 / 화장품을 발라도 속당김이 해결되지 않는 피부

<p>아침에 히알루론산 2정</p> 	<p>잠들기 전 곤약세라미이드 2정</p> 
<p>제품사진</p>	<p>제품사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보습 개선확인 ✓ 각질제거 개선확인 ✓ 피부주름 개선확인 ✓ 피부탄력 개선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볼(얼굴) 수분손실량 감소 ✓ 팔꿈치 수분손실량 감소 ✓ 발등 수분손실량 감소
<small>- 기능성명: 히알루론산의 인체기능시험결과 -</small>	<small>- 기능성명: 골루코산(세라미이드)의 인체기능시험결과 -</small>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인체시험 결과를 제품의 기능성처럼 표현한 내용
- 삭제사항 : 피부보습 개선확인 / 각질제거 개선확인 / 피부주름 개선확인 / 피부탄력 개선확인 / 볼(얼굴) 수분손실량 감소 / 팔꿈치 수분손실량 감소 / 발등 수분손실량 감소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

장내 세균 불균형
면역 불균형

피부건강 악화

출처(1) The role of topical probiotics in skin conditions: A systematic review of animal and human studie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Therapies p.15
출처(2) Microbiome in the Gut-Skin Axis in Atopic Dermatitis 2018 July;10(6):354-362, pp.354-355

장에서 시작되는 피부건강



장 건강 정상적인 피부 건강
면역기능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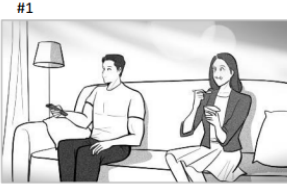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을 벗어나 장 건강과 피부 건강을 연결시킨 내용
- 삭제사항 : 장내 세균 불균형, 면역불균형 -> 피부건강 악화 / 장에서 시작되는 피부건강 / 장 건강 -> 정상적인 면역기능 -> 피부 건강 개선

160mg 이상 섭취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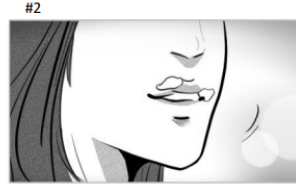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있음
아토피 피부와 같은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

- 구 분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내 용 :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아토피 피부 개선 기능으로 오인되는 내용
- 삭제사항 : 아토피 피부와 같은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

단백질



#1
햇살이 비치는 거실 소파
TV를 보면서 [블랙]과 여자
요거트를 입수위에 흘리고 먹는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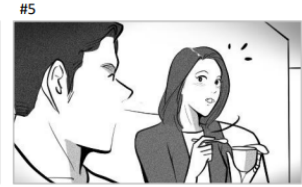
#2



#4

팔 근육 클로즈업,
근육이 심장 뛰듯 움직인다

S.E) 득근득근! 득근득근!



#5

여자 이제야 그 유명한 [블랙]의 눈빛과
득근득근 심장소리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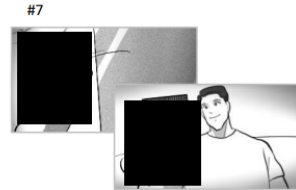
S.E) 득근득근, 득근득근



#6

[블랙]은 여자 쪽으로 다가가고
여자는 눈을 감으며 입술을 살짝 내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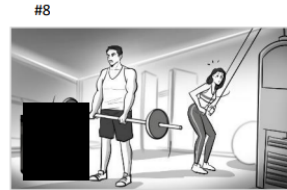
S.E) 득근득근, 득근득근



#7

여자 옆에 제품을 꺼내 드는 [블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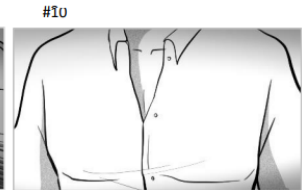
NA) 근육이 설렌다



#8

헬스장에서 팔운동용 하는 [블랙]
그 뒤로 운동하며 [블랙]을 보는 여자

NA) 득근득근, [블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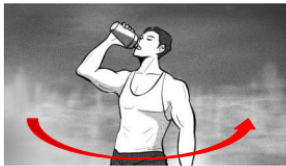


#10

가슴 근육 클로즈업,
셔츠 밖으로 울룩불룩 튀는
모습이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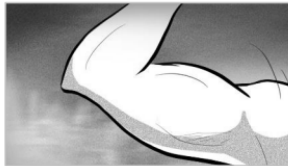
S.E) 득근득근, 득근득근

#21 반팔입은 옥택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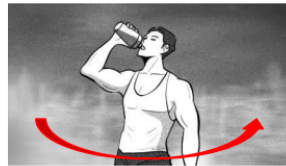
S.E) 꿀꺽 꿀꺽 꿀꺽

#22 불끈불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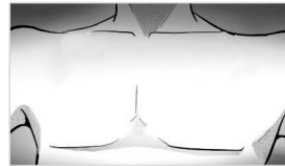
NA) 이두근이 먹는다

#23



S.E) 꿀꺽 꿀꺽 꿀꺽

#24 대역모델



NA) 대흉근이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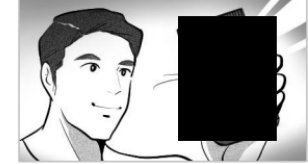
#26 대역모델

NA) 복근이 먹는다



#27-30 운동하는 [블랙]

NA) 근육이 먹는다



[블랙] 들어 보며 웃는 [블랙]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근육증강 기능으로 오인되는 내용

■ **삭제사항** : 득근득근, 몸이 좋은 모델의 특정 부위 근육 클로즈업, 근육이 심장 뛰듯 움직이는 모습, 이두근이 먹는다, 대흉근이 먹는다, 복근이 먹는다, 근육이 먹는다 등

12주 만에 10명 중 7명이 긍정적인 체성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 씨(키 172cm)

몸무게	72kg → 65kg	7kg ↓
체지방	11.6kg → 4.4kg	7.2kg ↓
근육	33.4kg → 34.3kg	0.9kg ↑

■ 씨(키 172cm)

몸무게	78kg → 68kg	8kg ↓
체지방	14.9kg → 7.6kg	7.3kg ↓
근육	34.1kg → 34.5kg	0.4kg ↑

출처: ■■■■■■■■■■ 5기 12주 후 배디프로필 픽은 ■■■■■■■■■■ (30)남 ■■■■■■■■■■ (32)남



출처: inbody 체성분 변화 데이터 ■■■■■■■■■■ 5기 참여자 662명 대상, '19.03~20.07'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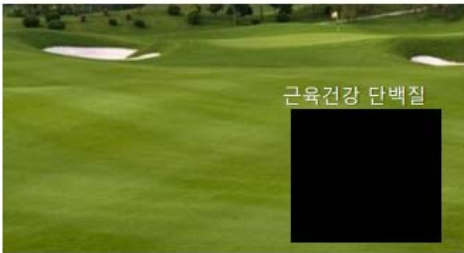
- 구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용 : 특정 기간 동안 본 제품의 섭취 후 기능을 볼 수 있다는 내용
- 삭제사항 : 단 기간 내에 집중관리를 통해 내 몸의 변화를 느끼고 싶다면, 전담헬스플래너와 함께 6/12주 동안 나만의 맞춤형케어, 12주 만에 10명 중 7명이 긍정적인 체성분의 변화를 경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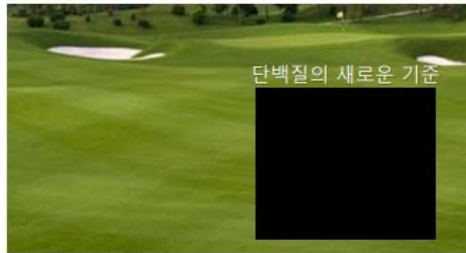
자막) 근육이 제대로 잡혀야



자막) 공도 제대로 치는 법



자막) 근육건강 단백질



자막) 단백질의 새로운 기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골프 능력 향상 기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
- 삭제사항 : 근육이 제대로 잡혀야 공도 제대로 치는법, 장타 제대로 날리고 싶다면 근육건강이 잡혀야, 골프는 코어가 생명이니까, 그린 필드에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니까 등

[제품과 무관한 건강정보]

단백질 : 땀의 구성
물질 중 하나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땀을 흘리면 다량의 단백질이 손실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건강정보
- 삭제사항 : 단백질: 땀의 구성물질 중 하나

건강정보

뼈와 근육은 힘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출처: Mechanism of muscle-tendon-bone complex development in the head

골격근은 단백질로 구성

출처: How Muscle Structure and Composition Influence Meat and Flesh Quality (물 75%, 단백질 20%, 지방1~10%)

힘줄의 65% ~ 80%는 콜라겐으로 구성

출처: Structure of the tendon connective tissue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건강정보
- 삭제사항 : 뼈와 근육은 힘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힘줄의 65%~80%는 콜라겐으로 구성

고령층 겨울철 낙상 위험 줄이려면 근육을 지켜라
[이데일리 2018.12.18]

활동량 줄어드는 겨울철, 노년층 근육 감소로 낙상 위험 높아 주의
[이데일리 2019.12.20]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근육감소로 인해 특정 계절(겨울)의 낙상위험과 관련된 건강 정보
- 삭제사항 : 고령층 겨울철 낙상 위험 줄이려면 근육을 지켜라, 활동량 줄어드는 겨울철, 노년층 근육 감소로 낙상 위험 높아 주의 등

[건강정보]

식물성 식단

당뇨 심혈관 질환 고혈압 비만

위험을 감소!

(출처 : Protein for Life: Review of Optimal Protein Intake, Sustainable Dietary Sources and the Effect on Appetite in Ageing Adults)

[건강정보]

미국 국립보건원

노인 식물성 단백질 섭취 권장

(출처 : Protein for Life: Review of Optimal Protein Intake, Sustainable Dietary Sources and the Effect on Appetite in Ageing Adults)

- **구 분** : 거짓 과장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내 용** :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식물성 단백질이 더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
- **삭제사항** : 식물성 식단 - 당뇨, 심혈관 질환, 고혈압, 비만 위험을 감소, 미국 국립보건원 노인 식물성 단백질 섭취 권장, 한국인 육류 소비량 증가 내용, 한국인 식물성 식품 섭취 감소 및 동물성 식품 섭취 증가, 대세는 '식물성 단백질' 등

칼슘, 마그네슘, 인 함유량

모유, 소우유 < **산양유**

(출처: Goat Milk Consumption Enhances Innate and Adaptive Immunities and Alleviates Allergen-Induced Airway Inflammation in Offspring Mice)

'산양유'

일반 소 우유보다 **인간이 소화하기 쉽다!**

SCI급 논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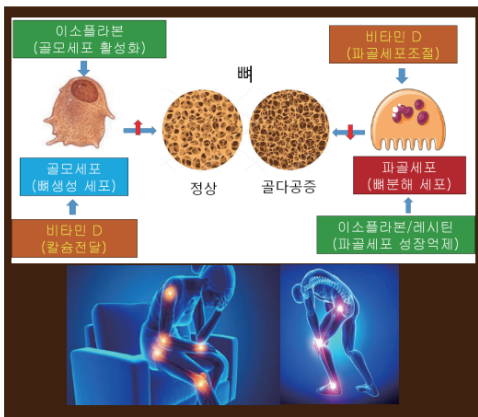
(출처: Goat Milk Consumption Enhances Innate and Adaptive Immunities and Alleviates Allergen-Induced Airway Inflammation in Offspring Mice)

- 구 분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 내 용 : 단백질의 원재료로 사용된 산양유를 강조하여 타 원재료 단백질보다 우수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
- 삭제사항 : 칼슘, 마그네슘, 인 함유량 -모유, 소우유 < 산양유, 산양유 일반 소 우유보다 인간이 소화하기 쉽다 등

뼈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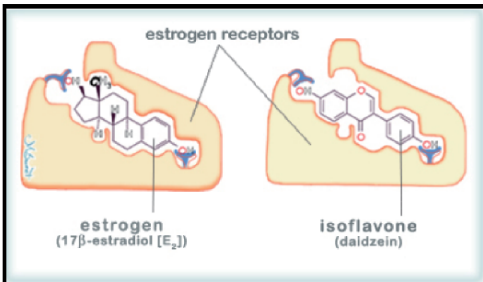
는 뼈를 만드는 골모세포를 활성화하고 뼈를 갉아먹는 파골 및 염증세포의 생성을 억제하여 뼈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뼈건강은 치아, 잇몸 및 관절건강, 신경통, 관절통 등의 각종 통증, 관절염, 골절, 골다공증, 임플란트 및 인공관절 시술과 관리 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자료: J Health Sci, 48, 209-222 (2002) 등.

이소플라본/레시틴 복합체의 폐경동물에의 생물학적 효능연구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여 생리학적 작용을 하므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 구 분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내 용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내용
- 삭제사항 : 노화촉진물질의 생성을 억제, 뼈건강은 치아, 치아 잇몸 및 관절건강, 신경통, 관절통 등의 각종 통증, 관절염, 골절, 골다공증, 임플란트 및 인공관절 시술과 관리 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골모세포 활성화, 파골 및 염증세포의 생성을 억제 및 관련 기전내용, 이소플라본/레시틴 복합체의 폐경동물에의 생물학적 효능 연구, 비타민 D는 면역력을 높임,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여 생리학적 작용을 하므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등

Ⅶ 기능성 내용별 자주하는 질문

체지방 감소

Q1. 피지컬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근육 증가에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오인되며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표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2. '이너뷰티'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체지방 감소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피부 관련 기능성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3. '자면서 하는 다이어트'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적절한 식이조절과 운동과 함께 체지방 감소 기능성 제품을 섭취토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자면서도 쉽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고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어 사용 불가합니다.

Q4. 임산부, 수유부를 대상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 체지방 감소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임산부, 수유부에게 권장하는 내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Q5. '내장지방 다이어트'와 같은 표현을 할 수 있나요?

- 내장지방은 인체시험의 지표로 허용된 것으로 인체시험으로 확인된 바이오마커는 제품의 기능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광고 문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6. 체중계 도안을 쓸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수치를 나타내는 체중계 도안은 사용 불가합니다.

면역력 증진

Q1. '싸이토카인 증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싸이토카인은 인체시험의 지표로 허용된 것으로 인체시험으로 확인된 바이오마커는 제품의 기능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광고 문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립선 건강

Q1. 테스토스테론 관련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있나요?

- 테스토스테론은 인체시험의 지표로 허용된 것이며, 제품의 기능성으로 오인되므로 광고 문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2.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있을까요?

- 전립선 건강 기능성 원료의 섭취대상은 성인 남성만 해당되므로 어린이와 여성을 섭취대상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지구력 증진

Q1. '스데미나'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표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2. '남성의 지구력'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나요?

- 기능성이 남성에게만 특화된 것으로 오인되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 건강

Q1. 해독과 관련된 표현이 가능한가요?

- 해독관련 표현(서양서 간 해독제로 널리 알려진, 간 해독, 해독공장 간의 역할은, 늘 피로한 몸 간해독으로 '원인' 제거 등)은 기능성 범위 밖의 표현으로 광고가 불가합니다.

정자 운동성

Q1. 정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표현이 가능한가요?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표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갱년기 남성 건강

Q1. 갱년기 남성 건강 제품에서 성기능 향상을 암시하는 내용을 표현 할 수 있나요?

- 성기능 향상을 암시하는 내용(물개·말 이미지, 남자답게 등)은 기능성 범위 밖의 표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갱년기 여성 건강

Q1. 갱년기 현상(ex 안면홍조, 불면증, 손발저림, 신경과민, 우울증, 두통, 질건조 및 분비물 감소)과 관련된 표현을 광고에 인용할 수 있을까요?

- 제품정보에서 갱년기 현상과 관련된 표현(ex 시도 때도 없이 오르는 열감에, 자꾸만 뒤척이는 새벽에, 칙칙해져 가는 피부에, 손부채질 하는 주 인공의 한숨소리, 덥고 얼굴에 자꾸 열이 올라요, 한여름 보다 뜨거운 갱년기 체감 온도, 홍조 개선 스트레스 완화 신경질 근육통 등)은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표현으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인용할 수 없습니다.

Q2. 여성호르몬 관련 표현을 표현 할 수 있나요?

- 여성호르몬 관련 표현(에스트로겐 함유, 체내 에스트로겐이 과다/부족한 경우 밸런스를 맞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줄어드는 에스트로겐을 보충하여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평균 45세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여성호르몬 등)은 기능성 범위 밖의 표현으로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면 건강

Q1. 수면제 대신 수면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내용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2.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체지방이 늘어 날수도 있다는 내용을 광고할 수 있나요?

-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과장된 내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

Q1. '불안장애'관련 표현이 가능한가요?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피로 개선

Q1. '정신적 피로, '심신의 긴장완화'관련 표현이 가능한가요?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관절 · 연골 건강

Q1. '관절 및 연골기능 개선'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내용 그대로인 '관절·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대로 광고하여야 합니다.

Q2. 허리, 고관절, 목 관련 표현 및 도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3. '식물성 MSM', '식이유황' 표현을 광고할 수 있을까요?

- 1) 제조국 정부 발행 MSM 기원 확인 증명서
2) 1)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제조사 발행 증명서
위 두 서류가 제출될 경우만 사용 가능합니다.

Q4. 오십견, 일자목 증후군, 거북목 등의 표현이 사용 가능할까요?

- 기능성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사용 불가능 합니다.

항산화

Q1.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주원료인 제품에서 S.I.F. 인증 마크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나요?

- S.I.F.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를 증빙자료로 제출 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식이섬유 보충

Q1. 배변활동, 배변곤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식이섬유의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표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억력 · 인지력 개선

Q1. 집중력에 관한 내용을 광고 할 수 있을까요?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표현으로 집중력 개선에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광고할 수 없습니다.

혈중 중성지질 · 혈중 콜레스테롤 · 혈행 개선

Q1. 건강정보로 사망률, 사망원인과 관련된 내용을 광고 할 수 있을까요?

- 소비자로 하여 공포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건강정보에 해당하므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Q2. 유럽 등의 국제 기준 및 규격으로 품질관리하고 있다는 내용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품질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광고할 수 있을까요?

-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안전성이 인정된 식품임에도 해당 내용을 광고할 경우, 다른 제품보다 안전성이 더 뛰어난 것으로 오인되므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Q3. 계절, 날씨 변화에 따른 위험성을 나타내는 자료를 건강정보로 광고 할 수 있을까요?

- 특정 계절, 날씨에 특화된 기능성 제품임을 암시 및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건강정보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Q4. 식물성 원료로부터 추출하여 더 안전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식물성 원료가 아니면 안전하지 않음을 암시하는 타원료 비방 표현이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월경 전 불편한 상태개선

Q1. 월경 전 증후군을 광고 문구로 사용 할 수 있을까요?

-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 건강

Q1. 자외선과 블루라이트 관련 내용을 광고 할 수 있을까요?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자외선, 블루라이트 차단에 기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광고할 수 없습니다.

Q2. 눈을 찡그리거나 초점이 안 맞는 이미지나 관련 문구를 광고할 수 있을까요?

-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시력 개선에 기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어 광고할 수 없습니다.

위 건강

Q1. 방송프로에 나왔던 자가진단 표를 인용할 수 있나요?

-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출처가 아닌 방송내용을 인용한 자가진단 테스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 건강

Q1. '파라바이오틱스'라는 표현이 가능할까요?

- 유산균사균체를 '파라바이오틱스'로 통용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판단되어 광고할 수 없습니다.

Q2. '장트리블, 배탈, 배앓이, 숙변, 변비, 설사' 등의 표현이 가능할까요?

○ 질병 관련 표현으로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Q3. 장 내 특정 부위(소장, 대장 등)에 작용한다는 내용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장내 특정 부위에만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Q4. 보장균수가 장까지 살아간다는 표현이 가능할까요?

○ 보장균수는 유통기한 내 제품에 보장되는 균의 수로 보장균수가 장까지 살아간다는 내용(장까지 살아가는 100억 보장균수, 장 끝까지 100억을 보장합니다 등)은 기능성을 과장된 표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5. 시험 성적서를 광고물에 인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같은 제품이여도 시험마다 성적서의 값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대표값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제품에 기재된 보장균수와 다르거나, 식약처 고시 기준의 최대 보장균수를 초과하는 값이 기재되어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Q6. 투입균수에 대한 내용만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투입균수는 제품 생산 시 투입되는 균수로 보장균수보다 많은 양이 투입되므로 소비자가 투입균수를 보장균수로 오인할 우려가 있기에 투입균수만을 강조하는 표현(1000억 유산균 투입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Q7. '질 유래' 고시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광고에서 여성을 섭취대상자로 타겟하는 광고를 할 수 있을까요?

○ 질 유래 유산균을 광고에서 여성만을 섭취대상자로 한정할 경우, 여성 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광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 건강을 암시하는 표현(건강해질, 질 도안, 행복해질 등)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성 질 건강

Q1. 질 내 pH 밸런스, 약산성으로 유지 등의 표현을 광고할 수 있을까요?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질 pH 밸런스 유지에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광고할 수 없습니다.

Q2. 깨끗, 청결과 관련된 문구를 광고할 수 있을까요?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여성 질 청결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광고할 수 없습니다.

혈당 건강

Q1. 혈당 건강 제품에서 모델이 식이 조절 없이 음식을 마음껏 섭취하는 모습을 광고할 수 있을까요?

-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해도 문제없이 혈당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광고할 수 없습니다.

Q2. 혈당 조절,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을 광고할 수 있을까요?

- 원료의 기능성이 수치조절과 관련 있는 원료(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등)에 대해 관리, 조절 등의 광고 문구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광고할 수 없습니다. 단,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의 경우, 기능성 내용 그대로를 기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린이 키 성장

Q1. 줄자 도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단순 줄자 도안은 사용할 수 있으나, 수치가 기입되어 해당 수치만큼 키 성장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용 불가능 합니다.

Q2. '목표키, 예상키'에 대한 내용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목표하는 키만큼 성장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뼈 건강

Q1. 여름에 골절이 많이 일어난다는 내용을 건강정보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특정계절에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인 및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건강 정보(여름철 골절 관련 기사내용, 여름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 등)에 해당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부 보습

Q1. 건조한 환절기, 찬바람 부는 겨울철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건조한 특정시기에 탁월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Q2. 부원료로 히알루론산, 콜라겐, 엘라스틴이 함유된 경우 피부구성 성분이라고 광고할 수 있을까요?

- 부원료의 기능성은 광고할 수 없으며, 부원료 강조 표현에 해당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Q3. 콜라겐이 주원료인 제품에서 분자량(Da, 달톤)을 광고할 수 있을까요?

- 사실에 기반한 단순 분자량에 대한 광고는 가능합니다. 단, 분자량이 작아 기능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저분자로 빠른 흡수, 작을수록 높은 흡수율, 저분자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내용, 타원료와 분자량 비교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Q1. 면역글로불린의 생산 감소, 면역체계 정상화, 염증세포 생성 억제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2. 사소한 자극에도 반응하는 민감성 피부, 피부 트러블, 울긋불긋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Q3. 피부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 제품에서 ‘장에서 시작되는 피부건강’, ‘피부 항상성 유지에는 장내 미생물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 등의 내용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장 건강과 피부 건강 기능성은 각각 개별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두 가지 기능성을 연결하여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

Q1. 자외선 차단, UV protect와 같은 내용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자외선 차단은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과장된 내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2. 자외선에 의한 화상, 따가운 햇볕에 피부가 벗겨지는, 장시간 자외선 노출로 따끔따끔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부 건강

Q1. '피부진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2. 결혼식 등 중요한 행사를 앞둔 사람을 타겟으로 광고할 수 있을까요?

- 특정 기간(단 기간) 내 기능을 보장하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

Q1. 몸 전체에서 근육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건강정보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근육의 기능에 대한 내용(몸무게의 절반차지, 내장벽과 혈관구성 등)은 과도한 건강정보에 해당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Q2. '힘'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즉각적인 근력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힘이 부족하다, 예전 같지 않다, 힘이 부족한 이유는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아서 등)에 해당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Q3. 다이어트 시 단백질 제품이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VIII 식약처 자주하는 질문

아래의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주하는 질문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주하는 질문집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유권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질의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담당관실(종합민원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1. 건강기능식품 녹차추출물 제품에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한가요?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21-7호, '21.2.5)에 따라 커피 뿐만 아니라 다류에도 카페인 함량을 90퍼센트(%)이상 제거한 제품은 “탈카페인(디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 다만, 건강기능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위에 따른 개정규정에 따른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정제형태의 씹어서 섭취하는 프로폴리스제품에 ‘항산화,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기능성 내용을 표시할 수 있나요?

- 프로폴리스추출물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로 사용하려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2. 2-8 프로폴리스추출물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 기준, 규격 및 최종제품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또한, 최종제품의 요건에서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의 경우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에 한하며, 섭취량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제조하려는 제품이 씹어서 섭취하는 정제라면 구강에 직접 접촉하는 형태로 위 규정에 적합한 프로폴리스추출물이라면 항산화·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항산화 기능성의 경우 일일섭취량(총플라보노이드로서 16~17mg)에 적합해야 해당 기능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건강기능식품의 부원료로 딸기농축분말이 함유된 경우 주표시면에 '딸기맛' 표시 가능한가요?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제12호아목에 따라 제9호다목 이외에 기타원료(성분)의 명칭 또는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기타 원료의 사진, 이미지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기타원료의 명칭 등을 주표시면 등에 표시하는 것은 기타원료가 마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으나, 해당제품에 기타원료인 '딸기농축분말'을 사용하고, 해당 기타원료가 기능성의 오인·혼동의 여지가 없고 딸기맛을 내기 위한 용도로만 인지되는 경우라면, 주표시면에 특정맛을 나타내는 사진, 이미지가 아닌 '딸기맛' 문구 표시는 가능합니다.

Q4. 건강기능식품에 무 착색료, 무 합성향료 표시가 가능한가요?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재료, 식품첨가물(보존료 제외) 등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제품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식품첨가물(착색료, 합성향료)이 있으나 이를 제품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최종제품에 검출되지 않은 경우라면, 위 나.에 따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영업자 책임하에 무 착색료, 무 합성향료 표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X 표시·광고심의 접수 시 자주하는 질문

Q1. 심의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법 제2조7호, 제2조제10호) 에 해당 하는 표시, 광고가 심의대상입니다. 다만, 동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광고 하는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함.
- 제2조 7호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 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합니다.
- 제2조 10호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음향·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Q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표시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 가능한가요?

-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사항만 심의대상에서 제외입니다.
- 법적인 내용만이 아닌 광고내용(도안, 광고문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Q3. 심의 관련된 용어가 궁금합니다.

- **적합** : 신청한 내용 그대로 표시 · 광고할 수 있음
- **수정적합** : 신청한 내용 중 삭제 또는 수정 등 시정사항이 있어 수정 통보서를 신청하여 시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사무국 확인을 받은 후 광고할 수 있음(수정통보서 별도 신청 필요)
- **부적합** : 신청한 사항의 과반이상 수정하거나 일부 내용이 수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광고물을 새로 작성하여 심의 수수료를 다시 지불하여 신규심의 접수해야 함
- **반려** : 해당 회차에 신청한 광고물은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되며 해당 회차에 재접수 불가
- **보류** : 신청된 회차에 결과를 통보할 수 없어 지연될 경우 진행하는 절차
- **재심의** : 수정적합, 부적합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절차
- **수정통보서** : 심의결과가 ‘수정적합’일 경우 신청하는 절차로 시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
- **변경통보서** : 심의받은 적합광고물 또는 수정통보확인(수정통보완료) 원본대조필 광고물에 대해 일부 내용만 삭제하거나 표시·광고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 단순한 자구수정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진행하는 절차

Q4. 심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규심의는 심의신청 10일 내(공휴일제외)에 결과(적합, 수정적합, 부적합)를 통지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처리 예정 기한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 수정 · 변경 통보는 7일 내(공휴일제외)에 결과통보 드리며, 다만, 수정 · 변경 신청한 내용이 처음 심의한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 광고로 인정될 경우 신규심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Q5. 신규 심의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매주 월요일 9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결제된 접수 분에 한해 심의 상정되며, 그 다음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일괄적으로 결과통보 됩니다.(일정 변동 가능, 공지사항 참고)

Q6. 심의 접수 기간 내 결제하지 못한 경우, 접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없습니다. 해당 회차 접수가 마감되어 다음 회차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Q7. 심의신청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표시·광고내용
-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수입신고증 사본(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필한 제품에 한함)제품설명서(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한함)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 품목제조신고증(국내제품)이 없으신 경우는 품목제조신고서를, 수입 신고증(수입제품)이 없으신 경우는 수입신고서를, 품목(수입)신고서가 없으실 경우 제품설명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파일 제출 시 주의사항
 - 광고시안 : 반드시 PDF 파일 1부 [글자10포인트 이상(A4기준)]로 첨부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112번글 참조)
 - 그 외 근거자료 : 그림파일(페이지 많은 경우 ZIP파일제출가능) 및 한글파일, PDF파일 첨부 가능합니다.

Q8. 기타 심의 자료 (근거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을 해야하나요?

- 근거 자료 제출 시 반드시 파일명 (광고물의 어떤 내용에 해당되는 근거인지 구분 명기) 적시, 해당부분 등 명확히 체크 (밑줄메모 등 의견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의 경우, 해당 원문 인용내용에 밑줄메모 등 의견을 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과 함께 별도의 정리파일을 제출해주셔도 됩니다.
-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는 번역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9. 반려에 대해 궁금합니다.

- 심의 신청 시 매체별 심의신청 양식(공지사항 112번 글 참조, 심의신청 시 유의사항)에 맞춰서 신청하셔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행정력 낭비 등으로 심의지연 등에 따른 다른 심의신청자의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매체별 심의신청 양식에 올바르게 신청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차에 신청한 광고물은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되며 해당 회차에 재접수가 불가하오니 제출한 광고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접수 마감 전 상담 바랍니다.

Q10. 어떤 경우에 보류가 되나요?

- 유관기관(식약처 등)에 확인 후 검토해야할 내용이 있는 경우
- 심의위원간의 의견 상충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경우
- 심의기준 변경으로 타 분과 위원들의 합의 후 결정하는 경우
- 시험자료 비중이 높아 한정된 시간 내에 적절한 논의가 어려운 경우
- 과도한 분량의 광고가 접수되어 한정된 시간 내에 적절한 논의가 어려운 경우

Q11. 결과통보서에 시정사항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 통보되나요?

- 매회 신규 심의 건수가 약 640건으로 단순 삭제사항을 기재하는 업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결과통보서에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 협회로 전화 문의하시면 해당 사유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Q12. 심의결과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 ① 재심의 신청취지 및 이유
 - ② 원심의 신청과 결정의 내용
 - ③ 신청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및 증빙을 첨부하여 재심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Q13. 부적합을 받게 되면 다음 절차는 무엇입니까?

- 광고물을 '새로' 작성하여 심의 수수료를 다시 지불하여 '신규'심의 접수해야 합니다.

Q14. 신규심의 결과에 대해 일정을 앞당겨 결과통보 받아볼 수 있나요?

- 신규심의의 경우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으로 심의는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심의결과에 대해서 빨리 받아보실 수 없으며, 정해진 날짜에 일괄 통보됩니다.

Q15. 수정통보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 수정적합 결과를 받은 후 바로 광고가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수정적합' 결과를 받으신 분들은 '심의필' 상태가 아닌 '조건부심의필' 상태입니다.
 - 최초심의(1차심의) 결과의 시정사항을 광고물에 반영하여 수정통보서를 제출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심의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사무국 검토 후 '사무국 최종광고물'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추가 수정사항이 없는지 확인 후 광고하시면 됩니다.
- 수정통보서 신청 시 삭제되는 사항에 대해 대체문구를 넣을 수 있나요?
 - 심의결과가 '수정적합'일 경우 신청하는 절차로 시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신규심의 시 삭제된 사항에 대체문구를 넣을 수 없습니다. 단, 기심의에서 허용된 광고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해당문구를 확인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되는 내용이 많아 기존과 다른 새로운 광고물로 판단될 경우 신규심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정통보서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시정사항에 대한 양과 상관없이 접수하신 날로부터 7일 내(공휴일 제외)에 통보 드립니다. 다만, 수정통보서를 제출한 후 광고물을 교체할 경우 접수일이 교체한 날짜로 변경되어 결과통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수정통보서 처리기간을 앞당길 수 있나요?
 - 타임스케줄 상 수정 업무는 매주 300건(분량 3000p이상)이 접수 되어 정해진 일정보다 빨리 처리하는 것은 업무가 가중되며 일부 업체 사정을 감안하여 기존 일정보다 빨리 처리해줄 경우 다른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어 불가합니다.

Q16. 변경통보서의 처리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경통보서의 처리 가능한 범위**

- 심의 받은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한 경우
- 심의 받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 단순한 자구수정
예) 활력을 원하는 분 -> '활력을 원하는 직장인' 으로 문구 수정,
배변활동을 위해 -> '원활한 배변활동을 위해' 로 문구 수정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 '체지방 감소를 원한다면' 으로 문구 수정
- 기존 심의필한 광고물 내용 중에서 도안, 이미지, 모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제품의 품목제조신고 변경 처리된 경우
(제품명, 부원료 배합)

○ 변경통보서의 처리 불가능한 범위

- 심의받은 내용에 상당한 변화(새로운 컨셉)가 있는 경우
예) 최종광고물 형태로 심의받지 않아 이미지, 문구 등을 추가하여 분량이 상당히 증가하는 경우, 심의받은 문구를 토대로 광고물을 재작성하여 기존과 다른 새로운 광고물로 판단되는 경우
- 심의받은 광고의 문안의 배치가 변경되는 경우
- 인쇄매체에서 방송매체로 변경, 방송매체에서 인쇄매체로 변경되는 경우
- 식약처에 새로 품목제조(수입) 신고가 된 경우
예) 주원료가 변경된 경우
제품명 변경되며 수입신고가 새로 된 경우

Q17. 변경통보서의 처리기간이 궁금합니다.**○ 변경통보서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변경되는 항목의 수와 관련 없이 접수하신 날로부터 7일 내(공휴일 제외)에 통보 드립니다. 다만, 변경통보서를 제출한 후 광고물을 교체할 경우 접수일이 교체한 날짜로 변경되어 결과통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변경통보서 처리기간을 앞당길 수 있나요?

- 타임스케줄 상 수정 업무는 매주 200건(분량 2000p이상)이 접수 되어 정해진 일정보다 빨리 처리하는 것은 업무가 가중되며 일부 업체 사정을 감안하여 기존 일정보다 빨리 처리해줄 경우 다른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어 불가합니다.

Q18. 수정통보 후 '이행' 또는 결과/변경통보 후 '승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바로 광고가 가능할까요?

- 불가능한 경우 : 이행/승인된 PDF 파일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사항을 수정한 후 바로 광고가능
- 가능한 경우 : 이행/승인된 PDF 파일에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Q19. 제품명/부원료/모델이미지 변동되었습니다. 신규로 접수해야 하나요?

- 변경통보로 가능합니다.

Q20. 주원료/제조사 변경되었습니다. 신규접수 해야 하나요?

- 주원료 변경의 경우 제품의 기능성이 달라지므로 신규심의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일부 주원료가 빠지는 경우에도 신규심의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 주원료 변경이 없는 단순 제조사 변경의 경우 변경통보로 처리 가능합니다.

Q21. 제품명 변경되며 수입신고된 새로이 한 경우 변경처리 가능한가요?

- 변경처리 불가능합니다. 제품명이 변경되어 새로 수입신고된 것은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22. 변경 통보를 신청한 경우, 기존 변경통보 광고물은 사용할 수 없나요?

- 심의 받은 광고물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Q23. 여러 건을 한 번에 결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개별 건으로 관리가 되어 한 번에 할 수 없으므로, 마감 시간 이전에 각각 접수하셔야 합니다.

Q24. 한 심의번호에 여러 개의 제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여러 가지 제품으로 구성된 하나의 광고물(카탈로그 등)에 한해 가능하며, 각각 제품별로 분리될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 접수 시 제품명에는 '대표제품 외 x건'을 기입하시고 모든 제품의 품목 제조신고증(제품설명서)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여러 제품 광고건으로 심의 받으신 후 각 제품으로 분리하여 광고하시는 경우는 신규 심의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Q25. 단순 이벤트 / 기획전 / 프로모션 광고도 심의받아야 하나요?

-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 4조에서 8조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이벤트 광고에 한하여 심의 받은 것으로 보아 영업자가 심의 신청 하지 않고 광고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119번글 참조 - 심의 신청 없이 광고 가능한 예시)
- 다만, 법 제4조에서 8조에 해당하는 광고를 영업자가 임의적으로 심의 받은 것으로 자체 판단하여 심의 신청하지 않은 광고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내용에 해당할 경우 영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Q26. 광고하고자 할 때 제품명과 업소명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제한된 면적(제품당 평균 2cm*3cm ~ 3cm*4cm 정도의 작은 공간)에 가격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다품목 광고 전단지
- 소비자가 배너(인터넷 웹 페이지 화면에 나타나는 작은 사각형 형태의 알림창으로 해당창을 클릭하면 그 광고가 홍보하는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것) 광고 팝업 광고를 통해 연결된 홈페이지에서 배너·팝업 제품의 제품명과 업소명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식품 등에 관한 광고의 목적이 아닌 회사의 브랜드를 광고하기 위해 다품목의 제품이 브랜드와 함께 노출되는 경우

Q27. 타사의 심의자료 열람이 가능한가요?

- 조회해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는 공개하고 있으나, 해당 회사의 비밀유지 등으로 심의내용이나 결과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는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Q28. 회사내부자료(교육자료 등)도 심의 받아야 하나요?

- 소비자들에게 노출되는 자료가 아닌 경우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Q29. 일반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등(건강기능식품이 아닌 품목)도 심의를 하나요?

-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되지 않도록 별도의 페이지를 구분하거나, 부득이하게 한 페이지 내에서 광고할 경우에는 구획을 명확히 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명시하여 광고해야 합니다.

Q30.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시 ‘심의번호’, ‘심의필도안’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나요?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시 심의번호 및 심의필 도안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의 수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라 심의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31. 광고심의팀에 상담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광고심의팀의 업무는 심의신청물에 대한 결과통보와 관련된 행정업무로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정리하여 신청업체에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즉, 심의 의결에 대한 권한이 없으므로 표시·광고 문구에 대한 허용유무는 광고심의팀에서 상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 시 상담 가능한 영역은 심의결과에 대한 삭제 사유, 절차 설명 등으로 한정적입니다.
 - 전화 상담 : 단순용건만 가능
 - 방문 상담 : 단순 용건이 아닌 시간을 정하여 미팅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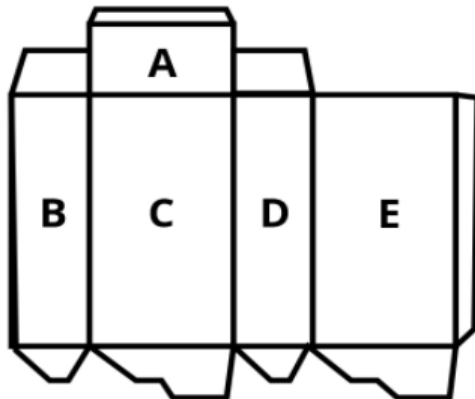
심의 신청 양식 가이드

1 매체 상관 없이 반려되는 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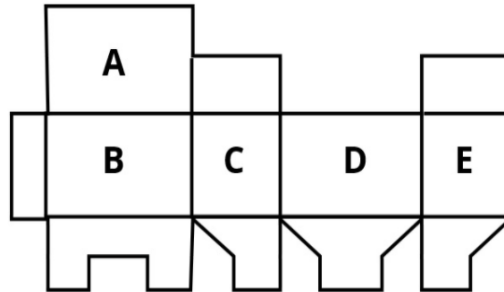
- 최종광고물로 접수되지 않은 광고물(디자인 입히지 않은 가안으로 작성된 광고물)
-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한 광고물
- 매체별로 신청하지 않고, 여러 매체의 광고물을 1건으로 신청한 경우
 예1) 패키지+인터넷 1건으로 신청(X), 패키지 1건, 인터넷 1건으로 각 2건으로 신청(O)
 예2) 홈쇼핑+유선방송 1건으로 신청(X), 홈쇼핑 1건, 유선방송 1건으로 각 2건으로 신청(X)
- 매체에 맞지 않게 신청한 경우
 예) 패키지(표시포함) 신청을 하여야 하나, 다른 매체(인쇄물, 인터넷, 방송매체 등)로 신청
- 광고물 내 글씨크기가 A4용지 기준 10포인트(3mm)보다 작은 경우
- ALT(대체) 문구·이미지가 나열될 경우 해당 문구·이미지는 심의되지 않음
- 접수된 디자인 그대로 광고된다고 보기 어려운 광고물

2 패키지 형태 : 세로, 가로 단상자

세로 단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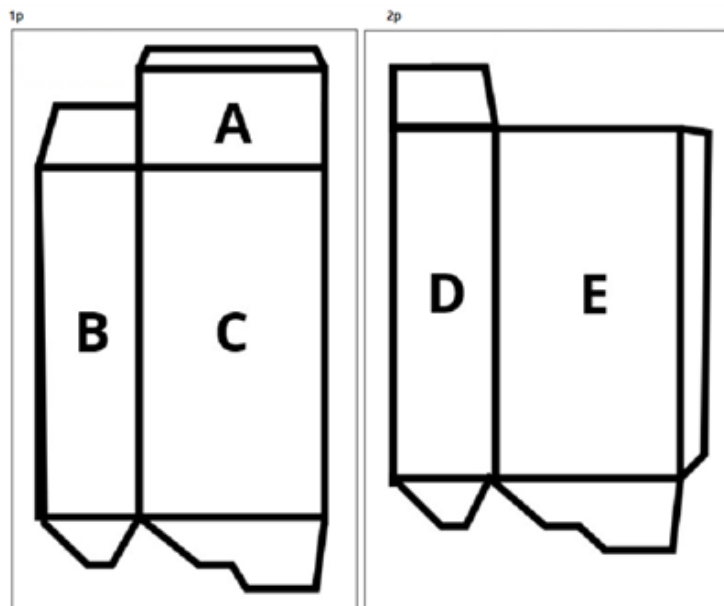


가로 단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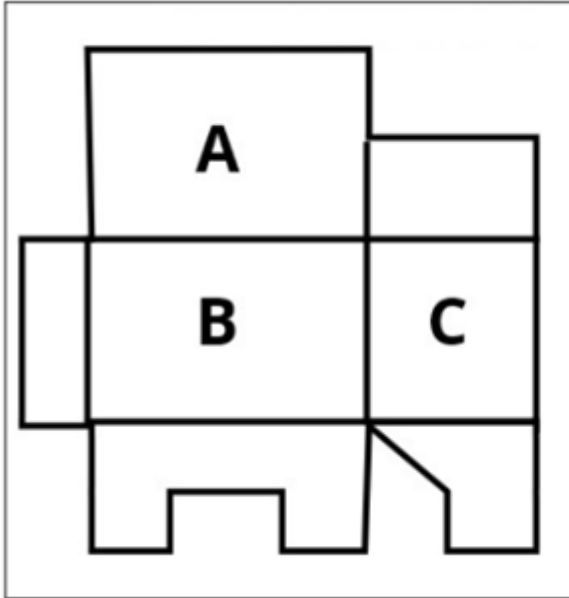
- 위 그림처럼 전개도 그대로 접수하시면 반려됩니다.
- 아래 예시와 같이 용지 비율 상관없이 여백을 최소한으로 하여 총 2페이지로 확대 분할합니다.
- 글자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아래 예시와 동일하게 분할하지 않은 경우 반려됩니다.

세로 단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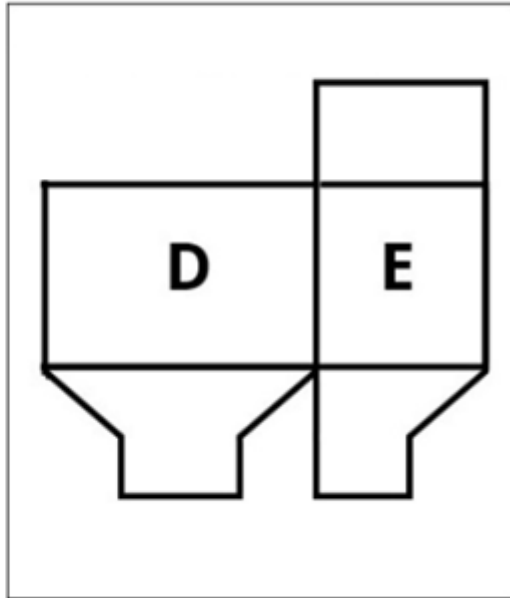


가로 단상자

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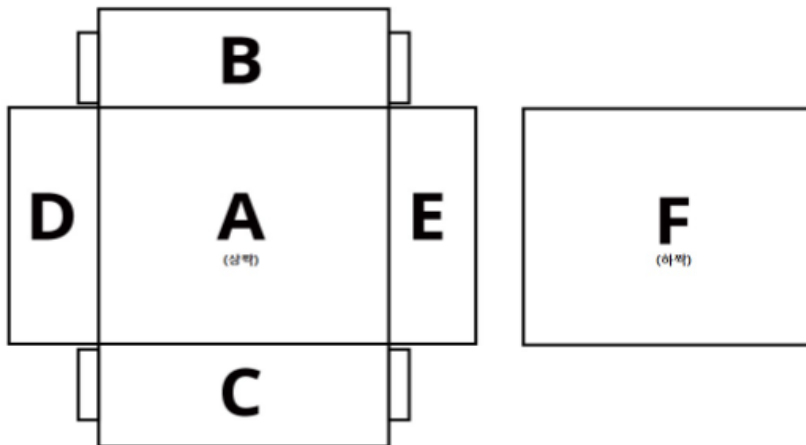


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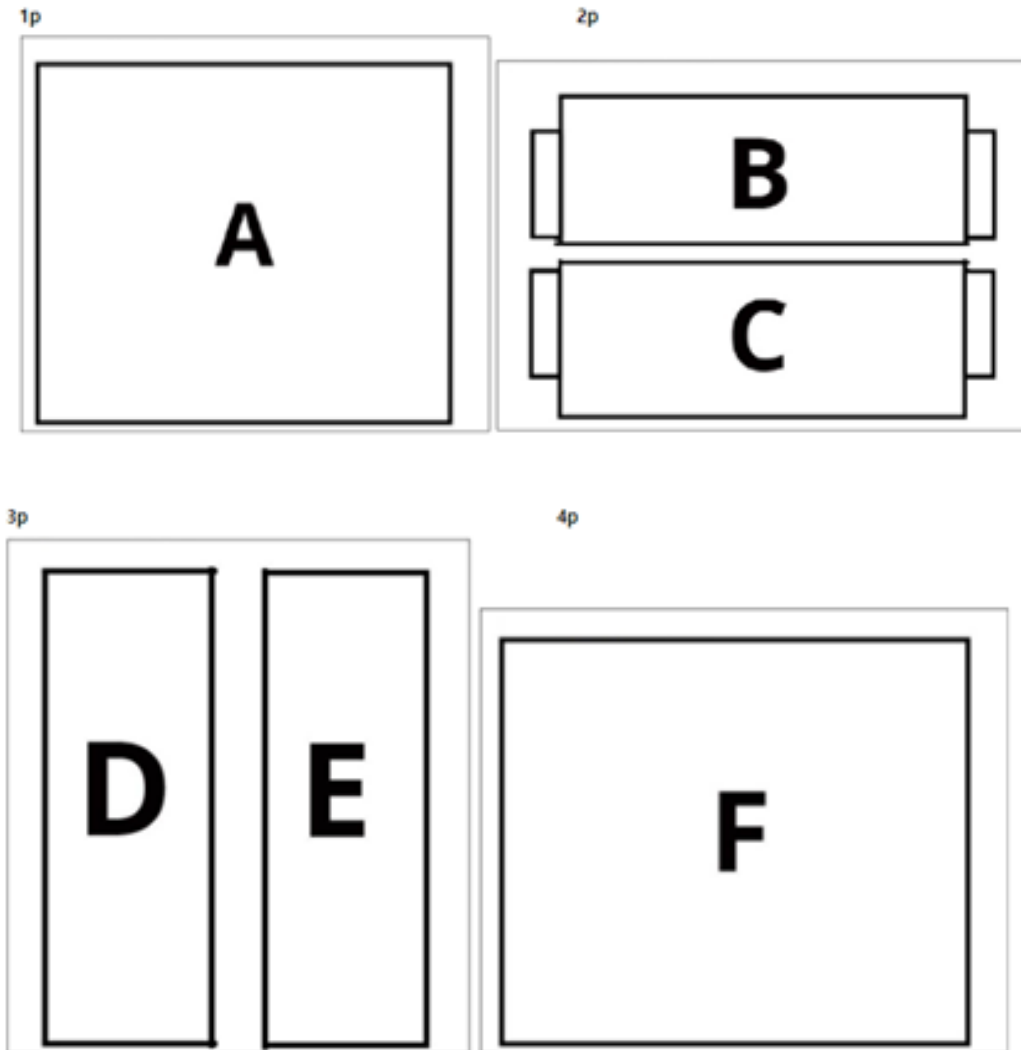
- 인서트페이퍼가 있는 경우 패키지(설명서) 양식에 맞게 분할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글씨크기가 작아(A4용지 기준 3 mm 미만)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각 면(A/B/C...)을 1면씩 확대 분할하여 제출합니다.

3 패키지 형태 : 대케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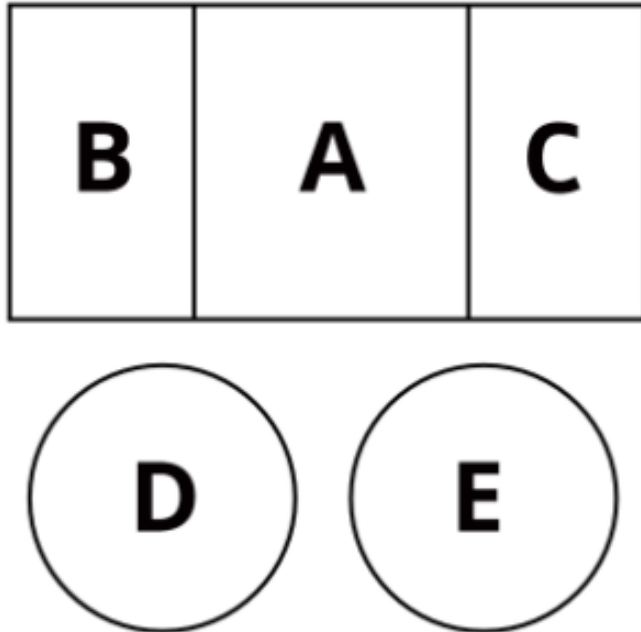
- 위 그림처럼 전개도 그대로 접수하시면 반려됩니다.

- 아래 예시와 같이 용지 비율 상관없이 여백을 최소한으로 하여 총 4페이지로 확대 분할합니다.
- 글자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아래 예시와 동일하게 분할하지 않은 경우 반려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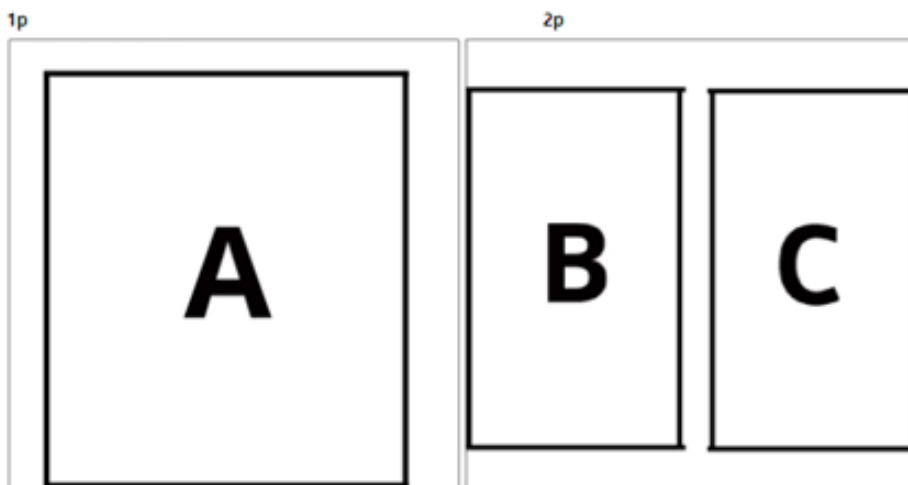


- 인서트페이퍼가 있는 경우 패키지(설명서) 양식에 맞게 분할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글씨크기가 작아(A4용지 기준 3 mm 미만)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각 면 (A/B/C/...)을 1면씩 확대 분할하여 제출합니다.

4 패키지 형태 : 라벨, 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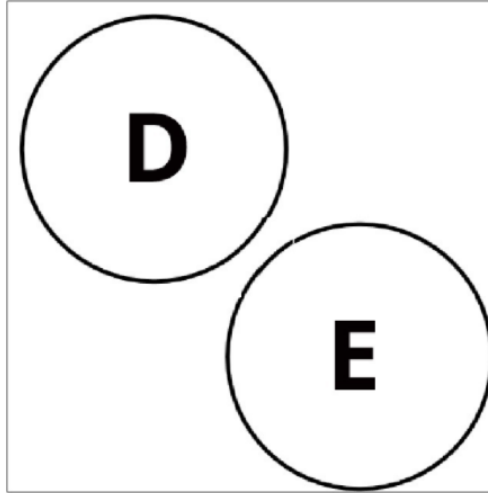


- 위 그림처럼 전개도 그대로 접수하시면 반려됩니다.
- 아래 예시와 같이 용지 비율 상관없이 여백을 최소한으로 하여 총 2페이지로 확대 분할합니다. (지관의 경우 3페이지)
- 글자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아래 예시와 동일하게 분할하지 않은 경우 반려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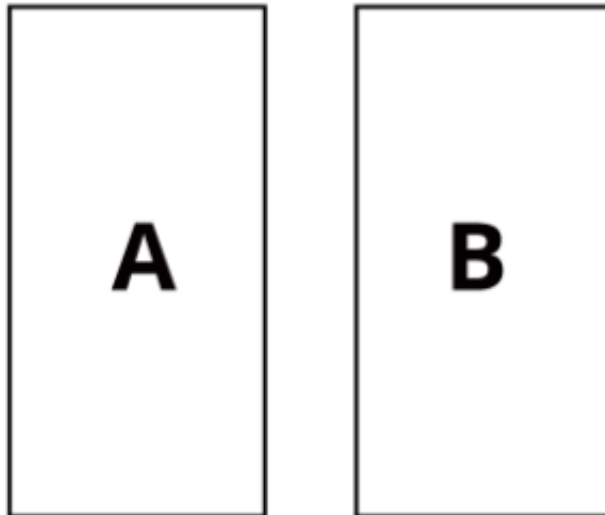
- 인서트페이퍼가 있는 경우 패키지(설명서) 양식에 맞게 분할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3p(지관의 경우에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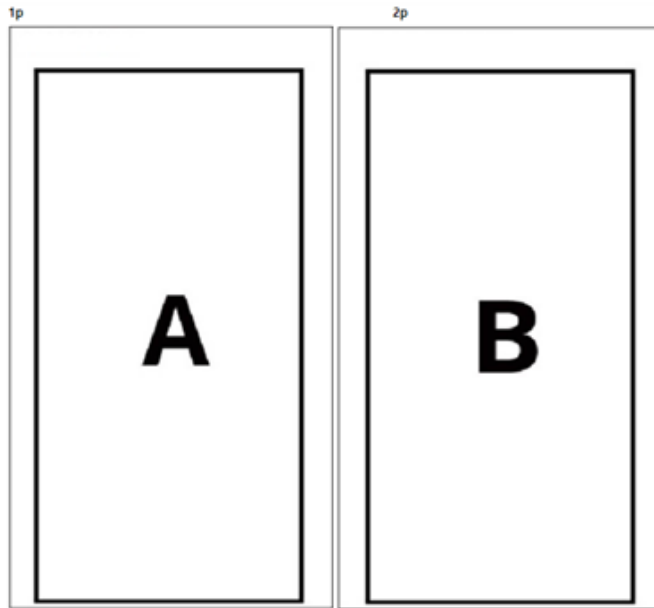


- 글씨크기가 작아(A4용지 기준 3 mm 미만)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각 면(A/B/C...)을 1면씩 확대 분할하여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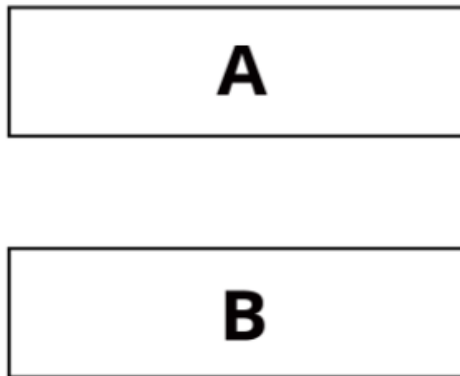
5 패키지 형태 : 단독 판매 파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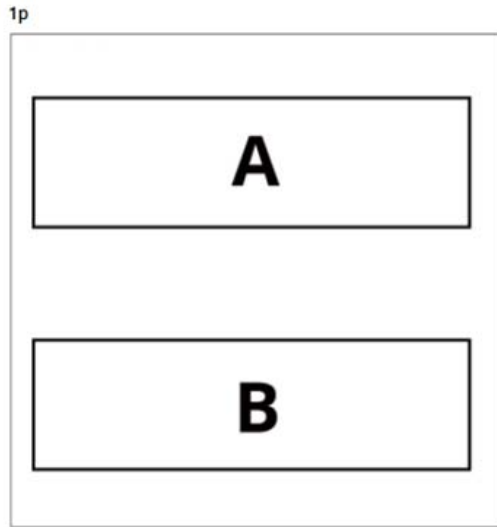
- 위 그림처럼 전개도 그대로 접수하시면 반려됩니다.
- 아래 예시와 같이 용지 비율 상관없이 여백을 최소한으로 하여 총 2페이지로 확대 분할합니다.
- 글자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아래 예시와 동일하게 분할하지 않은 경우 반려됩니다.
- 인서트페이퍼가 있는 경우 패키지(설명서) 양식에 맞게 분할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6 패키지 형태 : 낱알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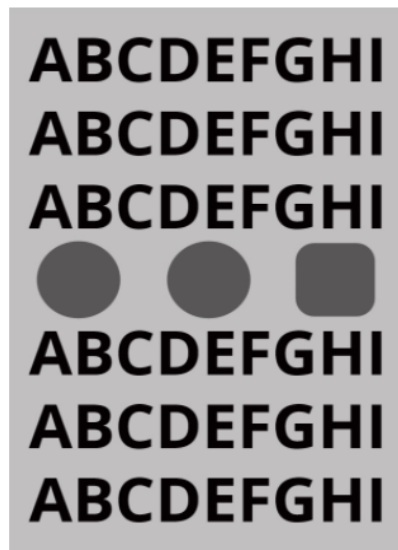


- 아래 예시와 같이 용지 비율 상관없이 여백을 최소한으로하여 총 1페이지로 확대 분할합니다.
- 글자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아래 예시와 동일하게 분할하지 않은 경우 반려됩니다.
- 글씨크기가 작아(A4용지 기준 3 mm 미만)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각 면(A/B/C...)을 1면씩 확대 분할하여 제출합니다.
- 인서트페이퍼가 있는 경우 패키지(설명서) 양식에 맞게 분할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필로우백의 경우 현재 페이지(낱알포장)의 양식에 맞춰 제출합니다.



7 패키지 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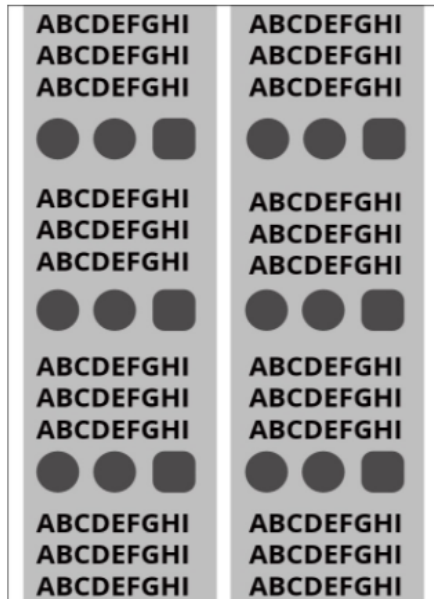
-올바른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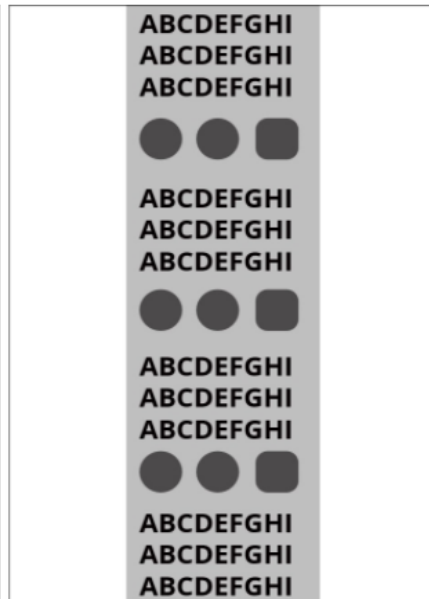
- 위 예시와 같이 각각의 페이지를 A4용지 비율로 분할합니다.
- 글자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예시와 동일하게 분할하지 않은 경우(아래 반려되는 예에 해당되는 경우 포함) 반려됩니다.

-반려되는 예

1) 한 페이지 안에 여러 페이지가 있는 광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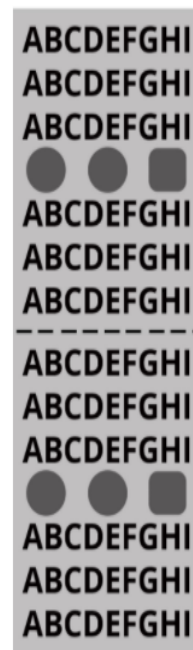
2) 양 옆 공백이 있는 광고물



3) 글자가 찌그러진 광고물(2)를 옆으로 늘린 광고물포함



4) A4용지보다 길게 분할 된 광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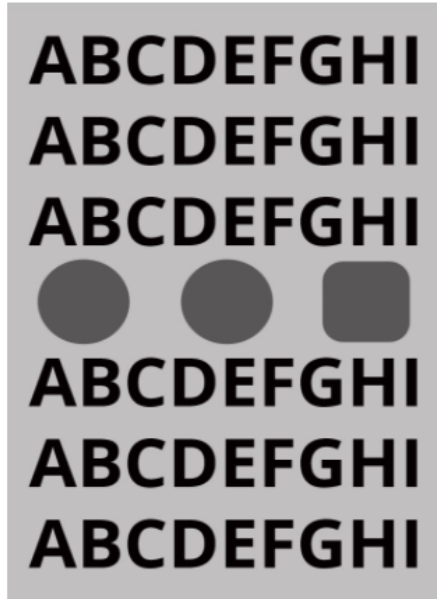


- 페이지가 분할될 때 분할되는 경계의 이미지/글씨는 잘려도 무관합니다.
- 광고물 특성상 A4 세로방향으로 분할하였을 때 글씨크기가 작은 경우(3mm 미만) A4 가로방향 여러 페이지로 분할합니다.
- 카톤박스 등 표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박스 등은 표시광고물 가이드에 맞게 분할합니다.

8 인터넷, 인쇄물, 기타 광고

상세페이지, 제품설명서, 포스터 등의 광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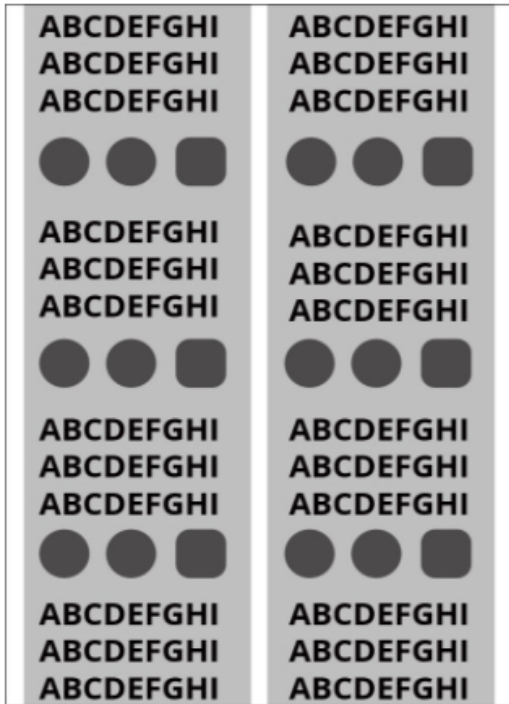
-올바른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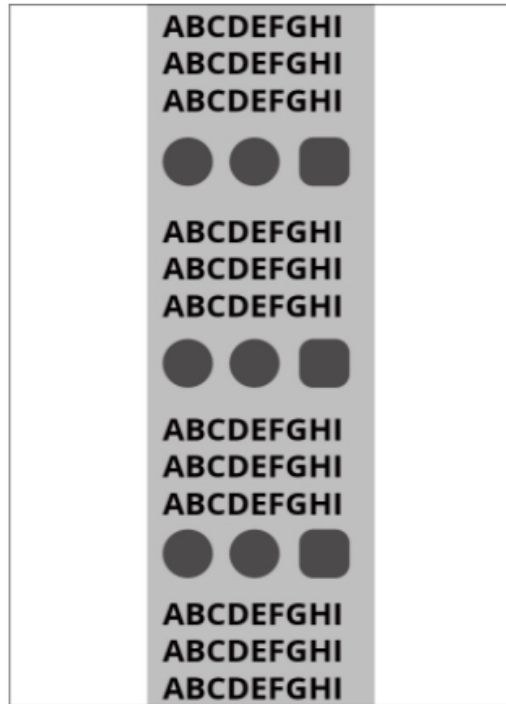
- 위 예시와 같이 각각의 페이지를 A4용지 비율로 분할합니다.
- 글자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예시와 동일하게 분할하지 않은 경우(아래 반려되는 예에 해당되는 경우 포함) 반려됩니다.
- 끝부분의 참고사항까지 꼭 모두 확인하시고 접수 부탁드립니다.

-반려되는 예

1) 한 페이지 안에 여러 페이지가 있는 광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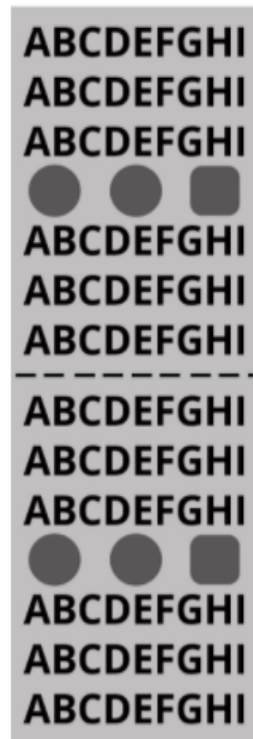
2) 양 옆 공백이 있는 광고물



3) 글자가 찌그러진 광고물[2를 옆으로 늘린 광고물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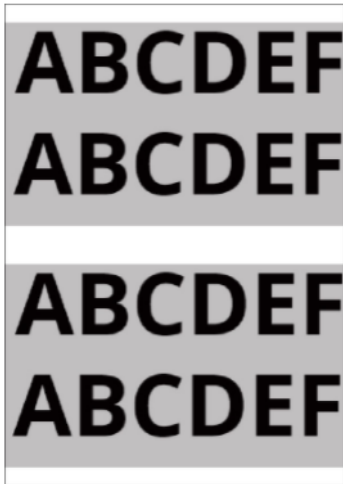
4) A4용지보다 길게 분할 된 광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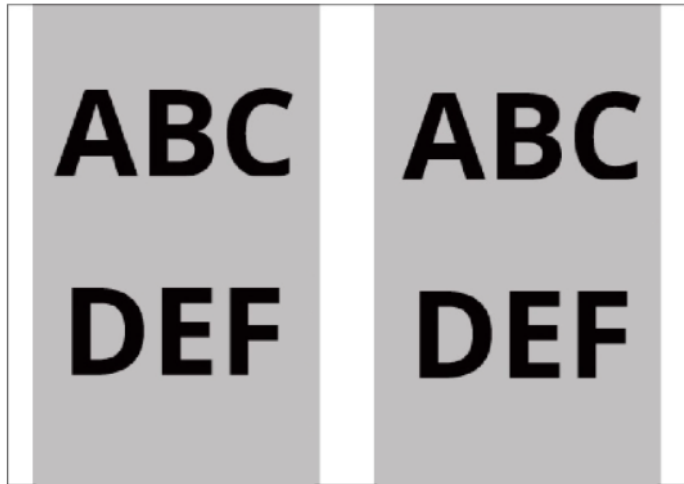
배너, 브랜드검색, SNS, 카드뉴스, 댄글러 등의 광고물

- 한 페이지에 여러 시안 접수가 가능하나,
(각 광고물의 가로가 길 때) A4용지 세로방향 기준으로 하나의 시안 당 가로 폭이 여백 없이 꽉 차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각 광고물의 세로가 길 때) A4용지 가로방향 기준으로 하나의 시안 당 세로 폭이 여백 없이 꽉 차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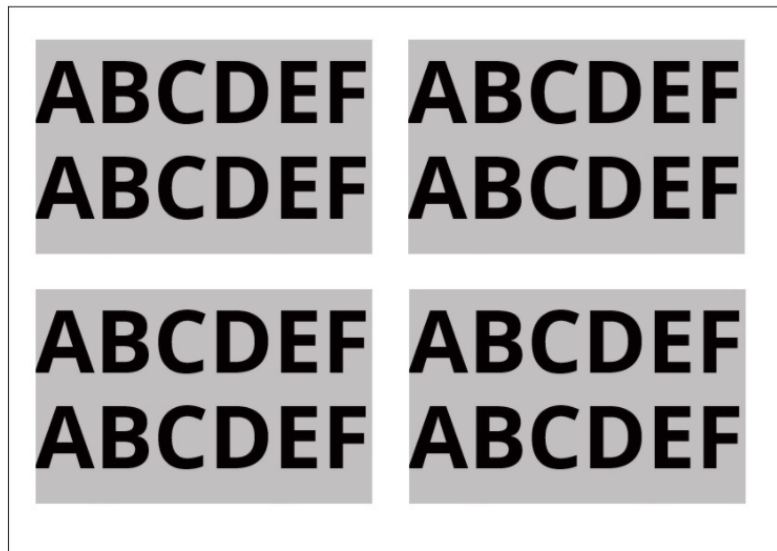
-올바른 예 (가로가 긴 광고물)



-올바른 예 (세로가 긴 광고물)



-올바르지 않은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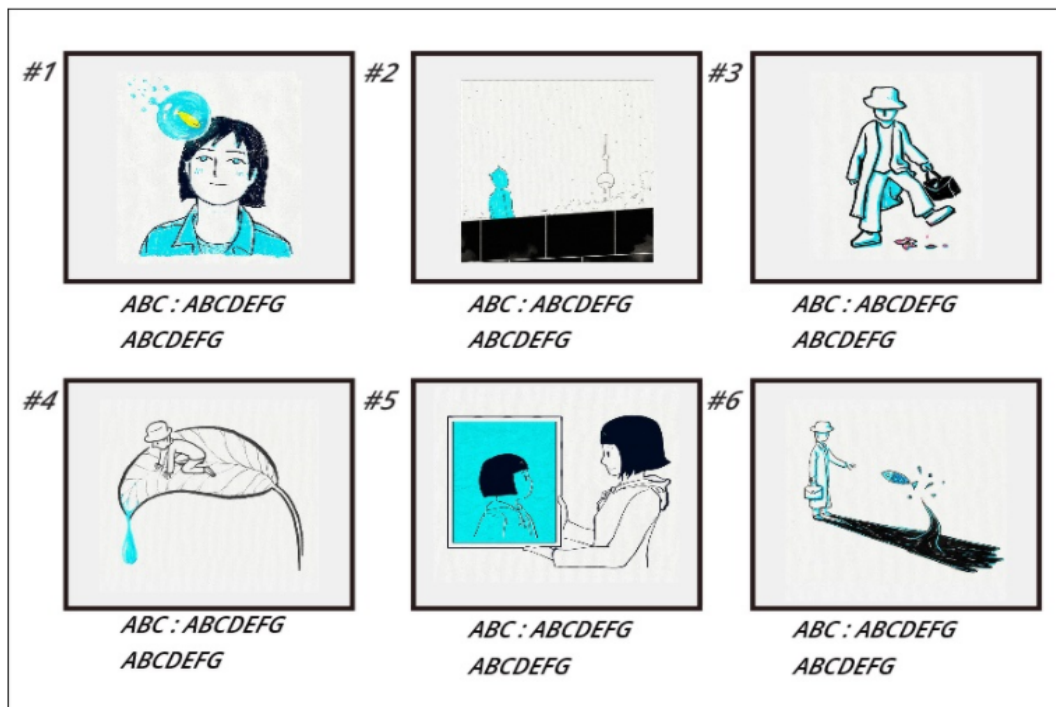


- 페이지가 분할될 때 분할되는 경계의 이미지/글씨는 잘려도 무관합니다.
- 리플렛, 카탈로그 등은 “반려되는 예 1”에 해당되지 않도록 각각의 페이지 분할이 필요합니다.
- 광고물 특성상 A4 세로방향으로 분할하였을 때 글씨크기가 작은 경우(3mm 미만) A4 가로방향 여러 페이지로 분할합니다.
- 카톤박스 등 표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박스 등은 표시광고물 가이드에 맞게 분할합니다.

9 방송(유선방송, 동영상)

- 대본과 판넬은 각 양식에 맞도록 모두 심의 받아야 합니다.
- 아래 예시와 같이 콘티, 스토리보드 형식으로 작성 후 A4용지 비율로 분할합니다.
- 글자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A4용지보다 길게 분할된 경우(파워포인트 16:9 와이드 비율 포함) 반려됩니다.
- 광고 내용에 해당되는 이미지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 (최소 전체 썸의 80% 이상 이미지 첨부 필요) 반려됩니다.
- 라이브 커머스 등에서 사용되는 판넬의 경우 용지 비율 상관없이 한 페이지당 한 판넬을 여백 없이 꼭 차게 작성합니다.
- 끝부분의 참고사항까지 꼭 모두 확인하시고 접수 부탁드립니다.
- 아래 예시와 동일하게 분할하지 않은 경우 반려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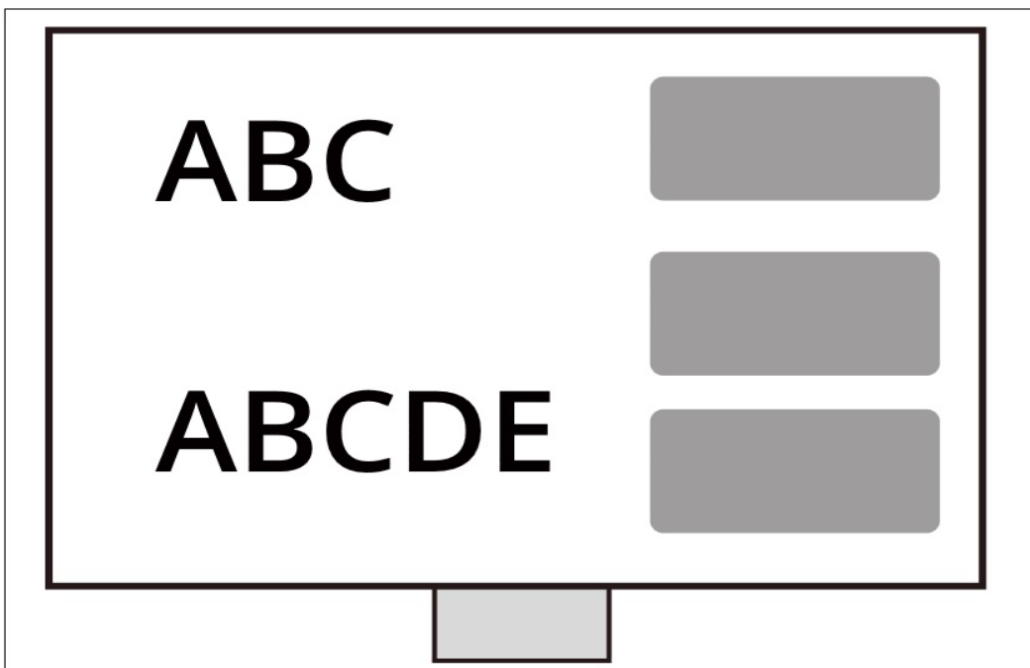
예시 1



예시 2

	비디오	자막	오디오
#1		ABCD	ABCD
#2		ABCD	ABCD
#3		ABCD	ABCD

판넬 예시





- 이미지 특성 상 콘티 안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인체시험 그래프 등)은 마지막 장에 확대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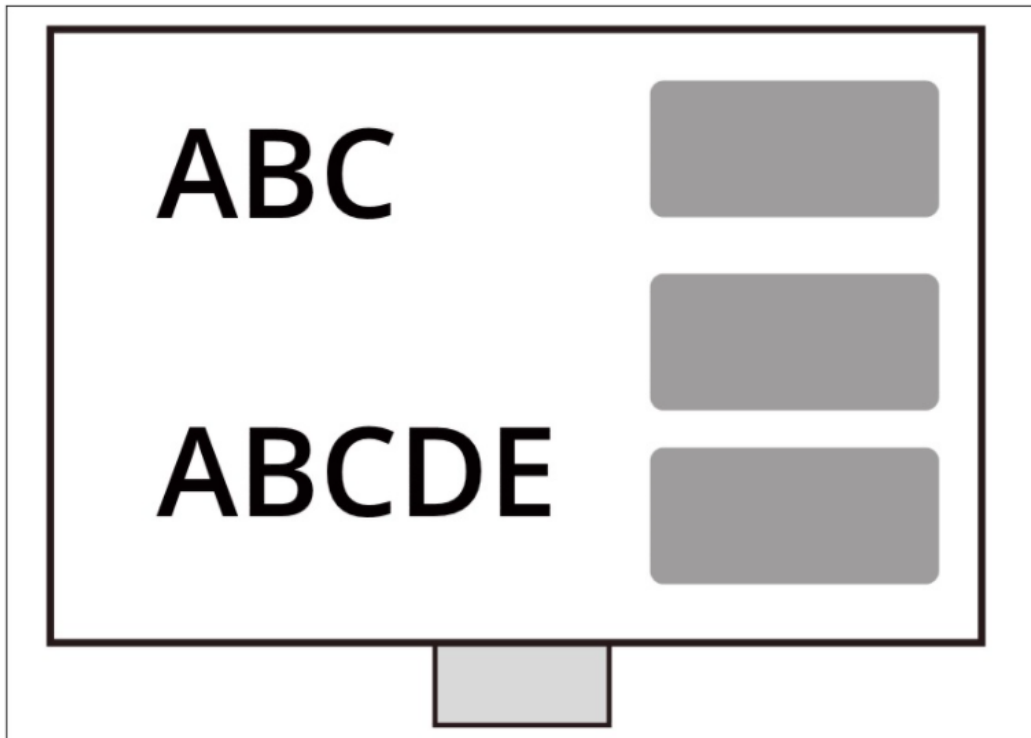
10 방송(홈쇼핑)

- 대본과 판넬은 각 양식에 맞도록 모두 심의 받아야 합니다.
- 아래 예시와 같이 콘티, 스토리보드 형식으로 작성 후 A4용지 비율로 분할합니다.
- 글자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A4용지보다 길게 분할된 경우(과워포인트 16:9 와이드 비율 포함) 반려됩니다.
- 광고 내용에 해당되는 이미지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 (최소 전체 썸의 80% 이상 이미지 첨부 필요) 반려됩니다.
- 판넬의 경우 용지 비율 상관없이 한 페이지당 한 판넬을 여백 없이 꼭 차게 작성합니다.
- 끝부분의 참고사항까지 꼭 모두 확인하시고 접수 부탁드립니다.
- 아래 예시와 동일하게 분할하지 않은 경우 반려됩니다.

대본 예시

	비디오	자막	오디오
#1		ABCD	ABCD
#2		ABCD	ABCD
#3		ABCD	ABCD

판넬 예시



- 이미지 특성 상 콘티 안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인체시험 그래프 등)은 마지막 장에 확대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 · 광고 가이드라인

발행년월일 2022년 2월

발행기관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발행인 권석형

편집위원장 임성열

편집위원 김수창, 허석현, 김현수, 최현경, 정영주, 김보배,
송민경, 박지은, 이영아, 정우진, 권혁신, 이성아,
장호석, 조규광, 황창진, 정택영, 김용하, 황유나

주 소 :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B동 102호

연락처 : 031)628-2300 FAX : 031)628-2349

2022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